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3 연차보고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3 연차보고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CEO Message

지난해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신흥국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경제도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불안요인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토대로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지속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실화된 금융회사들을 ‘금융거래 중단 없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리하여 예금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가교저축은행을 거치지 않고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리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매각전략을 수립하여 정리과정에서 인수한 부실자산에 대한 회수활동을 본격화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시장 수요에 맞게 자회사를 분리하여 매각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재추진 하였습니다.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 및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건전 경영을 유도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부실예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요인을 적기에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검사 체계를 정비해나가는 한편, 2014년도부터 시행되는 차등보험료율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금융정보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등을 위하여 예보제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금융교육센터를 개소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공사가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동시에 IADI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몽골의 예금보험법 제정 및 예금보험공사 창립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공사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지난 17년간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예금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선진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안전망의 중요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예금자보호제도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 주 현

Contents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3 연차보고서

본 | 문 | 차 | 례

제1장	주요 추진 업무	1
제2장	조직 운영	15
제1절	조직 구성	16
제2절	조직 관리	22
제3장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37
제1절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38
제2절	부실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보호	44
제4장	예금보험제도 선진화	49
제1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50
제2절	예금보험제도 관련 조사연구	53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56
제5장	리스크 관리	63
제1절	조사 및 공동검사	64
제2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관리	72
제6장	부실금융기관 정리	77
제1절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78
제2절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가교저축은행 등 관리·매각	81
제3절	부실금융기관 특별자산의 관리	88

제7장 파산재단 및 인수자산 관리 95

제1절 파산재단 관리	96
제2절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 관리	101

제8장 건전경영 풍토 조성 및 부실책임 추궁 105

제1절 부보금융기관 건전경영 풍토 조성	106
제2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108
제3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112
제4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114

제9장 기금 관리 119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20
제2절 예금보험기금	131

제10장 2013년도 결산 141

제1절 결산 개요	142
제2절 결산 기준	143
제3절 결산 현황	149

부 록 163

1. 예금보험제도 개요	164
2. 대외평가	167
3. 2013년도 주요일지	168
4. 통계	169

Contents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3 연차보고서

표차례

〈표 I - 1〉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및 공사 단독조사 실적	3
〈표 I - 2〉 2013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4
〈표 I - 3〉 2013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5개사) 정리 현황	5
〈표 I - 4〉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조달 및 지원 현황	9
〈표 I - 5〉 2013년 중 주요 공적자금 회수내역	11
〈표 I - 6〉 공사 보유 주요 지분 현황	11
〈표 I - 7〉 2013년 생활금융교육 추진 실적	12
〈표 II - 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17
〈표 II - 2〉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17
〈표 II - 3〉 2013년 중 예금보험위원회 의안 목록	18
〈표 II - 4〉 임 원	20
〈표 II - 5〉 조직도	21
〈표 II - 6〉 인원 현황	21
〈표 II - 7〉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실행과제	25
〈표 II - 8〉 하이-KDIC 주요 프로그램	26
〈표 II - 9〉 유관기관 연계 공동 사회공헌 활동 참여 현황	31
〈표 II - 10〉 자매결연 및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실적	31
〈표 II - 11〉 2013년 사회공헌 활동 내역	33
〈표 II - 12〉 3단계(2013년) 정보화 세부 이행과제	35
〈표 III - 1〉 연도별 예금자보호제도 홍보 이미지	39
〈표 III - 2〉 연도별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추이	40
〈표 III - 3〉 표시제도 현장점검 1인당 영업점 수	40
〈표 III - 4〉 2013년 생활금융교육 추진 실적	43
〈표 III - 5〉 여신고객 불편 해소 방안	44
〈표 III - 6〉 2013년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현황	46
〈표 IV - 1〉 차등평가의 구분	51
〈표 IV - 2〉 등급별 적용 요율(금융업권별 표준보험료율 대비)	52
〈표 IV - 3〉 2013년 주요 조사연구 보고서 현황	53
〈표 IV - 4〉 2013년 주요 발간물	55
〈표 IV - 5〉 2013년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 실적	61

〈표 V-1〉 2013년 리스크상시감시교실 개최내역	65
〈표 V-2〉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감사 실적	68
〈표 V-3〉 2013년 금융리스크리뷰誌 주요 내용	70
〈표 V-4〉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 추가 · 수정 내역	74
〈표 VI-1〉 2012년 이후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현황	79
〈표 VI-2〉 2013년 영업정지 저축은행별 경영관리 인력 파견 현황	80
〈표 VI-3〉 2013년 상반기 부실저축은행 정리(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	82
〈표 VI-4〉 2013년 하반기 부실저축은행 정리(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	83
〈표 VI-5〉 2013년 가교저축은행 매각 현황	84
〈표 VI-6〉 특별자산 유형별 관련 대출 현황	89
〈표 VI-7〉 자산유형별 관리형태	89
〈표 VI-8〉 특별자산 4단계 회수관리 체계	90
〈표 VI-9〉 특별자산 유형 및 매각절차	90
〈표 VI-10〉 매각 대상자산별 외부전문기관 유형	91
〈표 VI-11〉 회수유형별 실적	92
〈표 VII-1〉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97
〈표 VII-2〉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 실적	99
〈표 VII-3〉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99
〈표 VII-4〉 2013년 중 정리금융기관 인수자산	101
〈표 VII-5〉 정리금융기관 인수자산(누계)	102
〈표 VII-6〉 케이알앤씨(KR&C) 보유 자산(잔액)	103
〈표 VIII-1〉 부실금융기관 관련 위법 · 부당행위 조사 현황(누계)	110
〈표 VIII-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관련 소송제기 현황	110
〈표 VIII-3〉 예금보험기금 투입 부실저축은행 관련 소송제기 현황	111
〈표 VIII-4〉 부실채무기업 관련 심의 현황(누계)	112
〈표 VIII-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누계)	113
〈표 VIII-6〉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현황	115
〈표 VIII-7〉 연도별 해외 은닉재산 회수 현황	116
〈표 VIII-8〉 연도별 신고센터 접수건수, 회수건수 및 회수금액 현황	117
〈표 IX-1〉 금융권별 특별기여금요율	121

Contents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3 연차보고서

표차례

〈표IX-2〉 금융권별 특별기여금 수입	121
〈표IX-3〉 2002년 12월 31일 이전 예보채 발행 및 상환	122
〈표IX-4〉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122
〈표IX-5〉 상환기금 차입 및 상환	123
〈표IX-6〉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3년)	124
〈표IX-7〉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124
〈표IX-8〉 연도별 저축은행 예금보험금 지급	125
〈표IX-9〉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126
〈표IX-10〉 상환기금의 회수(2013년)	127
〈표IX-11〉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127
〈표IX-12〉 케이알앤씨(KR&C)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회수	129
〈표IX-13〉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	130
〈표IX-14〉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132
〈표IX-15〉 금융권별 예금보험료 수입	132
〈표IX-16〉 부보금융기관 출연금	133
〈표IX-17〉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발행 및 상환	133
〈표IX-18〉 예금보험기금 차입 및 상환	134
〈표IX-19〉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3년)	135
〈표IX-20〉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135
〈표IX-21〉 특별계정을 통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현황	136
〈표IX-22〉 손해보험계정을 통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현황	136
〈표IX-23〉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13년 및 누계)	137
〈표IX-24〉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137
〈표X-1〉 요약 재무상태표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153
〈표X-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154
〈표X-3〉 요약 재무상태표 (예금보험기금)	155
〈표X-4〉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예금보험기금)	156
〈표X-5〉 요약 재무상태표 (공사회계)	157
〈표X-6〉 요약 손익계산서 (공사회계)	158
〈표X-7〉 요약 재정상태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59
〈표X-8〉 요약 재정운영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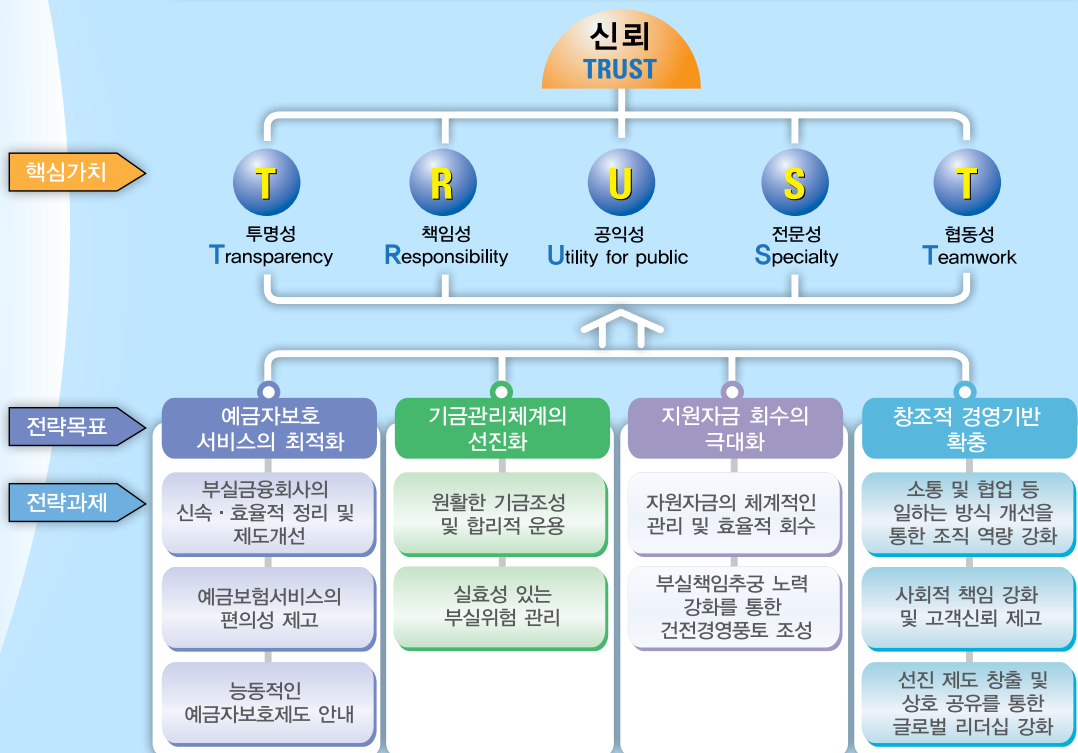
〈그림 I- 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구조	9
〈그림 II- 1〉 KDIC 비전 및 전략 체계도	23
〈그림 II- 2〉 KDIC 성과관리체계도	28
〈그림 II- 3〉 新중장기 윤리경영 추진 전략 체계도	29
〈그림 II- 4〉 정보화 중장기 전략 체계도(2011~2013)	34
〈그림 IV- 1〉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비교	87
〈그림 VII- 1〉 파산재단 단계별 관리방안	100
〈그림 VII- 2〉 케이알앤씨(KR&C)의 업무	102
〈그림 VIII- 1〉 부실책임조사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109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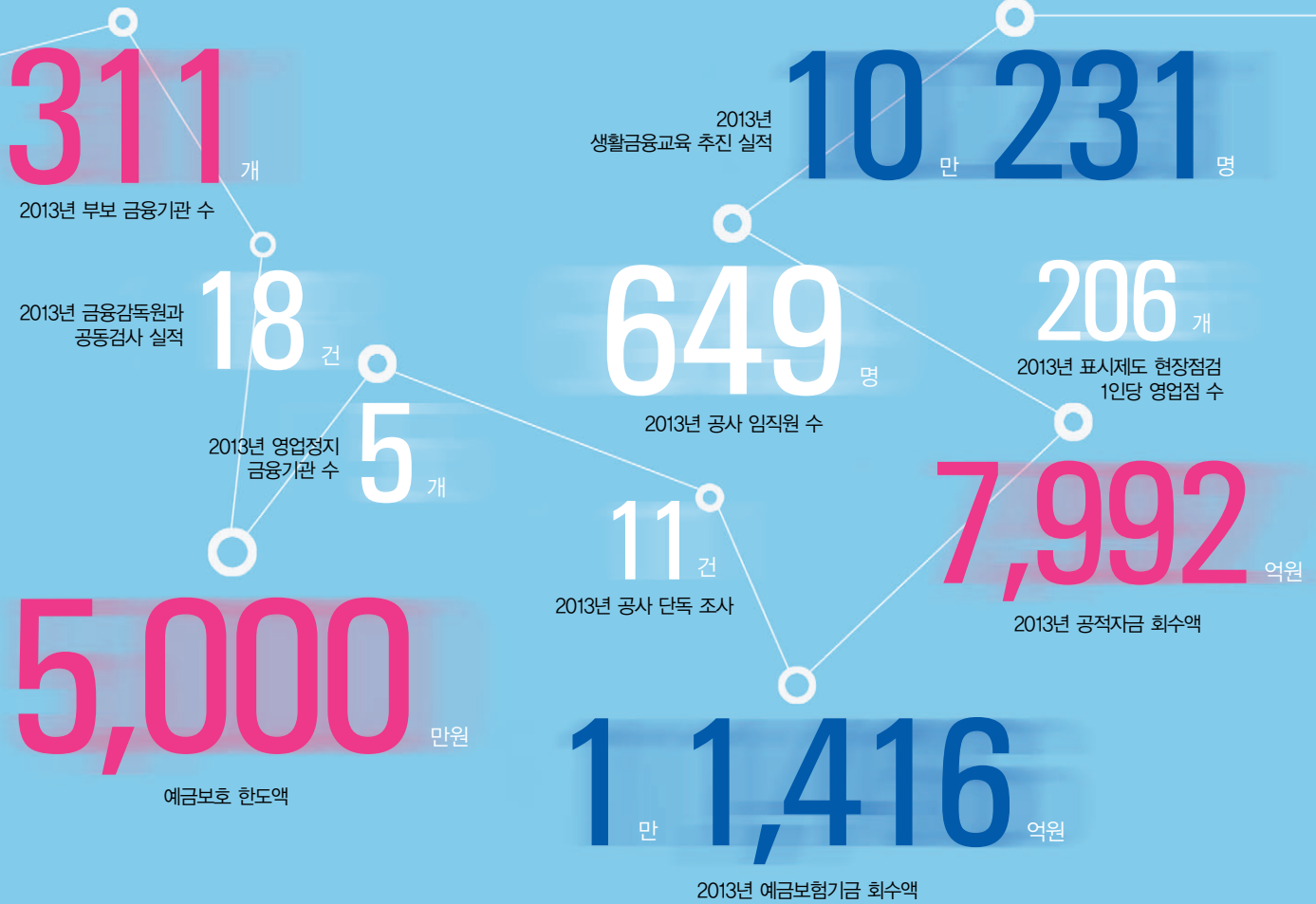
미션 →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비전 →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제1장

주요 추진 업무



KDIC

2012년 8개 저축은행과 1개 손해보험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에 이어, 2013년에도 5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됨에 따라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영업정지 후 즉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도입하여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정리과정에서 저축은행이 보유한 SPC 자산 및 PF채권 등 부실자산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금융업계에 건전경영 풍토가 정착되도록 유도하였으며,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 및 공동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부실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예금자보호 활동을 강화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자 공사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재정비하였다.

부보금융기관 리스크 상시감시 강화

공사는 독자적인 리스크 상시감시 모형을 운영하여 부보금융기관의 재무현황 변동 및 잠재 리스크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보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부실화가 진행될 경우 대규모의 기금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형·계열저축은행 10개사를 비롯한 총 18개 부보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경영개선을 유도하였다. 또한, BIS비율 7% 미만, 3년 연속 적자 등 단독 조사 요건에 해당되는 11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 및 해당 저축은행에 통보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였다.

〈표 1-1〉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및 공사 단독조사 실적

공동검사	→	2009년 15개사	→	2010년 24개사	→	2011년 31개사	→	2012년 9개사	→	2013년 18개사
단독조사	→	2009년 -	→	2010년 -	→	2011년 -	→	2012년 8개사	→	2013년 11개사

공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5개 금융정책 유관 기관 간 업무협약체인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여하여 금융정책기관 상호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정보공유 실무협의를 통해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보고서에 대해 추가 요청절차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감독관을 파견하여 해당 저축은행의 현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저축은행 대표이사 및 리스크 담당임원을 대상

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저축은행 실정에 맞는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하여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적극 유도하였다.

부실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 및 제도 개선

공사는 2013년도 중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서울, 영남, 신라, 스마일, 한울 등 5개 저축은행을 제3자 또는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방식으로 차질 없이 정리하였다.

〈표 1-2〉 2013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영업정지일	2013. 2. 15	2013. 4. 12	2013. 11. 1	2013. 12. 27
저축은행	서울, 영남	신라	스마일	한울

공사는 2012년 하반기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저축은행을 금요일 영업 종료 후 영업정지하고 주말 동안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절차를 마무리 하여 월요일에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금융거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금자 및 여신거래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2012년 하반기에 이어 2013년 상반기에도 공사는 서울·영남·신라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적용하여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하여 정리하였다. 하지만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 도입 후 7개 저축은행을 신규 또는 기존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함에 따라 공사의 가교저축은행 매각·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저축은행 P&A에 대한 시장수요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잠재인수자 물색 등의 노력으로 2013년 하반기에 스마일, 한울저축은행을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하여 예금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가교저축은행의 매각·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리체계를 정착시켰다.

〈표 1-3〉 2013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5개사) 정리 현황

영업정지 저축은행	서울	영남	신라	스마일	한울
인수기관	↓ 예주 (가교)	↓ 예솔 (가교)	↓ 예신 (가교)	↓ 오에스비 저축은행	↓ 페퍼 저축은행

아울러, 가교저축은행 및 계열저축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매각가치를 제고하고자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지원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였다. 일부 가교저축은행의 경우 흑자를 달성하거나 손실규모가 축소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계열저축은행도 경영진단 추진, 전문경영진 교체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진행하였다.

한편 저축은행업권의 계속된 실적 부진과 원매자 부족 등으로 가교저축은행의 시장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가교저축은행의 경영효율화를 통한 매각가치 제고와 매각노력을 병행한 결과 2013년 상반기에는 예한별저축은행을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매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3년 하반기에는 예솔, 예한솔저축은행을 각각 중소기업은행 및 KB금융지주회사에 매각 완료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된 그린손해보험에 대해서도 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개매각을 진행하여 2012년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한 후, 2013년 5월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을 거쳐 정리절차를 완료하였다.

특별자산의 효율적 매각 추진

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이 보유한 PF 대출채권 및 SPC 자산 등 특별자산 매각 시 유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매각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외에도 「국유재산법」을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자산의 관리 및 매각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자산별로 특화된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적정 매각시기 및 매각전략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PF사업장별 특성에 적합한 회수방식을 추진하고, 관련 관공서 등과 협조하여 인허가 사업권 등을 취득하거나 연장하여 자산 가치를 확보하였으며, 유사 성격의 자산은 그룹화하여 관리하고 자산별로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회수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외제차, 고가 미술품 등에 대하여는 미디어데이 행사 개최, 경매대상 미술품의 전시회 개최 및 해외경매 출품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잠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회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특별자산 회수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매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매각방안 등을 심의하는 한편,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방식을 단일기관에서 복수기관에 의한 평가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문검사역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 매각자문단 및 전문경영인 Pool을 구성하고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현지 전문가로 구성된 매각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공사는 파산재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파산재단 사무실을 통·폐합하고, 적정 업무보조인수 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파산재단 운영경비 절감 및 운영의 체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파산관재인 대리인에 대한 교육, 파산재단 업무현황 조사, 윤리강령 제정 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힘을 썼다.

또한 공사는 정기적인 파산재단의 자산평가를 통한 자산의 보유현황 및 매각 대상 자산을 파악하여 자산유형별 맞춤형 매각방안을 수립하는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와함께, 파산재단별로 연간 배당목표액을 부여하고 환가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조기배당을 유도하는 등 파산배당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 중 1조 4,926억원을 파산배당금 등으로 회수하였다.

공사는 수시로 파산재단의 비용 대비 환가효율성을 점검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재단에 대해서는 종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파산채권의 조기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3년 말 현재 전체 484개 파산재단 중 434개를 종결하였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부실책임 추궁

공사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및 계약 이전된 경우 부실책임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사반을 편성하여 부실저축은행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하고 적극적인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영업 정지된 8개 저축은행은 2013년 5월에, 2013년 상반기 영업 정지된 3개 저축은행 및 1개 손해보험회사는 2013년 8월에 부실책임조사를 완료하였고, 2013년 하반기 영업 정지된 스마일, 한울저축은행은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실책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 초기지원반 및 지도점검반 운영 등 현장중심의 업무지원을 통해 부실관련자에 대한 파산재단의 손해배상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기관 및 부실규모 증가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였고,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심의 대상자가 적기에 거증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기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심의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다.

한편,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3월에 부실채무기업 전담부서인 조사2국을 신설하였으며, 부실

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재산 확보 등으로 채권회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등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후부터 신속하게 재산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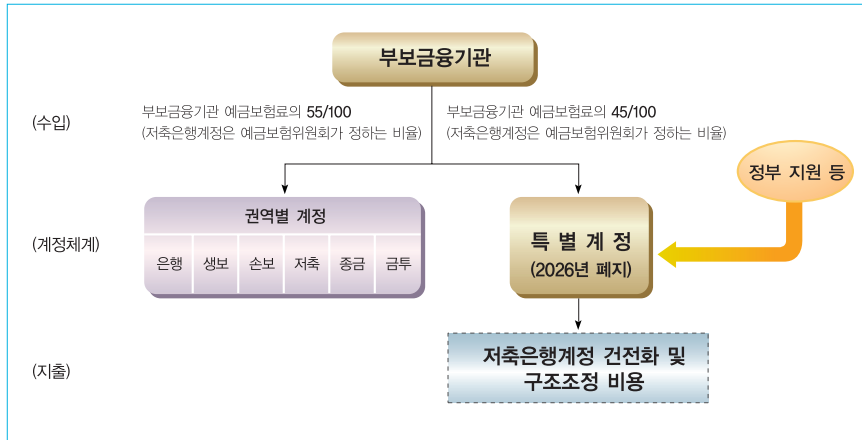
이와 함께 저축은행 감사 워크숍 개최, 저축은행 임직원 대상 교육 등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건진경영 풍토 조성에 노력하였고, 위법·부당행위자 관련 판례 등을 분석·정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제고

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2011년 이후 총 29개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하여 2013년 말까지 예금보험금 지급 등으로 총 26조 8,088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하여 적기에 지원하였다. 2013년 중에는 5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하여 1조 9,137억원을 특별계정에서 지원하였으며, 또한 1개 손해보험회사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226억원을 손해보험계정에서 지원하였다.

*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 건전화 달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예금보험료·차입금·채권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2011년 1월부터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그림 1-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구조



또한, 공사는 2012년 7월 및 2013년 11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총 2,000억원을 무이자·장기 상환조건(10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용자받는 한편,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채권’을 발행하여 외부 차입금을 상환하고 채권전자입찰시스템(E-BAS) 구축, 한도대출약정(한도 15조원) 만기 연장시 금리 하향 조정 등을 통해 조달비용을 절감하였다.

〈표 1-4〉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조달 및 지원 현황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조원)

지 원 액			조 달 액	
삼화 등 29개 저축은행	출자, 출연 및 예금보험금 등	26.8	계정 간 차입	1.8
			특별계정채권 등 외부조달	23.5
			예금보험료 등	1.5
합 계		26.8	합 계	26.8

한편 공사는 예금보험기금(특별계정 포함)을 통해 지원된 자금의 회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3년 중 파산배당금 등으로 총 1조 1,416억원을 회수 하였다.

2014년부터 도입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차등평가의 기본체계 및 금융업권별 평가지표를 골자로 하는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마련 (2013.3월 및 5월)하는 등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차질없는 운영과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사는 목표기금제 운영에 따른 보험료 감면과 관련하여 2012년 말 계정별 기금적립률에 따라 목표규모 상한을 초과한 금융투자계정은 보험료를 면제하였고, 하한을 초과한 생명보험계정 및 손해보험계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일부를 감액(각 45% 및 7%) 하였다.

공적자금의 차질 없는 상환

공사는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13년 말 현재 공사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상환해야 할 82.4조원 중 총 59.9조원을 정부출연금(45.7조원)과 회수자금 등(14.2조원)으로 상환하였다. 잔여 부채 22.5조원은 회수자금과 특별기여금 등으로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상환할 계획으로, 2013년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잔존부채의 상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공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지분매각이나 배당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2013년 중 출자 금융회사 지분매각, 배당 및 상환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총 7,992억원을 회수하였다.

KR&C가 보유한 SK하이닉스 지분 0.63%는 2013년 4월 블록세일을 통해 1,262억원을 회수하였고, 포항터미널 지분 100%는 2013년 6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160억원을 회수하였으며, 한국전력 지분 1.36%는 2013년 11월 블록세일을 통해 2,774억원을 회수하였다. 공사가 보유한 제주은행 지분 2.04%는 장내거래를 통해 24억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KR&C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공매를 통해 5개 종목을 매각하여 총 3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I-5〉 2013년 중 주요 공적자금 회수내역

SK하이닉스	• 2013. 4월, 보통주 블록세일을 통해 1,262억원 회수
포항터미널	• 2013. 6월, 보통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160억원 회수
한국전력	• 2013. 11월, 보통주 블록세일을 통해 2,774억원 회수
제주은행	• 2013. 1월~12월, 보통주 장중매각을 통해 24억원 회수
기타주식	• 2013. 총 4회의 KR&C 보유 비상장주식 공매를 통해 5개 종목을 매각하여 3억원 회수
기 타	• 2013. 1월~12월, 출자주식 배당금 2,944억원 회수 • 2013. 1월~12월, 파산배당금으로 164억원 회수

우리금융지주회사 매각과 관련하여 2013년 6월 2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에 따라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추진하여 2013년말에 BS금융지주회사와 JB금융지주회사를 각각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의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향후 최종인수자와의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및 매각대금 수령 등을 통해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완료하고, 우리은행 계열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방식 등을 결정한 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보유주식에 대해서도 개별 주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상황 및 주가추이를 보아가며 블록세일, 장중매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표 I-6〉 공사 보유 주요 지분 현황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총지원액	기회수액 ¹⁾	잔여지분 평가액 ²⁾	공사 지분율
우리금융	127,663	57,592	61,073	56.97
수 협	11,581	-	10,149	우선출자증권
서울보증	102,500	23,893	1,361	93.85
한화생명	35,500	13,932	16,316	24.75
제주은행	2,182	320	195	16.38
합 계	279,426	95,737	89,094	-

주 : 1) 지분 매각, 배당금, 상환우선주 상환 등을 포함한 금액 기준

2) 상장주식은 2013년 말 종가 기준, 비상장주식은 2013년 말 공사 결산서 기준

능동적인 예금자보호 서비스 실현

공사는 안전행정부 및 중구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망예금자의 미수령 예금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안내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및 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인 예금보험표시제도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표시제도 점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진제출 등의 온라인 점검방식을 시범 도입하여 해당 업무 담당직원 1인당 206개의 영업점을 점검하였다. 또한 공사는 금융 취약계층인 외국인에게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안내 자료를 6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배포·비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사는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사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사내 동호회와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예보사랑나눔기금 1구좌 이상 더 갖기 캠페인을 통해 활동을 위한 재원을 견고히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 시장경영진흥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과 협력하여 초등학교, 상인대학 및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대상 층별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였으며, 시장경영진흥원 주최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도 참가하였다.

〈표 1-7〉 2013년 생활금융교육 추진 실적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생	전통시장 상인	노년층	일반인	합 계
인원수	19,819	54,709	14,881	10,822	100,231

공사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하여 노년층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공익 캠페인 동영상 및 지면광고를 신규 제작하고 홍보효과가 높은 TV매체와 지하철·버스 등 생활 밀착형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관심 증가와 예금보험기구 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부응하여 공사는 신흥국의 예금보험제도 구축 또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을 2010년 12월부터 적극 추진해왔다.

그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2013년에는 몽골에서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고 몽골 예금보험공사가 창립되었다. 나아가, 공사는 일본, 대만 등 선진 예금보험기구와 공동으로 탄자니아 예금보험위원회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여 KSP 사업의 질을 제고하였다. 또한 KSP 대상 국가를 대상으로 강의 등을 담당하기 위해 운영 중이던 스페셜리스트 제도를 보완하여 수요가 많은 5개 주제에 대해서는 3년 임기의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를 새로 임명하였고, 2012년 공유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수요국의 관심이 높았던 주제에 대하여 추가 모듈화 작업을 진행하는 등 KSP 대상국가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유 사업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공사는 2013년 신규로 MOU를 체결한 일본, 말레이시아를 포함하여 총 13개국 16개 기관과 상호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예금보험기구와 예금보험 현안에 대한 정보·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사는 2012년에 IADI 전체 회원국의 투표를 통하여 수여하는 「올해의 예보기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공사는 높아진 위상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3년 IADI 아태지역위원회 연차총회를 유치·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금융위원장, IADI 의장 등을 포함한 25개국 예금보험기구 대표 및 고위 간부와 국내외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났다.

2013년 IADI 연차총회에서 집행위원 연임에 성공한 공사는 앞으로도 IADI 집행위원국으로서 주요 의제 논의, 연구 및 조사 활동 등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공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2013. 6. 1.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를 잇는 예금보험공사

창립 17주년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제2장

조직 운영

제1절 조직 구성
제2절 조직 관리

제1절 조직 구성

1. 예금보험위원회 및 이사회

가. 예금보험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는 위원장인 공사 사장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1인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2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정관의 변경, 공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공사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예금보험기금 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 기금 계정간의 거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지정,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 예금보험금 및 가자금금의 지급결정, 정리금융기관과 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부보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 공동 검사 참여 요청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표Ⅱ-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2013년 12월말 현재)

구 성		성 명
당연직 위원	예금보험공사 사 장	김 주 현
	금 융 위 원 회 부 위 원 장	정 찬 우
	기 획 재 정 부 차 관	추 경 호
	한 국 은 행 부 총 재	박 원 식
위촉직 위원	금 융 위 원 회 위 촉	이 흥 권
	기획재정부장관 추 천	이 철 환
	한국은행총재 추 천	김 희 경

〈표Ⅱ-2〉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구 분		주 요 내 용
의결 사항	의 결	- 공사 정관의 변경 - 공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 - 출연금, 예금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내지 납부 유예 - 예금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 -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 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지원 - 예금보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실시 결과 송부 요청 또는 공동검사 참여 요청 -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 조치 요청
	결 정	- 부실금융기관의 결정 - 부실우려금융기관의 결정 - 기금 계정간의 거래 - 예금보험위원회 의사록의 공개 방법 -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관련 필요 사항 -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관련 필요 사항 - 가지급금의 지급 - 최소비용원칙에 의한 자금지원 등의 예외 인정
	심 의	- 기금운용계획 - 공사 업무와 관련한 제규정의 제·개정
	지 정	- 여유자금의 운용 - 매입 대상 유가증권의 지정 - 예치 대상 부보금융기관의 지정
보 고 사 항		경영정상화이행약정 분기별 점검실적 보고

〈표II-3〉 2013년 중 예금보험위원회 의안 목록

일 자	처 리 안 건
1. 11	• 2013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안 • 영남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안 • ○○ 및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 결과 • 2013년도 예금보험공사 예산안 변경
1. 17	•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요청안 • 2012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2. 13	• 서울·신라·영남저축은행 일부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서울·신라·영남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 그린손해보험(주)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2012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공사 회계의 결산안
2. 27	• 2013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자산운용지침안 • 2013년도 예금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안 • 2012년도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계정간거래 내역 보고 • 2012년도 운영경비 정산결과 보고 • 2012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및 집행실적 보고 • ○○ 및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 •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3. 27	• 2013년 2/4분기 공동검사 참여 요청안 •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4. 24	• 2012년도 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 우리금융지주(주), 우리·광주·경남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 경영정상화 계획 추가안
5. 8	• 목표규모 초과 계정에 대한 예금보험료 감면 기준 및 감면 결정안
5. 22	• ○○은행 공동검사 결과
6. 12	• 2014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안 • 2014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계획안 및 동 채권에 대한 국가의 채무보증 신청안

일 자	처 리 안 건
6. 26	• ○○손해보험 등 5개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참여 요청안 • 서울보증보험(주) 경영정상화계획 추가안 •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
7. 24	• ○○ 및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 ○○ 및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
8. 21	•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9. 25	• ○○생명보험 등 4개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참여 요청안 • 2013년도 1/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 2013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반기결산 결과
10.10	• 해솔저축은행 및 한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안 • ○○ 및 △△,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보고
10.23	• 스마일저축은행 일부 자산·부채의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스마일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 ○○ 및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보고
11.13	•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 및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11.27	• 2013년도 2/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
12.19	• 2014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안 • ○○손해보험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보고 • ○○ 및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12.24	• 한울저축은행 일부 자산·부채의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한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안 • 2014년도 예금보험공사 예산안

나. 이사회

이사회는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이내 및 비상임이사 7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 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장의 임기는 3년이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공사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결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 주요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임원의 보수,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조직·인사 등 공사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다른 법령·정관 또는 다른 내규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표II-4〉 임 원

(2013년 12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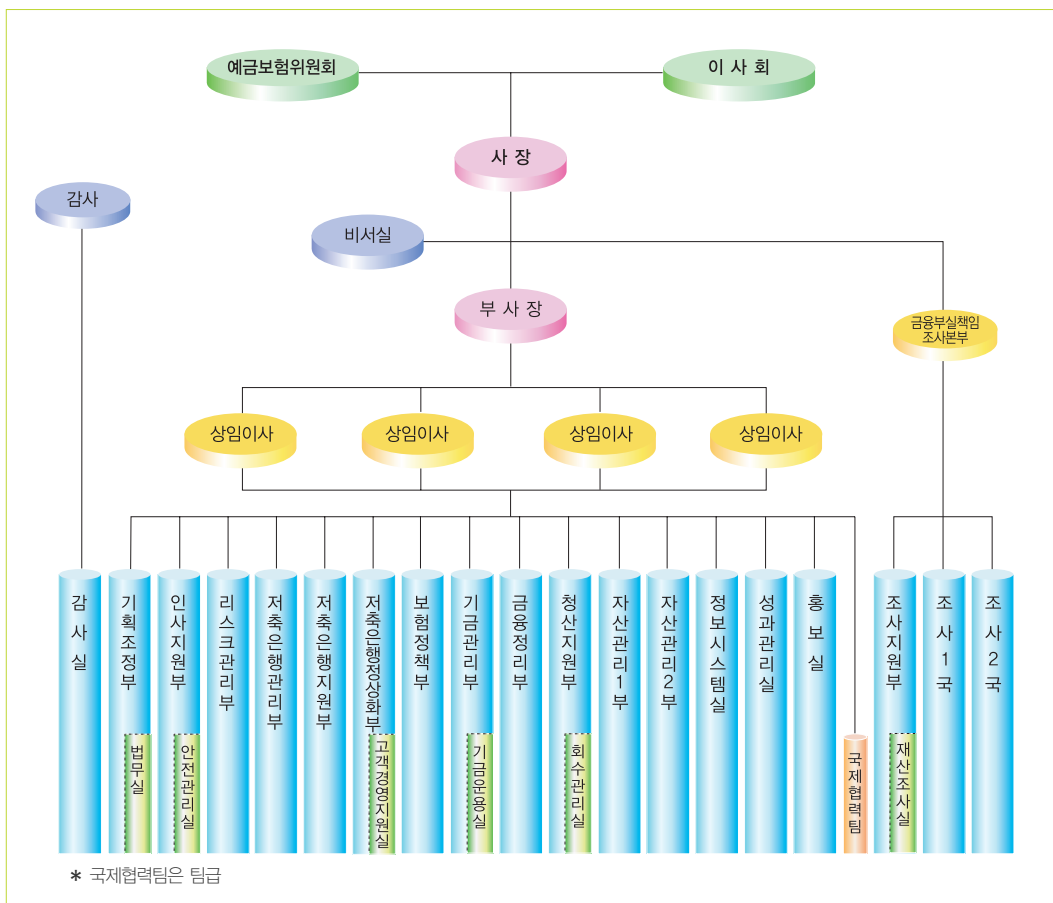
직 위	성 명
사 장	김 주 현
부 사 장	조 현 철
상 임 이 사	최 효 순
상 임 이 사	정 왕 호
상 임 이 사	정 욱 호
상 임 이 사	신 승 우
비상임 이사	한 정 길
비상임 이사	이 수 화
비상임 이사	이 기 석
비상임 이사	오 창 석
비상임 이사	김 교 식
비상임 이사	이 상 일
비상임 이사	조 흥 식
감 사	이 상 목

2. 조직 일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1996년 6월 1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기획조정부, 인사지원부, 리스크관리부, 저축은행관리부, 저축은행지원부, 저축은행정상화부, 보험정책부, 기금관리부, 금융정리부, 청산지원부, 자산관리1부, 자산관리2부, 정보시스템실, 성과관리실, 홍보실, 비서실, 감사실 및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12부 5실 1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표II-5〉 조직도

(2013년 12월말 현재)



〈표II-6〉 인원 현황

(2013년 12월말 현재 인원, 단위 : 명)

구 분	인 원	직 원		
		일반직	별정직 ²⁾	합 계
인 원	14 ¹⁾	524	111	649

주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비상임이사 7인 포함

2) 변호사, 박사 등 전문직과 경영관리인, 파산관재인 대리인 및 검사인력 등 특정직

제2절 조직 관리

1. 비전,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가. 비전체계

(1) 공사 비전 및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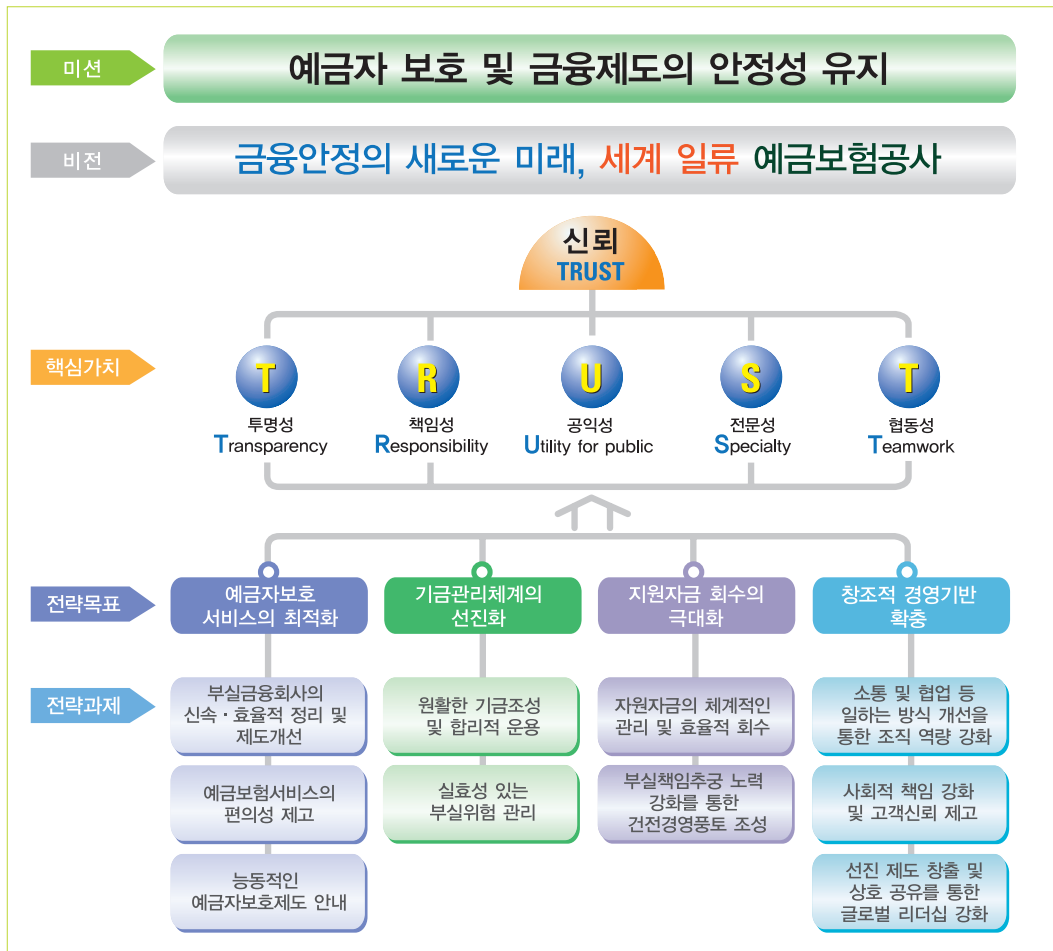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7년간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도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선진화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예금자와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최고수준의 예금자 보호기관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2) 비전 및 전략체계도

〈그림 II-1〉 KDIC 비전 및 전략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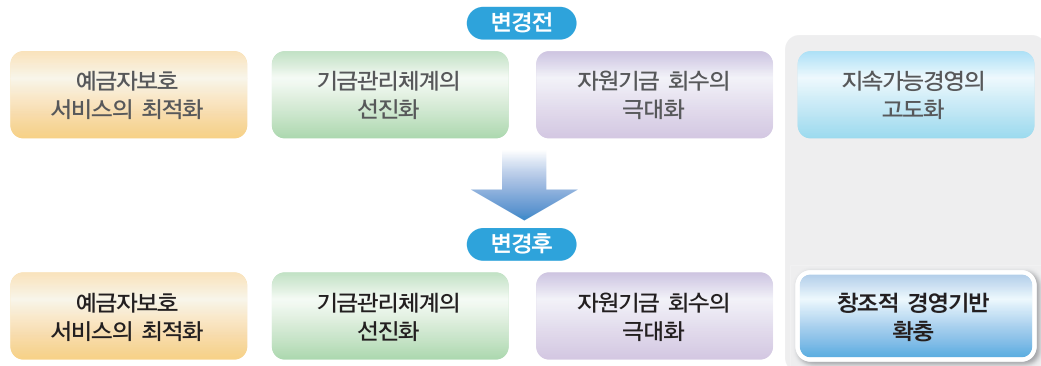


나. 전략목표 · 전략과제의 재정비

공사는 2013년 2월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전략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직원 의견 수렴절차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13년 9월 전략체계를 재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신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전략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이 되도록 하였다.

〈 전략목표 수정 〉



〈 전략과제 수정 〉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협업 활성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신정부 정책을 반영



- 전략목표와 전략과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략과제의 방향성을 제고



- 정리지도 개선 등을 반영한 미래대비 과제를 추가



다. 전략목표, 전략과제 및 세부 실행과제

공사는 비전을 달성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4대 전략목표로 '예금자보호 서비스의 최적화', '기금관리 체계의 선진화', '지원자금 회수의 극대화' 및 '창조적 경영기반 확충' 으로 설정하고, 동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10대 전략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세부 실행과제도 5년간(2014~2018)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

〈표11-7〉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실행과제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 부 실행 과 제
예금자보호 서비스의 최적화	부실금융회사의 신속·효율적 정리 및 제도 개선	- 부실금융회사의 신속하고 효율적 정리 - 비저축은행에 대한 정리제도 개선 등
	예금보험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 신속하고 편리한 보험금 지급 - 정보기술을 활용한 예금보험정보의 이용 편의성 제고
	능동적인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표시제도 점검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고객맞춤형 예금자보호제도 홍보 강화
기금관리체계의 선진화	원활한 기금조성 및 합리적 운용	-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관리 -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및 운영 - 상환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상환대책 이행 -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안정성 균형 관리
	실효성 있는 부실위험 관리	- 리스크 감시 역량 및 분석 서비스 강화 - 리스크 요인의 조기파악 및 적시대응 - 조사·공동검사의 효율적 수행
지원자금 회수의 극대화	지원자금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회수	- 보유지분 및 자산의 효율적 매각 추진 - MOU 관리 효율성 제고 -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 특별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회수 극대화
	부실책임추궁 노력 강화를 통한 건전경영풍토 조성	-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재산조사 효율적 실시 - 부실책임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창조적 경영기반 확충	소통 및 협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 핵심 업무 중심의 합리적 조직 및 예산 운영 - 인사·보수·성과평가 제도의 합리성 제고 -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 및 협업 활성화 - 정보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고객 신뢰 제고	- CS 경영체제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 정착 - 능동적 정보 공개 및 공유 - 생활금융교육 강화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
	선진제도 창출 및 상호 공유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해외 예금보험기구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전파·공유 - IADI 내 리더십 강화 및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협력 활성화

2. 역동적인 인사, 조직문화 구현

가.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하이-KDIC」 프로그램 실시

공사는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친절한 대국민 서비스(Hi)’와 ‘공사의 위상 및 역량 강화(High)’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하이-KDIC」 프로그램을 2013년에도 시행하였다.

「하이-KDIC」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소통 활성화’와 ‘공감대 형성’ 및 ‘다함께 실천’ 등 3대 실행과제는 공사의 미션 및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어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표 II-8〉 하이-KDIC 주요 프로그램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2013년 실적
소통 활성화 (전방위 소통)	무비 데이	업무성과가 우수한 팀을 “이달의 팀”으로 선정하여 해당 팀원에게 영화관람 기회 제공	12회
	스마트 보드	직급별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스마트 보드를 구성하여 “쌍방향 의사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	수시회의 개최
	Cross Meeting (합동간담회)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부서(팀)간 회의 개최	19팀
	해피 나잇	경영진이 직원 사기진작 제고 및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야간근무 실시 부서를 방문하여 격려하는 행사	16회
	멘토링	회사나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선배직원이 신입 직원을 전담하여 일정기간 지도	140명
	런치콜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CEO와의 점심 이벤트 프로그램	5회
	티앤티톡	CEO가 정기적으로 대상 팀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는 프로그램	9회
공감대 형성 (행복한 일터)	사회공헌 활동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1부서 1도움주기, 무료 급식 등 다양한 활동 실시	총 16개 프로그램 (2,576명)
	사내공모제	사내의 필요 인재를 선택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성 증대	직무전문가, FDIC 등 총 7명
	KDIC-Highway 연수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서로 다른 부서, 다른 직급 직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문화체험, 극기훈련 등의 연수 실시	3개팀 (15명)
	Follow-up 연수	입사 5년차 이상 직원들의 유대감 강화 및 리더십 등 역량강화를 도모	1회(22명)
	가정의 날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정시퇴근을 유도하여 가정 친화 및 자기계발 촉진	매주 수요일
다함께 실천 (핵심가치 공유)	정책설명회	임원 또는 부서장이 공사의 주요정책에 대해 전 직원에게 설명·공유	22회
	KDIC-다움	핵심가치의 주요내용 및 실천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태도를 체화하는 교육형 워크숍 프로그램	1회
	K-Oasis	지식경영 관련 지식포털시스템 운영	연중 운영
	파고 TV	경영이념, 경영전략회의, 홍보/보도자료 등 경영전략 공유를 위한 VOD서비스 제공	연중 운영

나. 예금보험기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

공사는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 과정에서 자산회수 및 부실채무기업 조사에 대한 업무량이 증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3년 3월 자산관리 전담 부서, 조사2국을 설치하는 등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강화를 탄력적으로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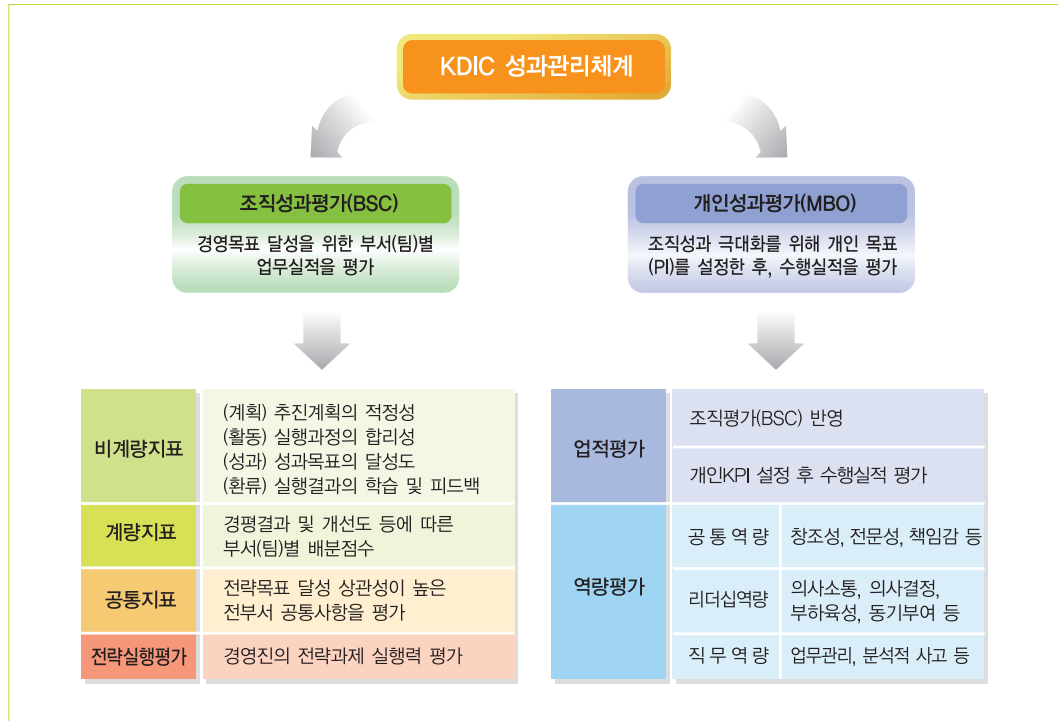
또한, 부서 간 지속적인 업무 조정 및 임시조직 활용 등을 통해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하고 업무 처리의 생산성도 제고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다.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평가제도 운영

공사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5년 말 전략적 성과관리제도(Balanced Score Card : BSC)를 도입하여 2006년 부서 단위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고, 2007년 팀 단위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하였다. 2009년부터는 성과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성과평가제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3년에는 「성과주의 인사·보수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고 외부 평가위원 풀(pool)의 이원화, 변별력 확대를 위한 상대평가의 강화 등 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핵심 리스크지표의 확대 운영, 워 게임(war game)의 실시 등 2012년도에 도입한 리스크 연계형 성과관리체계의 내재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아울러, 2010년 노사합의로 도입한 전직원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각 개인의 업무 수행 실적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개인성과평가제도(MBO)를 2012년 전산화한 것을 2013년에는 정착시키는데 주력하는 한편 평가 주기의 세분화, 파산관재인 대리인 평가군의 조정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였다.

〈그림 II-2〉 KDIC 성과관리체계도



3.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

가. 윤리경영

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경영의 대표 핵심가치를 TRUST(Transparency, Responsibility, Utility of public, Specialty, Teamwork)로 정하고 윤리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윤리경영을 도입하여 전사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체계적 실천을 위하여 매년도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대내외적인 업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윤리경영체계의 지속적 개선과 윤리경영 문화의 정착·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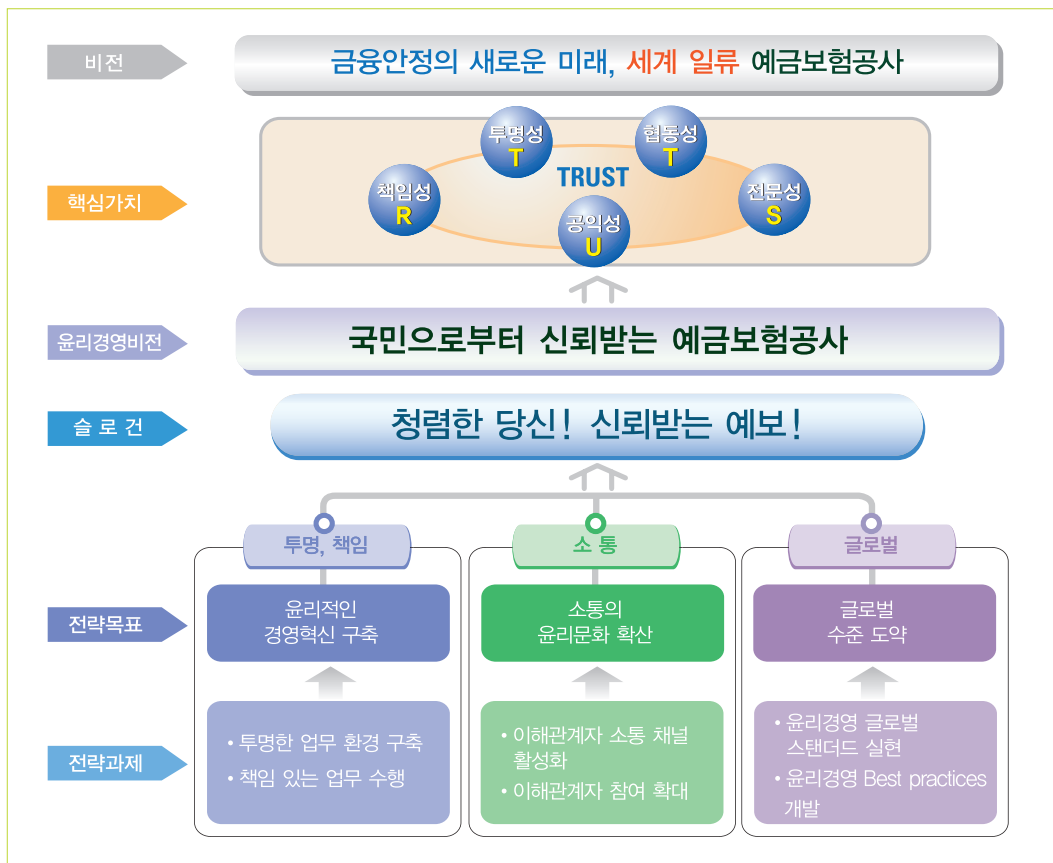
특히 2013년에는 일반직원 연찬회를 활용한 '윤리경영 共感 콘서트'를 추진하여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제고하였으며, 대내적인 윤리경영 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스토리텔링형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실시, 청렴·윤리 실천리더 워크숍 실시,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쉐임직원 실천선서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전경영 풍토 조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UN 산하 전문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에 이행상황 보고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속가능경영 실태 조사(KoBEX SM) 참여 등을 통하여 윤리경영 실천수준에 대한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도 공공기관 윤리경영 모범 사례로 공사가 선정되어 '2013 윤리경영 실천사례집'에 수록되었고, 2013년 12월 KoBEX SM 결과에서 최고등급인 'AAA' 등급 유지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책임경영 강화 지속 요구 및 정부3.0 추진을 통한 소통 강조 등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2013년 12월 기존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 계획'을 개선한 「新중장기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내공모를 통하여 윤리경영 슬로건 선정을 추진하였고, 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출된 윤리경영 4대 추진 방향성(투명, 책임, 소통, 글로벌)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새로이 설정하였다.

〈그림II-3〉 新중장기 윤리경영 추진 전략 체계도



나. 사회공헌 활동

(1)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속적 추진 및 확대

공사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신뢰에 보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사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회공헌 활동 아이디어 공모전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공사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실히 참여한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을 확대 실시하는 등 공사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활동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예보사랑나눔기금 1구좌 이상 더 갖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임직원들의 나눔 의식을 함양하고 공사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재원을 견고히 하였으며, 공사 임직원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 사회공헌활동 자발적 완주프로그램」도 시행하였고, 공사 사내 동호회의 특성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여 쉼임직원이 사회공헌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 생활금융교육센터」도 개소하여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추진

공사는 2012년 5월 지역 환경 개선 및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9개 기관과 「청계천 자원봉사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협약을 기초로 2013년 3월에 10개의 협약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계천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2년 10월 삼성화재, 하나은행, 씨티은행, 다동·무교동 상가번영회와 「다동·무교동 동반성장 및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사회공헌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2013년 3월부터 5회에 걸쳐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사회공헌활동 실시, 지역 축제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협약기관 확대를 통해 동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관기관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표II-9〉 유관기관 연계 공동 사회공헌 활동 참여 현황

참 여 일	공동 사회공헌 활동명	주관 기관
2013. 3.31	청계천 정화	삼성화재
2013. 5. 4	잠원 지구 '누에를 아름답게' 봉사	시티은행
2013. 6.13	청계천 광장 헌혈 행사	예금보험공사
2013. 8. 7	'다시 서기' 무료 급식 봉사	하나은행
2013. 9.14	다동·무교동 나눔의 대축제 참여 및 백미(20kg, 100포) 등 지원	다동·무교동 상가번영회

또한 공사는 다동·무교동 상가번영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상가에 근무하는 종업원 자녀 중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공사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을 재원으로 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3)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

공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1년 8월 종로구 통인동에 소재한 통인시장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2012년부터는 매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도시락데이)로 지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점심시간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고, 상인대학 강의시 전통 시장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2013년에는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파산재단 소재 지역의 전통시장과의 자매결연(2곳, 대구·전주 소재)을 맺었으며, 향후에는 5개 지역(수도권·충청·부산·광주·제주 등) 소재 전통시장과도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이다. 자매결연을 맺은 각 지역 전통시장에는 매월 장보기 행사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표II-10〉 자매결연 및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자매결연 시장	1곳	3곳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자	485명	900명*
구 매 액	6,794천원	38,569천원

* 공사에서 참여한 인원이며, 관재인 등을 포함하면 1,006명

(4)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공사는 2013년 중 임직원 기부금(1구좌 5,000원),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및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등으로 총 1억 9,144만원의 「예보사랑나눔기금」을 조성하여, “이웃과 공감”, “지역과 공감”, “농촌과 공감”, “환경과 공감” 등 네 분야에 걸친 사회공헌활동으로 1억 8,944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웃과 공감” 활동은 공사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생활금융교육(예금보험제도 등 생활금융 지식 공유)외에 예보꿈나무 장학사업 확대 시행(기존에는 수도권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 1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다동·무교동 상가번영회의 중·고등학생 10명도 추가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장애우 결연사업(정신지체 장애우 특수학교인 ‘서울정진학교’ 및 장애인 생활시설인 ‘승가원’에서 봉사활동), 사회복지 단체 등에 대한 성금·물품 후원 사업, 가족친화형 사회공헌활동(동호회 연계) 및 개별/그룹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과 공감” 분야에서는 무료급식(은평구 소재 사회복지단체인 ‘나눔의 동지’ 급식비 지원 및 배식활동), 1부서 1가정(시설)돕기(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봉사활동 수행), 사랑의 집고치기(‘해비타트 서울 지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전통시장 가는 날, 예금보험제도 안내 캠페인), 유관기관 연계 사회공헌활동(다동·무교동 협약기관 공동 사회공헌 프로그램), 현충원 봉사활동(묘비 닦기, 잡초 뽑기, 조화 교체 등)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 자매결연을 한 충남 예산군 운곡리 사과마을에 대한 일손돕기 활동으로 1사 1촌 지원 사업(“농촌과 공감”),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 쉼터인 청계천 정화활동(“환경과 공감”)도 전개하였다.



〈표II-11〉 2013년 사회공헌 활동 내역

(2013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천원)

구 분		활 동 명	참여인원	후원금	주 기
이웃과 공 감	성금·물품기부	불우이웃돕기, 이삭의 집 등(17개)	-	50,500	연간
	장학금 지원	수도권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 대상	20	20,000	매년
	장애우 결연	서울정진학교, 승가원 자원봉사	112	849	매월 첫째 목요일
	가족친화형	동호회 활동 등	7	2,497	수시
	개별/그룹활동	개별 봉사활동	33	-	수시
지역과 공 감	무료 급식	은평 나눔의 동지	110	11,000	매월 셋째 화요일
	1 부서 1 가정 돕기	평화모자원 등 24개 가정 및 시설 지원	929	34,463	매월
	사랑의집고치기	저소득가정 주거환경 개선 (해비타트와 연계)	36	6,671	분기
	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통인시장) 가는 날	1,006	38,569	매주 목요일
	다동·무고동 협약기관	헌혈, 무료급식, 지역 축제 지원 등	29	-	연간
	헌 충 원	헌충원, 잡초 뽑기, 조화 교체 등	45	-	연간
농촌과 공 감	1사 1촌 지원	자매결연마을 일손돕기 (운곡리 사과마을)	79	23,009	반기
환경과 공 감	청계천 정화	청계광장에서 삼일교까지 정화	181	1,882	매월 넷째 금요일
합 계		-	2,587	189,440	-

* 예보사랑나눔기금 결산 기준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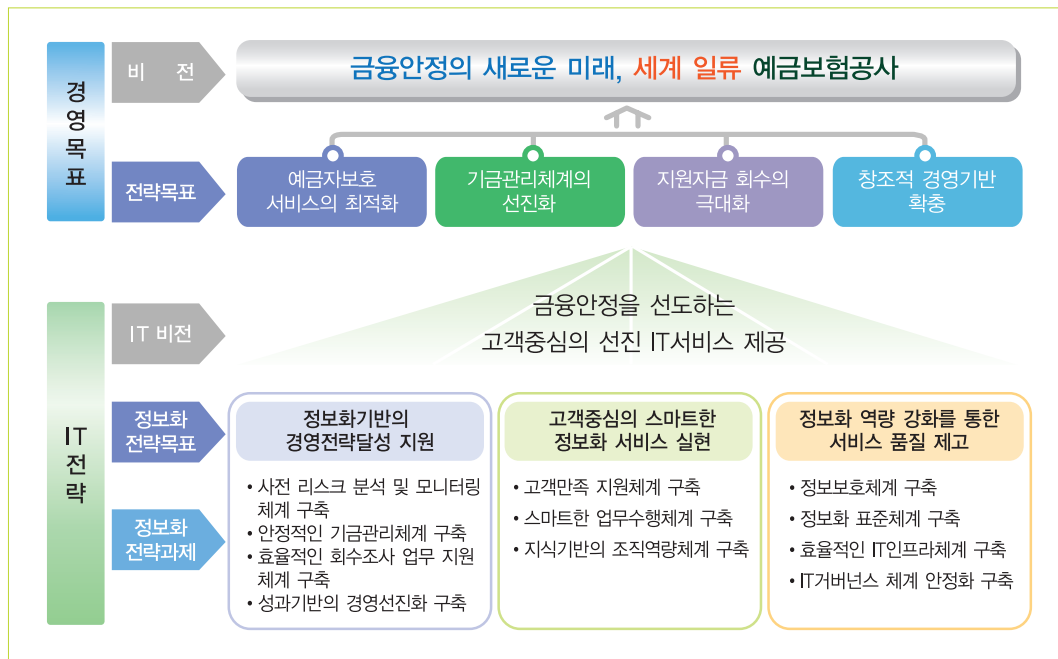
조직 관리



4. 중장기 정보화 계획 추진 현황

공사는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영전략 달성과 고객지원 강화를 위한 제3차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2011~2013)을 수립하였으며, ‘금융안정을 선도하는 고객중심의 선진 IT서비스 제공’이라는 IT비전 달성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II-4〉 정보화 중장기 전략 체계도(2011~2013)



2013년도에는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의 3단계에 해당하는 세부 이행과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정보화 기반의 경영전략달성 지원」이라는 정보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IFRS 결산 지원 시스템 구축과 회계시스템 고도화로 안정적인 기금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고객 중심의 스마트한 정보화 서비스 실현」이라는 정보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들이 편리하게 공사 관련 법규의 개정 진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력 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법무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실시하였고, 공사 홈페이지의 메뉴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고객별 맞춤형 메뉴를 제공하였다. 또한, 정부 3.0 정책에 부응하여 공사가 공개하는 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메뉴도 신설하였다.

셋째,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라는 정보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 시스템에 대한 사전 투자 타당성 평가 및 사후성과 평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IT 투자성과 관리 기능을 공사 EAMS 시스템에 추가 구축하여 효율적인 투자성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도에 인증을 획득한 국제표준 ISO20000의 인증 유효기간 갱신 심사도 차질 없이 완수하였다. 또한, 웹메일 시스템 기능개선을 실시하여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및 사용자 계정의 패스워드 관리정책 강화,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서버계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사 서버에 대한 계정관리 및 보안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을 획득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표II-12〉 3단계 (2013년) 정보화 세부 이행과제

정보화 전략 목표	3단계(2013년도) 정보화 세부 이행과제	
I. 정보화 기반의 경영전략 달성 지원	국제회계보고기준 적용 및 회계시스템 고도화	(2012.12 ~ 2013.07)
II. 고객중심의 스마트한 정보화 서비스 실현	- KMS 기능개선 - 법무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공사 홈페이지 개편	(2013.11 ~ 2014.03) (2013.02 ~ 2013.06) (2013.07 ~ 2013.12)
III.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웹메일 시스템 기능개선 - 서버계정 관리시스템 구축 - 국제표준 인증 사후심사 - IT 투자성과 관리기능 구축	(2013.01 ~ 2013.04) (2013.02 ~ 2013.05) (2013.04, 2013.11) (2013.10 ~ 2013.11)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여금보험공사

금융교육센터 개소



제3장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제1절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제2절 부실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1.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제고

가. 주요 홍보 추진 실적

공사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개선과 공사의 역할·가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전년도 홍보활동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주부 및 50~60대 이상 등의 정보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맞춤형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홍보 타겟별 관심이슈와 특성을 고려하여 홍보콘텐츠를 신규 제작하였으며 제도광고와 이미지 광고를 구분하여 매체별로도 특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주부, 학생, 노년층을 대표하는 일반인 광고모델을 활용하고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소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버전의 홍보 동영상을 신규 제작하였으며 광고 소재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강화를 위해 일반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아울러, 온라인/SNS용 동영상과 청각장애인용 버전을 별도로 제작하여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형 홍보와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였다.

홍보매체는 매체인지율이 높은 공중파TV와 케이블TV를 병행 활용하였고 전통매체인 신문·잡지와 더불어 KTX, 버스, 지하철 등 교통매체 및 LED 전자현수막 및 옥외전광판 등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생활밀착형 매체의 활용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예금자보호제도 보호한도 및 후순위채권 비보호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공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홍보활동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무원가성 홍보매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반상회보를 연중 활용하고 금융기관 가계부 및 영업점 동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하였으며 시청률 및 유동인구수 등을 고려한 매체운영으로 전반적인 홍보 효율성 개선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및 모바일기기 활용인구 증가추세에 따라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 홍보를 강화하였다. SNS 이벤트를 연중 실시하여 대국민 관심도를 높였으며 블로그 기자단을 SNS 기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공사 관련 콘텐츠 생산 및 확산활동으로 예금자보호제도 및 공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한편 공사는 “서울머니쇼” 및 “부산국제금융박람회”에도 매년 참가하여 찾아가는 홍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전용부스에서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금융정보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고객 중심으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일대일 상담 등을 실시함으로써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에 따른 불안감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표Ⅲ-1〉 연도별 예금자보호제도 홍보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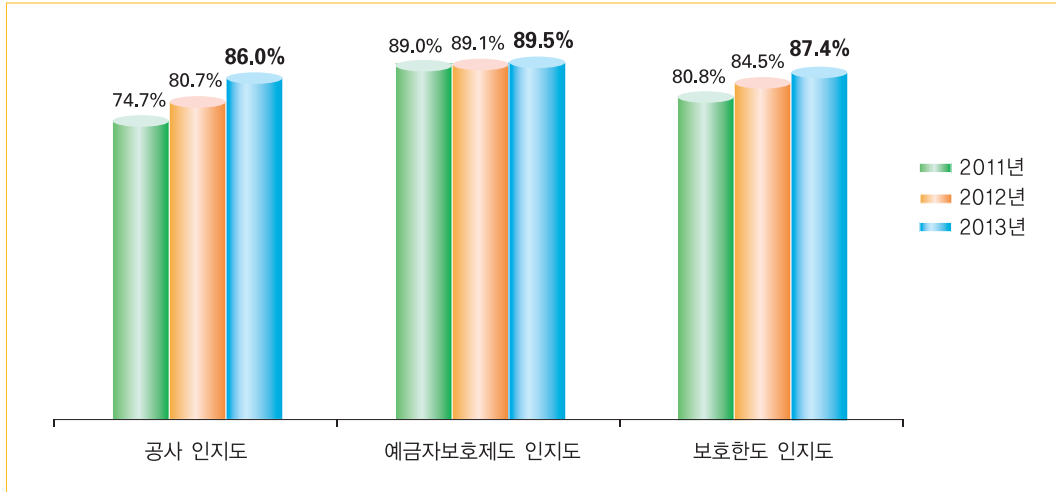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홍보 이미지			

나.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

공사는 매년 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여론조사를 외부 전문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측정된 공사 및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수준을 보면 공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경제교육의 확대와 지속적인 공사 관련 언론보도 등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도 ‘공사 인지도’는 86.0%로 전년대비 5.3%p 증가하였고,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는 89.5%로 전년대비 0.4%p, ‘예금보호한도에 대한 인지도’가 87.4%로 전년대비 2.9%p 증가하였다.

〈표Ⅲ-2〉 연도별 예금자보호제도 인지도 추이



2. 표시제도 이행여부 점검 및 안내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부보금융기관은 예금자 등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 예금 보험관계의 성립여부와 그 내용을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공사는 보험관계 표시 이행여부에 대해 부보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는 부보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보호대상 금융상품과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을 본인의 책임 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정보 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

〈표Ⅲ-3〉 표시제도 현장점검 1인당 영업점 수

구 분	2012년	2013년	증 가
1인당 점검 영업점수	160개	206개	29%↑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및 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표시제도 이행여부 점검을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2013년에는 표시제도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하였고, 부보 금융기관의 표시제도 이행여부를 사진으로 제출받는 온라인 점검방식을 시범 도입 운영하는 등 점검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부보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년 해당 업무 담당직원 1인당 206개의 부보금융기관 영업점에 대한 표시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업무효율성도 제고하였다.

또한 공사는 금융취약계층인 외국인의 피해 예방과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안내 자료를 6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배포·비치하도록 하였다.

3. 생활금융교육 실시

가. 금융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

공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대두 되어 2010년부터 초등학교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전통시장 상인, 노년층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금보험제도 등에 대한 방문교육, 현장상담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SMART 생활금융교육(안)」을 마련하여 찾아가는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매년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초등학교에 생활금융교육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교육신청을 받고,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생활금융교육 강사가 직접 각 학교를 방문 하여 용돈관리 및 예금보험제도 등의 내용으로 생활금융교육을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94회에 걸쳐 19,81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다.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2011년 11월 시장경영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상인대학 정규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2013년에는 54,709명의 상인을 대상으로 생활 금융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여건이 열악한 전통시장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기자재(노트북 컴퓨터 및 빔 프로젝터 30 SET)를 지원하였으며, 시장경영진흥원이 주최하는

각종 박람회(전국우수시장박람회, 상인대학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안내하고 공사의 생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였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정 등을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예금보험제도 안내 교육을 진행하여 왔으나, 2012년 9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에는 전국 220개의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14,881명에 대하여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여건이 열악한 노인복지관을 위해 교육기자재(노트북 컴퓨터 94대, 빔 프로젝터 58대)도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노인복지관 전국대회, 전국노인 자원봉사대축제 등)에 참여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안내하고 공사의 생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였다.

공사가 2013년 한 해 동안 초등학생, 전통시장 상인, 노년층, 자립청소년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금융교육 과정은 총 603회, 100,231명에 이르며, 이러한 실적 및 노력의 결과로 「2013년 제2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나. KDIC 생활금융교육센터 개소

생활금융교육은 교육 대상층이 다양화 되면서 교육기법 등의 품질 제고를 위해 변화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공사는 2013년 10월 기존의 직접 방문교육 위주의 생활금융교육에서 교육 콘텐츠 R&D, 강사양성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KDIC 생활금융교육센터」를 개소하였다.

「KDIC 생활금융교육센터」의 개소로 인해 공사는 생활금융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였으며, 향후 동 생활금융교육센터를 통해 교재개발 및 연구, 교육 대상층 확대 등 생활금융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추구할 예정이다.

다. 교육 대상층별 교재 개발

공사의 교육 대상층이 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대상층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따라 기존 2종(초등학생용, 상인대학용)의 교재로는 대상층별 맞춤형 교육이 어려워 신규 교재개발을 추진하였다. 총 5종(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상인대학용, 노년층용, 일반인용)으로 구성된 신규 교재는 주 교육대상인 초등학생, 전통시장 상인,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교재와 함께 범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일반인용 교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층별 맞춤형 교재를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일반인용 교재를 통해 교육 대상층 확대요구도 충족하고 있다.

〈표Ⅲ-4〉 2013년 생활금융교육 추진 실적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생	전통시장 상인	노년층	일반인	합 계
인원수	19,819	54,709	14,881	10,822	100,231



제3장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제2절 부실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보호

1. 경영관리 중 여신 고객 등에 대한 불편 해소

2011년부터 이루어진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인해 예금자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여신 고객들도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대출 상환과 관련된 혼란, 대출 만기 연장 중단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 등과 같은 민원이 공사에 접수되었다. 이에 공사는 고객의 범위를 예금자뿐만 아니라 여신거래자까지 확대하여 고객중심의 예금자보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표Ⅲ-5〉 여신고객 불편 해소 방안

사 업 명	주 요 내 용	기 대 효 과
예보 관련 여신협의회 구성	예보관련 저축은행의 중복 채무자를 위한 여신협의회 구성	여신 관련 창구단일화
대출 만기 연장 가이드라인 제공	만기도래 대출의 연장 대상, 조건 등을 제시	채무자의 상환능력 제고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 안내	안내문 문자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 안내	금리 부담 완화
대출채무자 안내 강화	경영관리 착수시 대출상환 관련 안내문 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	연체 등을 방지하여 채무자 피해 예방

‘예보 관련 여신협의회’는 예보 관련 금융기관간의 동일 차주 또는 동일 담보 여신 중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공사 내 담당 부서 주관 하에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2013년

에도 ‘예보 관련 여신협의회’가 두 차례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신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창구단일화로 채무자의 불편을 감소시켰다. 또한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연장기간 등을 적의 조정토록 하는 ‘대출 만기 연장 가이드라인’ 제공, 안내문 발송을 통한 ‘저금리 대출 안내’, ‘홈페이지를 통한 여신고객 안내’ 등을 계속 시행하였다.

2. 예금보험금 등의 신속한 지급 및 서비스 강화

2011년~2012년 저축은행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공사가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한 결과 보험금 지급대상자 중 99.4% 이상의 예금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0.6%의 휴면보험금 보유 예금자들에게는 안전행정부의 최근 주소지 정보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예금자들이 휴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기존에 사망예금자로 파악되어 현 거주지 주소 등 연락할 방법이 없던 사망예금자의 상속인의 경우에도 공사는 안전행정부 및 중구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망예금자의 가족정보를 받아, 유족에게 직접 휴면보험금을 안내하여 상속 등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이처럼 공사는 사망예금자의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안내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예금보험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공사는 휴면보험금 안내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상속인이 금감원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할 경우 공사의 휴면보험금도 안내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금 지급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공사는 예금자 민원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 크레슈머단’ 등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통합정리정보시스템’의 보험금 지급시스템 기능개선을 2013년 1월에 완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금 지급 비율이 기능개선 이전의 34.7%에서 46%로 향상되었다.

또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험금 지급과 무중단, 무장애의 편리한 인터넷 보험금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사는 2013년에 보험금 지급업무 액션플랜 등을 마련하여 영업정지 후 익영업일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금융거래 중단 없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하여 정착시켰으며, 2013년에 영업정지 된 5개 저축은행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금융거래 중단기간 최소화

공사는 2012년 12월 이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서울·영남·신라·스마일·한울저축은행을 2012년 하반기 도입한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결정 직후 매각절차를 추진하여 금융거래 중단 없이 제3자 또는 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예금자 등 해당 저축은행 거래자들의 불편과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표Ⅲ-6〉 2013년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현황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영업정지일 (=계약이전일)	영업재개일	영업정지기간	비 고
서울	가교 계약이전	2013. 2. 15	2013. 2. 18	2일(익영업일)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
영 남	가교 계약이전	2013. 2. 15	2013. 2. 18	2일(익영업일)	
신 라	가교 계약이전	2013. 4. 12	2013. 4. 15	2일(익영업일)	
스마일*	제3자 계약이전	2013. 11. 1	2013. 11. 4	2일(익영업일)	
한 울	제3자 계약이전	2013. 12. 27	2013. 12. 30	2일(익영업일)	

* 정상 영업 중 제3자로의 계약이전 최초 사례

2012년 하반기부터 예금자 불편 및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에 따라 2013년 상반기에도 서울·영남·신라저축은행을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정지와 함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고, 익영업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营业을 재개함으로써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2013년 하반기에는 부실금융기관인 스마일·한울저축은행을 가교저축은행을 활용한 기존의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이 아니라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통해 정리함

으로써 예금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가교저축은행을 관리·매각 하여야 하는 공사의 부담을 줄이고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기에 종결하는 정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4. 파산배당금 지급 노력

부보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의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며 잔류 자산을 환가하여 배당재원을 마련한 후 파산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을 실시한다.

공사는 파산절차 장기화에 따른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에 의거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의 청구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공사가 매입하고, 향후 예상되는 파산배당률을 고려하여 초과 금액의 일부를 예금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2월에는 공사가 매입한 예금 채권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미리 지급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한 7개 저축은행의 1만 8천여명의 예금자들에게 개산지급금 정산금으로 약 223억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개산지급금 및 정산금 지급을 통해 조기에 파산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개산지급금 및 정산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예금자의 편의를 한층 제고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파산채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배당금 수령 통지가 불가능한 소재 불명 파산채권자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파산채권자 등을 대상으로 2005년 8월부터 「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신문을 통한 광고 홍보활동 및 안전행정부의 협조를 통해 미수령 배당금 보유 파산채권자에 대한 주소 보정작업을 한 후 새로 파악된 주소지로 배당금 수령 통지를 하고 있으며, 파산채권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미수령 배당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미수령 배당금 안내서비스’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여금보험공사



제4장

예금보험제도 선진화

제1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제2절 예금보험제도 관련 조사연구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제1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1. 예금보험제도 관련 법령의 정비

2011년 1월 24일 공포된 「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37호)이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3년도부터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이 매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2013년도 사업연도 기간이 9개월로 축소되었다. 보험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예금보험료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입보험료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하는바 보험회사의 2013년도의 사업연도 기간이 9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가 과소 계산될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공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를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는 일할계산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 변경에 따른 예금보험료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였다.

2.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 준비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부보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회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공사는 2009년 2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였으며, 2014년부터 전 부보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공사는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융당국, 부보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협회, 연구기관 및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3년 3월 및 5월에 각각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각 부보금융기관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차등평가 자료 입수 및 확인과 차등보험료율 산출 및 이의신청 처리 등을 전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차등보험료율산정시스템(RBPS)」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꾸준히 개선해왔다.

차등평가는 평가의 기대효과, 보험료 납부규모, 평가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크게 (1)차등모형평가, (2)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3)등급외 적용 평가로 구분된다. 이 중 차등모형평가에 사용되는 차등모형은 기본평가부문(80점)과 보완평가부문(20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평가부문은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을 나타내는 ‘위기대응능력’,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건전성 관리능력’, 수익성을 나타내는 ‘손실회복능력’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보완평가부문은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재무위험관리능력’ 항목과 금융당국의 제재현황 등 ‘비재무위험관리능력’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Ⅳ-1〉 차등평가의 구분

구 분	대 상	평 가 방 법	적 용 요 율
차등모형평가	특정보험료율 및 등급의 적용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부보금융회사	모형에 의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1~3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요율 적용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소액보험료 납부회사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규정에서 미리 정한 요율 적용
등급 외 적용 평가	부실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명령 중인 회사 등		규정에서 미리 정한 할증 요율 적용

공사는 2014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2013년 중 차등보험료율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금융업권별로 실시하는 한편, 실제 제도 운영과 동일한 방식으로 각 부보금융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범운영도 성공적으로 진행

하였다. 또한,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보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프트랜딩 기간을 설정하고 등급별 차등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Ⅳ-2〉 등급별 적용 요율(금융업권별 표준보험료율 대비)

등 급	소프트랜딩 기간		본격 가동 기간		
	2014~2015	2016	2017~2018	2019~2020	2021~
1등급(할인)	△5%	△5%	△5%	△7%	△10%
2등급(표준)	0%	0%	0%	0%	0%
3등급(할증)	+1%	+2.5%	+5%	+7%	+10%

또한 공사는 차등보험료율 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차등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향후 공사는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령 및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차등보험료율을 산정하여 각 부보금융회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등에서도 동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G7 중 5개국 등 선진국의 상당수가 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등보험료율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은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예금보험제도 관련 조사연구

1.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전망 체계 조사연구

공사는 선진 예금보험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외부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표Ⅳ-3〉 2013년 주요 조사연구 보고서 현황

주 제	제 목
주요국의 금융회사 정리체계 개혁	• G-SIFI에 대한 국가간 정리전략(FDIC, BOE) • FSB의 'G-SIFI 회생 및 정리계획 공개안' 주요내용 • 영국, 회생 및 정리계획의 주요내용 • 주요국의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서 내용 • 금융회사의 체계적 정리를 위한 일본 예금보험법 개정안 주요 내용 • FSB의 '회원국 정리체계 평가보고서(Peer review report)' 주요 내용 • EU의 단일정리체계 (SRM) 설립(안) 주요 내용 • FSB의 '효과적인 정리전략 개발을 위한 지침' 주요내용
해외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경제현안	• 영국 예금보험금 지급절차 개선내용 • IADI 예금보호한도 가이드선 주요내용 • 미국 지역은행(Community Bank)의 특성 • OECD 국가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 영국의 대출자금지원제도(FLS) 주요내용 • 미 재정절벽 협상 진행경과 및 향후 전망 • 최근 연화 약세의 진단과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방지하고 구제금융의 지원 없이 대형복합금융회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체계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사는 글로벌 정리체계 개혁에 관한 선제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였다.



〈2013년 정책심포지엄 개최 장면〉

또한 정리체계 개혁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 및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리제도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회사의 정리체계 관련 국제적 논의와 대응’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2013년 12월에 개최하였다.

2. 연구 결과물 공유 노력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주제로 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금융안정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와 “외부연구지원 공모논문집”에

수록·발간하여 정책당국, 유관기관, 학계, 언론 등에 배포하였다. 공사는 이와 같은 발간 사업 및 제공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Ⅳ-4〉 2013년 주요 발간물

제 목	주요 게재 논문
금융안정연구 (제14권 1, 2호) 	• 금융안정과 금융감독: 이론적 해석 • 경기대응원충자본 제도의 국내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금융시장 여건변화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FCI를 중심으로) • A Model on Credit Analysis: Combining A First Passage Model and Survival Analysis for Corporate Default • 중국 환율정책의 변화가 중국의 주가지수에 미치는 정보전이 과정 연구 • 이자율의 비대칭반응 여부로 살펴본 통화정책의 중개기능 연구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예금보험료율의 공정가치에 관한 연구 • 은행의 자기자본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 수출입기업의 비대칭 헤지거래와 금융시장안정에 대한 연구 • 서로 다른 성장기회 하에서 재무정책과 소유구조는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 	•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에 대한 선호분석(명시선호를 중심으로) • 글로벌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가 유로존 국가 및 이머징마켓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국가신용등급 변경이 국제 및 CDS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부실저축은행의 PF대출채권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1. IADI 등 국제기구 내 주도적인 활동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제고

가.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내외 활동 강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금융안전망의 중심축으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이 크게 강조됨에 따라, 각국 예금보험기구의 국제협의체인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IADI가 제정한 “예금보험핵심준칙 및 평가기준(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and Methodology)”은 2011년 2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에 의해 주요 글로벌 금융규범(12 Key Standards for Sound Financial Systems)의 하나로 채택됨에 따라 IADI는 국제기준 제정기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공사는 2012년 10월에 IADI 전체 회원국의 투표를 통하여 ‘올해의 예금보험기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공사는 이와 같이 높아진 위상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내적인 기반을 다지는 한편, 대외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공사는 집행위원회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와 예금보험기구간 국제적 협력증진을 위해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 사장이 2013년 11월 7일 제12차 IADI 연차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재선출되었으며, 이로써 IADI 창립 이후 지금까지 집행위원직 연임에 계속 성공함에 따라 예금보험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공사의 위상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2013년 2월 IADI는 FSB의 요청에 따라 '예금보험핵심준칙'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공사는 주요국 예금보험기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개정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 소속되어 활동하였으며, 2014년 중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1998년 통합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두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권역의 부실금융기관을 다수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예금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인정받아, 공사는 IADI 산하 「통합예금보험제도 연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Integrated Protection Scheme)」의 의장기구로 활동 중에 있다. 연구소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2013년에는 전세계 예금보험기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연구보고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2013년에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 실시한 금융부문 평가(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에서 공사가 운영하는 예금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나. 2013년 IADI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연차총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IADI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아태지역위원회)는 역내 회원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정회원 17개 기구와 준회원 6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는 동 지역 위원회의 부의장국으로서 2013년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예금보험제도의 필수요소 및 당면과제(Key Elements of Deposit Insurance and Challenges in Practice)'를 주제로 『제11차 아태지역위원회 연차총회 및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동 연차총회에는 IADI 의장이자 폴란드 은행보증기금 사장인 Jerzy Pruski, 초대 IADI 의장이자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공사 사장인 Jean Pierre Sabourin 외에 대만, 러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 아태지역 내 IADI 회원기구 및 미국, 캐나다, 수단 등 역외 회원기구를 포함하여 총 25개국 예금보험기구 대표 및 고위 간부와 우리나라 신제운 금융위원장 등 국내외 귀빈 총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금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공사는 몽골, 라오스, 네팔, 미얀마 등 예금보험기구 설립 또는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국가의 관계자들을 처음으로 아태지역위원회에 초청하고 이들 국가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세션을 개설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역량강화와 IADI 차원의 멤버십 확대를 지원하였다. 공사는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과 연계하여 이들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글로벌 리더십 제고 정책에도 기여하였다.

*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선하려는 신흥국을 대상으로 공사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현재 몽골 예금보험제도 도입 및 탄자니아 독립 예금보험기구 설립 정책자문 등을 진행 중



〈IADI 아태지역위원회 연차총회 개최 장면〉

2.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 확대

가. MOU 체결과 인력 교류를 통한 정보 및 인적 교류 확대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과 예금보험제도 현안에 대한 정보 및 인력 교류를 목적으로 해외 예금보험기구 및 중앙은행 등과 MOU를 체결하여 왔다.

공사는 2013년에도 일본 및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기구와 신규로 MOU를 체결하고, 미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기구와는 기존의 MOU를 갱신하였다.

2013년 5월 6일에 공사는 일본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하였다. 일본 예금보험공사와의 MOU는 2001년 양 기관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교환한 이후 그간의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체결한 것이며, 일본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에서는 공사와의 MOU가 해외 예금보험기구와 최초로 체결하는 사례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공사는 MOU 체결식에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예보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일본 예금보험공사에 제안하였다. 또한, 2013년 12월 6일에 공사는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공사와 상호협력 관계 증진 및 공통 관심사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다.

한편, 인적교류를 위하여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하였던 기존의 직원교류를 위한 MOU는 2013년 5월 13일에 다시 갱신하였으며, 그 동안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유효기간을 이례적으로 5년으로 하였다. 또한, 공사는 2006년 베트남 예금보험기구와 최초로 체결한 MOU를 2013년 5월 28일에 갱신하였으며, 2010년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와 처음 체결한 MOU는 2013년 11월 29일에 갱신하였다. 공사는 이와 같은 MOU 체결을 통해 예금보험제도 현안 문제 발생 시 MOU를 체결한 국제 예금보험기구와 적시에 상호협력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아울러, 2012년 11월 MOU를 체결한 우크라이나 예금보증기금의 요청으로 2013년 8월에는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전수를 위한 워크숍을 현지에서 개최하고 공사 직원을 우크라이나 예금보증기금에 단기로 파견하였고, 일본 예금보험공사에도 MOU에 따라 공사 직원을 파견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내용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공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함께 공유하였다.



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 추진 강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되면서 개발도상국 등 해외 국가들로부터 공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 등을 배우려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공사는 지난 2010년 12월, 공사 내부에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예금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거나 예금보험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에 대해 역량강화 연수와 정책자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

2013년 중 공사는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수요에 맞추어 예금보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경험을 전달하는 국제 워크숍과 연수를 실시하였다. 1월에는 공사를 찾은 네팔 예금보험기구 및 재무부 고위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예금보험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경험을 전수하였다. 5월에는 베트남 예금보험기구의 요청으로 공사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베트남 예금보험기구 및 중앙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리스크감시 및 정리업무에 대한 현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6월에는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 재무부, 금융감독청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권역 예금보험제도 운영현황, 차등보험료율제 준비현황 등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8월에는 우크라이나 예금보증기금의 요청으로 공사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공사의 예금보험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경험을 전수하였다. 이밖에도 10월에는 태국 예금보험원의 요청으로 태국 예금보험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교금융기관 설립을 통한 정리사례 등을 주제로 국내에서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선진 예금보험기구와 공동으로 개최한 탄자니아 역량강화 워크숍〉

〈표Ⅳ-5〉 2013년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 실적

국 가	대상기관	일 자	주요 내용
네 팔	예금보험기구 및 재무부	1월	• 네팔 예금보험기구 및 재무부 고위급 방문 연수 실시
베 트 남	중앙은행, 예금보험기구	5월	• 베트남 예금보험기구 및 중앙은행 임직원 대상 현지 워크숍 실시
몽 골	재무부, 중앙은행	2월	• 2012년 몽골 KSP 최종보고회 실시 • 재무부 차관 및 고위정책결정자 면담
	예금보험공사	12월	• 2013년 APRC Outreach Workshop 참여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기구, 재무부, 금융감독청	6월	• 보험권역 예금보험제도 운영현황, 차등보험료율제 준비현황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재무부·금융감독청 실무진을 대 상으로 워크숍 실시
탄자니아	정 부, 중앙은행	1월	• 2012년 탄자니아 KSP 최종보고회 실시 • 재무부 장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면담
	중앙은행	10월	• 2013년 탄자니아 KSP 역량강화 연수 실시
우크라이나	예금보증기금	8월	•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워크숍 개최 및 단기 직원 교류 실시
태 국	예금보험원	10월	• 가교금융기관 설립을 통한 정리사례 등에 대한 운영경험 해외 공유 워크숍 개최

또한, 공사는 몽골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개발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공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과 연계하여 2010년과 2012년에 추진하였다. 이후에도 공사는 몽골에 대해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수차례 제공하였다.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몽골은 2013년 1월에 「예금보험법」을 제정하였고, 8월에는 몽골 예금보험공사를 출범시켰다. 공사 사장은 몽골 예금보험공사 설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외 예금보험기구로는 유일하게 몽골 예금보험공사 창립기념식에 초청을 받아 동 행사에 참석하였다.

아울러 탄자니아에 대해서도 2011년, 2012년에 걸쳐 기획재정부의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예금보험기구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KSP 사업을 수주 받아 정책자문을 실시한 데 이어, 2013년에는 탄자니아 재무부, 중앙은행 및 예금보험위원회 실무자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전반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공사는 탄자니아 역량강화 워크숍을 주관하면서, 일본 예금보험공사와 대만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처음으로 강사로 초청하여 선진 예금보험기구로서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였다.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를 이끄는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실속형, 맞춤형 리스크관리 방안 모색)

일시 : 2013년 8월 23일(금) 14:30

주최 : 연세대학교



제5장

리스크 관리

제1절 조사 및 공동검사

제2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관리

제1절 조사 및 공동검사

1. 리스크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

가. 리스크 감시 모형 개선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평가하기 위하여, 리스크 감시 모형을 통해 부보금융기관의 현재 재무 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재무상태 등을 예측하고 있다. 동 모형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기준에 따라 개별 부보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 수준을 차등화하여 상시 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금융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금융권역별 리스크 감시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여 왔다. 최근 저성장·저금리 등에 따른 리스크요인 및 각종 금융제도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리스크 감시모형의 기존 지표를 점검·수정하여 모형의 정합성을 높였다. 또한, 2012년 중 위기상황에서의 리스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각 부보금융기관의 재무지표 변동을 예측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모형의 정밀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2013년 중 조선·건설·해운 등 경기 민감업종 기업체의 부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업여신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여 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금융투자회사의 경영환경 변화 및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재무상태 변화 등을 반영하여 리스크감시 모형 변수의 유의성 재검증, 신규지표 개발 및 평가지표 가중치 변경 등 금융투자업권에 대한 리스크 감시 모형을 개선하였다.

나. 리스크 감시 역량 강화

공사는 리스크 감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감시 모형 등을 활용한 분석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금융업권별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이슈 등을 주제로 사외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리스크상시감시교실을 2013년에 4회 개최하는 등 2006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2013년 12월말까지 총 25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고 금융시장 주요현안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연수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이론과 실무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리스크상시감시교실 실시 후에는 수강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연수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다음 교실 개최 시 반영하였다.

〈표 V-1〉 2013년 리스크상시감시교실 개최내역

구 분	주 제
2013. 6.	• 은행의 경영환경 변화와 리스크관리
2013. 9.	•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와 리스크관리
2013.10.	• 금융투자업 주요 현안 및 리스크관리에 미치는 영향
2013.12.	• 바젤Ⅲ 시행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아울러 공동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유관 기관 간 공동검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부보금융기관 경영정보시스템(FIAS) 및 리스크 감시 모형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2013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공사 내부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비재무정보 집중 수집일」로 지정하여 비재무정보에 대한 수집을 강화하고, 수집된 비재무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활용할 수 있도록 FIAS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리스크상시감시교실 개최 장면〉

조사역량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해외 선진기관과의 리스크 상시감시 및 현장조사 노하우 교류를 위한 일환으로 FDIC의 20년 이상 현장조사 경력자(Lanu T. Duffy)를 초빙하여 연수 및 업무교류를 실시하였다. 동 연수를 통해 FDIC의 리스크상시감시 기법 및 IT시스템, 현장조사 기법,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등을 학습하였으며, 연수종료 후 FDIC 업무 중 벤치마크가 가능한 사항을 정리하여 공사의 리스크 상시감시 및 현장조사 업무에 적용하였다.

아울러, 정확한 조사역량 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조사 전문성 제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조사역량평가 지표(전문성, 보고서 품질, 조사만족도)를 개발하였다. 2개 지표(전문성, 보고서 품질)는 전/현직 감사업무 전문가, 회계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개 지표(조사만족도)는 조사를 실시한 저축은행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과정 및 결과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평가평점은 90.22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12월 개최한 「저축은행 조사업무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한 학계, 업계 및 금융감독 분야 외부전문가들 또한 공사의 조사역량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현장조사 착수 전에 문제 여신을 필터링할 수 있는 ‘문제여신검색시스템(PLSS)’을 정비하였으며, ‘조사·공동검사관리시스템(EIMS)’을 통해 조사·공동검사의 기획, 실시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다. 조사업무 개선방안 수립

공사는 조사 프로세스를 금융감독원 검사와 차별화하고 저축은행의 수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저축은행 조사업무 개선방안」 및 「조사업무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방안은 향후 중점 조사방향을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초래하는데 있어 영향이 큰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 제도운영 분야에 대한 점검 강화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별 리스크요인 및 특성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 실시를 착수 5일전 통보에서 10일전 통보로 앞당김으로써 수검 준비기간을 확대하였고, 공사도 현장조사 이전에 사전분석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조사 기간 및 제한된 조사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라.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 업무 법적 근거 확보 노력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관리주체로서 기금손실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금자보호법」상 공사 설립목적과 개별조항에서는 보험사고 위험관리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동법 제18조에는 이와 관련한 업무가 누락되어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리스크 상시 감시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사 업무의 범위에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였다.

2012년 10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13년 12월말 현재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보금융 기관에 대한 공사의 보험사고 위험 관리 기능이 활성화되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조사 및 공동검사 실시

가. 저축은행 단독조사 실시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별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특히, 조사대상 선정 시 금융감독원 검사와 공사의 단독조사가 중복될 경우 저축은행 임직원의 조사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중복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수시로 긴밀히 협의 하였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상 부실우려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중 공동검사 실시 대상, 매각 등 정리절차 추진 대상 및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을 제외하고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금융감독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사계획을 최적화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11개 저축은행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서면자료를 징구하여 사전분석을 실시한 이후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거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 감독당국에 조치를 요청함으로써 저축은행의

부실위험에 적극 대처하였다. 또한, 저축은행별 리스크요인 및 특성을 감안한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경영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나. 공동검사 제도개선 등을 통한 실효성 제고

공사는 금융감독원과 차별화된 공동검사를 위해 2013년 9월에 「상시감시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공동검사시 리스크 종류별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FDIC의 선진 리스크 관리 기법을 벤치마킹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공동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 9월에 불거진 동양증권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동검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 공사의 공동검사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였다. 그 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사로부터 공동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공사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재요청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조치 및 이행여부를 확인할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이 공사의 시정조치요구사항을 종결처리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2013년 중 지속적인 공동검사 추진에 따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은행, 보험, 증권사 및 저축은행 등 18개 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등 공동검사 유관기관과 공동검사 관련 상호이해 증진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 주관으로 공동검사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표 V-2〉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실적

(단위 : 건)

연도	2002 이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실적	1	0	6	8	11	12	9	15	24	31	9	18	144



〈2013년 유관기관 공동검사 워크숍〉

3. 상시 감시 기능 활성화

공사는 2006년부터 리스크 감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상시 감시 업무수행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부보금융기관 보험사고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사 내부에 “상시감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 마련된 “상시감시협의회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부서별 의무상정 안전 수를 확대하여 폭넓은 범위의 안전을 논의하였고, 우수 안전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2013년에는 금융권역별 주요 리스크,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총 11건의 안전을 논의하여 유관 부서 간 협력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업무 추진력을 제고하였으며, 3건의 우수 안전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였다.

상시감시 업무 강화를 위해 2013년 9월에 구성된 「상시감시제도개선 TF」를 통해 리스크 요인 및 리스크 총량 분석위주의 경영위험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금융업권별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시감시수준 차등화, 공동검사 대상기관 선정 등에 활용하였고 금융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 등에도 배포하였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및 기업 부실 현실화 등으로 특정 위험요인이 개별 금융권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점검을 위해 금융업권별로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한편, 공사는 2004년 1월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금융시장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대응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9월 공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각 기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융정보 공유 범위 등을 기존 MOU보다 확대한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새로이 체결하였으며, 2012년 2월에는 공유대상 정보의 명확화 및 공유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동 양해각서를 일부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정보 19건을 한국은행에 처음으로 제공하였으며, 2013년에는 22건을 제공하였고 금융감독원에도 29건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2013년 공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48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284건의 업무보고서 내용을 제공받아 이를 상시감시 업무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정기보고서 공유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및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간 금융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보고서에

대해 공유 요청 절차 없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공유대상 금융 정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12년 설치된 상설협의체인 '거시경제금융회의'에 공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거시건전성 점검 및 금융정보 공유·공동검사 업무 협의 등을 통하여 금융정책기관 상호간 협력강화를 도모하고, 향후 금융, 외환 분야 리스크 요인 등 거시건전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을 본격 점검하기로 하고 있다.

4. 시장친화적 리스크 감시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리스크 요인 분석과 이를 통한 시장친화적인 감시 등을 위해 “금융리스크리뷰誌”(계간지)를 2013년에도 발간하였다. “금융리스크리뷰誌”에는 공사가 생산한 리스크 분석 정보 및 학계와 금융시장 전문가가 기고한 리스크 관리 기법 등을 수록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등 정책 당국과, 국회, 학계 및 부보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였다. 특히 사외 배포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2013년 4월에는 「금융리스크리뷰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고 수준 및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표 V-3〉 2013년 금융리스크리뷰誌 주요 내용

비 고	주 요 내 용
2013년 봄 호	-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업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 - 생보사 보험료적립금 운영구조 현황 및 이차손익 영향 분석
2013년 여름호	- 자본시장법 개정이 금융투자업과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해운업 리스크 진단 및 은행에 미치는 영향
2013년 가을호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트렌드와 시사점 - 해외 주요국(미·영·일)의 부실보험회사 정리제도 현황
2013년 겨울호	- 미국의 양적완화 축수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 - OECD 국가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아울러 공사는 부보금융기관 리스크 상시 감시를 통하여 생산된 부보금융기관 리스크 평가 및 분석 정보를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제공하였으며, 조사 및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통해 확인한 부보금융기관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부보금융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적인 리스크 감축을 유도하였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및 리스크 담당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저축은행업권 및 타 업권의 리스크관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저축은행업권 실정에 맞는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경영여건상 임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중소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축은행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부보금융기관 임직원, 정책당국자 등이 참여하는 '청계금융포럼'을 2013년에 13회를 개최하여 각 금융권역별 리스크 요인 및 주요 이슈에 대한 강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 금융시장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부보금융기관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는 '상시감시포럼'은 2013년에 13회를 개최하여 리스크관리기법 등에 대한 금융업 실무지식을 공유하였다.

공사는 앞으로도 조사 및 공동검사 업무와 더불어 교육지원서비스 및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장친화적인 리스크 감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5. 저축은행 뱅크런 대응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예금자 불안 심리가 고조됨에 따라 2012년 1월 「저축은행 뱅크런 대응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뱅크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 부실 징후 저축은행의 예금인출동향 및 저축은행 관련 언론보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뱅크런 발생 가능성이 인지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응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는 등 뱅크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뱅크런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예금자 응대 인력을 파견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도해지로 인한 예금자의 이자손실 및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화를 방지하였다.

특히, 저축은행업계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 전환 및 영업정지 없는 구조조정 방식 도입 등에 맞춰 2013년에는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한 별도 응대 요령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뱅크런 발생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제2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관리

1. MOU 체결 및 점검

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제고 및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1999년 이후 총 14개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 해당 금융기관에 재무비율 목표 및 비재무부문 목표 부여하고 이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왔다. 2002년 4월 이후 제주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을 매각 또는 합병시킴에 따라 공사는 이들 금융기관과의 MOU를 해지하였으며, 2013년 말 현재 우리금융지주회사,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 및 서울보증보험 등 6개 금융기관과 체결한 MOU를 관리하고 있다.

공사는 MOU 체결 금융기관의 2012년도 4/4분기부터 2013년도 3/4분기까지 MOU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금융지주회사, 광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이 2012년도 연간 MOU 재무비율 목표에 일부 미달하였으며,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고액 보험사고와 관련한 이행부진사항이 발생하였다. 또한 감사원은 우리금융지주회사 및 11개 자회사의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우리금융지주회사, 우리은행, 광주은행에 대한 조치를 공사에 요구하였다.

공사는 우리금융지주회사, 광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의 2012년도 연간 MOU 재무비율 목표 일부 미달과 관련하여 해당 MOU 체결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재무비율의 달성 수준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공사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비율 목표미달에 따른 조치를 면제하였다.

다만,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간 시너지 증대를 통한 수익원 창출 및 비용절감 등 그룹 차원의 판매관리비용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광주은행·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인력운용 효율화 및 비용 절감 등 생산성·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수협 신용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부동산 PF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의 고액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공사는 2013년도 1/4분기 MOU 점검결과 통보시 해당기관(관련자)에 대하여 공사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으며, 보험계약 심사체계와 보험요율 산출방식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우리금융지주회사 및 11개 자회사의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의 우리금융지주회사, 우리은행, 광주은행에 대한 처분요구(2013.5.2)와 관련하여, 공사는 2013년도 1/4분기 MOU 점검결과 통보시 해당 MOU 체결 금융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공사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에 따른 조치(기관 및 개인)를 취하였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향후에도 공사는 MOU 목표의 달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표V-4〉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추가·수정 내역

(2013년 12월말 현재)

금융기관	MOU 체결 (재체결)	MOU 관리목표		MOU 해지
		추가	수정	
우리금융지주	2001. 7. 2	2003. 1.22		
우리은행 (舊한빛은행)	1999. 1.22 ¹⁾ (2000.12.30)	2005. 3.23 2007. 3.28	2004. 9.22	
광주은행	2000.12.30	2009. 3.30 2011. 3.30	2007.12.26 2010. 3.23	-
경남은행	2000.12.30	2012. 3.29 2013. 4.24		
수협 신용사업부문	2001. 4.25	2005. 3.23 2007. 3.28 2009. 3.30 2011. 3.30 2012. 3.29 2013. 4.24	2003. 2.12 2003. 7. 9 2005.12.21 2007.12.26 2010. 3.23	-
서울보증보험	2000. 4.12 ¹⁾ (2001. 6. 9)	2005. 6.22 2007. 7.18 2009. 6.10 2011. 6. 1 2012. 6.12 2013. 6.26	2002. 7.10 2006. 6.21 2007.12.26	-
제주은행	2000.12.30	-	-	2002. 4.29 (신한지주 앞 매각)
서울은행	2000.12.30	-	2001. 6.29	2002.12. 1 (하나은행 앞 매각)
조흥은행	1999.11.12 ¹⁾ (2002. 1.31)	-	-	2003. 8.19 (신한지주 앞 매각)
대투증권	2000. 9.25 ¹⁾ (2002. 2.20)	-	-	2005. 5.31 (하나은행 앞 매각)
한투증권	2000. 9.25 ¹⁾ (2002. 2.20)	-	-	2005. 3.31 (舊동원지주 앞 매각)
대한생명	2000. 4.12 ¹⁾ (2001. 9. 5)	-	-	2002.12.12 (한화컨소시움 앞 매각)
우리카드 (舊평화은행)	2000. 6. 7 ¹⁾ (2000.12.30)	2003. 6. 4	2002. 3.25	2004. 3.31 (우리은행 합병)
우리종금	2000.12. 9	-	2001. 6.29	2003. 8. 1 (우리은행 합병)

주 : 1) 해당 기관, 공사,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원회) 3자간 약정 체결

2. MOU 관리의 효율성 제고

가. 합리적인 MOU 목표 부여

공사는 2010년도 및 2011년도 MOU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목표부여방식을 개선(2011년도 부터 적용)하여 MOU 체결 금융기관에 대한 2013년도 MOU 재무비율 및 비재무부문 목표를 부여하였다. 특히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산업의 전반적인 순이자마진 하락효과를 조정요인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MOU 재무비율 목표 부여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나. MOU 체결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및 경영협의 시스템 운영

공사는 MOU 이행실적 점검시 MOU 목표 달성에 대한 점검 외에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MOU 점검결과 통보시 이에 대한 주의환기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필요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MOU 체결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사후적인 MOU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2013년 11월에는 MOU 업무 관련 실무자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사와 MOU 체결 금융기관간 정보공유 및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MOU 관리업무의 질적 제고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였다.

다. MOU 체결 금융기관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활동 지원

공사는 MOU 체결 금융기관 사외이사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적 수준 제고와 범위 확대를 통해 MOU 체결 금융기관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사는 2013년 중 MOU 체결 금융기관의 MOU 점검결과 및 주요 리스크요인 등 총 16건의 MOU 점검정보를 해당 금융기관 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등 MOU 체결 금융기관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2. 소재지 개요

교통 환경

- > 본 건지의 개발 용도가 가능하며, 인근 노면과 노면 버스정류장의 소재하여 교통여건은
- > 본 건 건물은 남서쪽에서 북쪽 약 20m에 달하는 도로와 접해있어 차량으로 접근 가능



1. 본 건지의 위치는 남서쪽에서 북쪽 약 20m에 달하는 도로와 접해있어 차량으로 접근 가능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기적 일류 예금보험공사



제6장

부실금융기관 정리

제1절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제2절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가교저축은행 등 관리·매각

제3절 부실금융기관 특별자산의 관리

제1절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1.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현황

2011년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2012년도 및 2013년도에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2013년 상반기 3개사, 하반기 2개사가 영업 정지되었고 이에 공사는 관리인 및 관리 보조인을 파견하여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3년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모두 계약이전 방식으로 이전되어 현재는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자산에 대해서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영업 정지된 8개 저축은행은 2013년 중 모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재단이 설립되었다. 한편, 2013년에 영업정지 된 5개 저축은행 중 서울·영남·신라저축은행은 2013년 중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재단이 설립되었으며, 나머지 스마일·한울저축은행도 2014년 중 파산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금융기관인 그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없는 정리절차를 진행하여 2013년 5월 금융위의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 후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자산 등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2013년 11월 파산재단을 설립하였다.

〈표Ⅵ-1〉 2012년 이후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현황

저축은행명	영업정지일	현재상태 (인수자)	계약이전일	파산선고일
솔로몬	2012. 5. 6	제3자 계약이전 (우리금융저축은행)	2012. 9. 5	2013. 4.30
한 국	2012. 5. 6	제3자 계약이전 (하나저축은행)	2012. 9. 5	2013. 4.30
미 래	2012. 5. 6	제3자계약이전 (친애저축은행)	2012.10. 5	2013. 4.30
한 주	2012. 5. 6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나래저축은행)	2012. 9. 5	2013. 2.28
토마토2	2012.10.19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솔저축은행)	2012.10.19	2013. 4.30
진 흥	2012.11.16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한별저축은행)	2012.11.16	2013. 5.20
경 기	2012.12.28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한솔저축은행)	2012.12.28	2013. 7. 1
더블유	2012.12.28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성저축은행)	2012.12.28	2013. 7. 1
서 울	2013. 2.15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주저축은행)	2013. 2.15	2013. 9.26
영 남	2013. 2.15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솔저축은행)	2013. 2.15	2013. 9.26
신 라	2013. 4.12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예신저축은행)	2013. 4.12	2013.10.29
스 마 일*	2013.11. 1	제3자 계약이전 (오에스비 저축은행)	2013.11. 1	-
한 울	2013.12.27	제3자 계약이전 (페퍼저축은행)	2013.12.27	-

* 정상 영업 중 제3자로의 계약이전 최초 사례

2.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체계적 경영관리

공사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체계적 경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관리 TF라는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2011년 10월에 설치·운영하여 경영관리 인력 및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경영관리 TF에서는 경영관리 파견 인력이 해당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 업무 참고서 및 ‘저축은행 경영관리 초기 주요 업무 처리요령’ 소책자를 2012년 5월에 제작하여 배포

하였으며 각 저축은행에 업무지도문 등을 통하여 경영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저축은행별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업무 협의 및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경영관리 파견 인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12년에 영업 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는 자산규모 및 지점 개수에 근거한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총 168명의 인력이 파견되었다. 동 파견 인력에는 기간제 검사역 98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일반 은행권 및 공사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후 퇴직한 금융전문가로 여·수신 등 은행 업무에 숙련되어 있어 경영관리 업무가 신속히 안정화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표Ⅵ-2〉 2013년 영업정지 저축은행별 경영관리 인력 파견 현황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영업정지 저축은행	공사 내부 인력	기간제 검사역	합 계
서 울	5	14	19
영 남	3	7	10
신 라	4	14	18
스마일	9	6	15
한 울	7	-	7
합 계(5개사)	28	41	69



제2절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가교저축은행 등 관리·매각

1. 부실저축은행의 신속한 정리

가. 2013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는 금요일 영업 종료 후 영업을 정지하고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여 월요일 오전에 영업을 개시하는 제도이다. 2005년 이후 공사는 가교저축은행을 통하여 신속히 영업을 재개하여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나,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후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영업을 정지 되어 예금자들의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후 계약 이전까지 정리절차가 약 2~3개월 내에 마무리되어 정리 소요기간이 기존 보다 1개월 이상 단축 되었다.

2012년 하반기에 영업정지 된 토마토2·진흥·경기·더블유저축은행을 동 방식에 따라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정지 및 주말동안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통해 정리하였고, 2013년 상반기에도 부실금융기관인 서울·영남·신라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기간 중 재산실사, 최소비용 검증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사실상 금융거래 중단 없이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통해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다른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미국 FDIC와 마찬가지로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예금자 불편 및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였고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표Ⅵ-3〉 2013년 상반기 부실저축은행 정리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

부실저축은행	계약이전일 (=영업정지일)	인수금융기관	정리방식
서 울	2013. 2.15	예주저축은행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영 남	2013. 2.15	예솔저축은행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신 라	2013. 4.12	예신저축은행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나. 2013년 하반기

2012년 하반기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도입을 한 공사는 뱅크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 도입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7개 저축은행(2012년 하반기 : 토마토2 · 진흥 · 경기 · 더블유, 2013년 상반기 : 서울 · 영남 · 신라)을 모두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통해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하여 정리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공사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가교저축은행의 숫자 및 자산 규모도 증가하여 가교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및 매각에 대한 부담도 함께 가중됨에 따라 2013년 하반기부터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13년 5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스마일저축은행의 정리 시부터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추진하였다. 스마일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주어진 자체정상화 기간 이후부터 공사가 정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1년 이후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및 상시 구조조정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의 사전 시장조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매수자 물색을 통해 오에스비저축은행을 최종 인수자로 선정하여 2013년 11월 계약이전을 완료하였다.

이후 2013년 10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한울 · 해솔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스마일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추진하여 2013년 12월 한울저축은행은 폐퍼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완료하였고, 해솔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를 최종 인수자로 선정하여 계약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2013년 하반기에 스마일 · 한울저축은행을 가교저축은행을 활용한 기존의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이 아니라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예금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가교저축은행의 관리 · 매각 부담을 없애고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조기 종결하는 정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표Ⅵ-4〉 2013년 하반기 부실저축은행 정리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

부실저축은행	계약이전일 (=영업정지일)	인수금융기관	정리방식
스마일*	2013.11. 1	오에스비저축은행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한 울	2013.12.27	폐퍼저축은행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 정상 영업 중 제3자로의 계약이전 최초 사례

2. 공사 관리 저축은행의 효율적 관리 및 매각

가. 가교저축은행

2013년 현재 가교저축은행은 예쓰·예나래·예솔·예한별·예한솔·예성·예주·예신 등 총 8개로서 이들은 조기 매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조직이므로 중장기 경영전략 및 Business 모델 수립 등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경영체제 확립이 곤란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직원이 여러 부실저축은행 출신으로 구성되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예쓰·예나래·예솔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한도 준수로 인해 적극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계약이전 시 순자산 부족분만큼 현금 출연 등에 따른 현금성 자산이 과다하여 역마진을 실현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는 이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가교저축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공사 전담조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다. 우선, 가교저축은행 설립 직후 경영환경, 재무상태 및 영업계획 등을 반영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매월 경영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월별 실적 등 주요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가교저축은행 경영진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2013년 4월 전체 경영진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적극적인 동기 부여 및 경영실적 제고를 위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였으며, 공사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주요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가교저축은행 자체적으로도 신규 건전여신 증대를 위해 여신 심사·영업 관련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적정 평가시스템도 운용하고 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일부 영업점을 통폐합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 효율화 및 영업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3년 하반기부터 예쓰·예나래저축은행은 흑자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 경영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저축은행업권의 장기간에 걸친 실적 부진과 저축은행 매물을 찾는 수요 부족 등으로 공사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의 시장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가교저축은행의 적극적인 경영 효율화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병행하여 사전 시장조사, 인수자 물색, 매각설명회 개최 및 적극적인 마케팅 등 매각 가능성을 제고한 결과 2013년 1월 예한별저축은행을 신한금융지주 회사에, 2013년 7월 예솔저축은행을 중소기업은행에, 2013년 9월 예한솔저축은행을 KB금융 지주회사에 매각 완료하였으며, 예쓰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유)삼호산업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표Ⅵ-5〉 2013년 가교저축은행 매각 현황

가교저축은행	설립일	지분매각일	인수자
예한별	2012.11. 6	2013. 1.31	신한금융지주회사
예 솔	2011.10.11	2013. 7.15	중소기업은행
예한솔	2012.12. 4	2013. 9. 2	KB금융지주회사

나. 계열저축은행

2013년 현재 부실화되어 영업정지된 母저축은행의 계열저축은행은 솔로몬 계열의 한울·해솔저축은행, 한국 계열의 영남저축은행 등 총 3개이며, 매각 등 정리 완료시까지 기업가치 하락을 최소화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전담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에 의한 경영진단 이후 경영환경과 재무상태 등 당해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하여 경영목표를 수립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실행과제 추진실적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기존 대주주의 영향을 배제하고 기업가치 유지와 원활한 매각준비를 위해 2013년 4월 금융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추가 선임하였으며, 부실화된 母저축은행에 의존하던 자체 전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전산(IFIS)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영남·한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2013년 상반기에 영남저축은행은 예솔저축은행으로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 한울저축은행은 폐퍼저축은행으로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통해 계약 이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 한울저축은행과 함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해솔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를 최종 인수자로 선정하여 계약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3.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제도 정착

가.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제도 도입(2012년 하반기)

기존에는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 후 정리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영업을 지속하면서 정리할 경우 예상되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더불어뱅크런 발생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영업정지로 인해 금융거래가 중단되어 예금자와 여신거래자 등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지역금융경제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신규영업 중단과 여신 사후관리 애로 등에 따른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공사의 기금손실도 확대되었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후 즉시 정리절차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과거 평균 10개월이었던 정리기간을 3~4개월로 대폭 단축하였으나, 최소 3달 이상의 영업정지는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FDIC와 같은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는 정리절차 노출로 인한 뱅크런과 기존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이 우려되었다. 이에 공사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먼저 뱅크런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예금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 점포에 현장 대응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예금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켰다. 또한,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여 예금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시적인 불안 심리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시장혼란 및 뱅크런 발생 우려를 감안하여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영업을 지속하면서 정리절차를 추진할 경우 기존 대주주와 경영진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 부과 시 기존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2012년 하반기 공사가 관리하고 있던 토마토2·진흥·경기저축은행의 경우 모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후 기존 임원을 외부전문가로 교체하였고, 이후 감독관 등의 관리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또한, 더블유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시 기존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불법행위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영업을 지속하면서 정리절차를 추진하더라도뱅크런이나 기존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 차단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감독당국을 대상으로 동 제도의 도입을 적극 설득하였다. 특히,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이 예금자들의 불편 없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금자들에게 보여줄 경우 향후 부실저축은행 정리가 금융시장의 큰 혼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공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2012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하반기에 토마토2·진흥·경기·더블유저축은행은 금융거래 중단 없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정지와 함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고, 익영업일인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영업을 재개하는 방식은 영업정지 기간을 2일로 대폭 감소시켜 공사의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 FDIC와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기존 평균 4개월이 소요되던 부실저축은행 영업재개 기간이 영업정지 후 즉시 금융거래가 가능한 방식의 도입으로 익영업일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장기간 금융거래 중단으로 인한 예금자 등 거래자들의 불편 및 피해가 대부분 해소되면서 금융시장 혼란 없이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게 되었다. 또한, 영업을 계속됨에 따라 영업 중단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서민금융이 위축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제도 정착(2013년)

2012년 하반기에 도입한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에 따라 2013년 상반기에도 부실금융기관인 서울, 영남,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기간 중 재산실사, 최소비용 검증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사실상 금융거래 중단 없이 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통해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다른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112개국 예금보험기구 중 최초로 FDIC와 같은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실현하고 정착 시킴으로써 예금자 불편 및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금보험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실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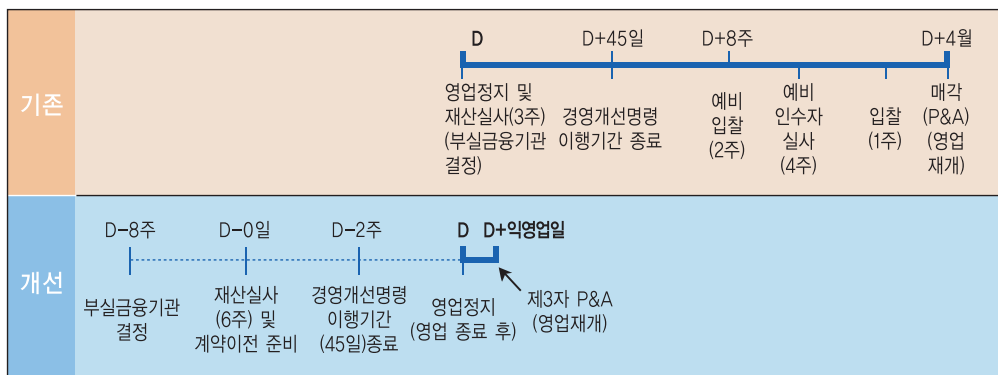
공사는 새로운 정리방식 도입 이후 2013년 1월까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7개 저축은행을 뱅크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중단 없이 모두 가교저축은행 이전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공사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의 숫자 및 자산규모가 늘어나 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및 매각 부담이 가중되어 그 이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추진하여 가교저축은행 관리 및 매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이에 2013년 5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스마일저축은행을 공사가 사전 인수자 물색 작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영업 중 제3자에게 계약이전을 시켜 정리함으로써 금융거래 중단을 없애고자 가교저축은행으로만 계약이전을 시켰던 그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 방식을 개선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저축은행업권의 실적 부진과 영업 불황 등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 수요보다 매물 공급이 많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정리하지 않고 제3자에게 바로 매각하는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으로 예금자 불편 및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성과도 거두었다. 미국과는 다른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미국 FDIC와 마찬가지로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 방식’을 2013년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그린손해보험 정리 시에도 동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 이외의 다른 금융업권에도 새로운 정리방식이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공사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해당 부실금융기관 예금자의 금융거래 불편 및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완전 해소될 수 있었고, 신속한 계약이전으로 대출 관련 업무도 정상화 되는가 하면 금융거래의 지속성이 유지되면서 자산 가치의 하락을 막고 지역 금융의 위축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관련하여 공사의 예금자보호 영역 내에 있는 예금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피해와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것을 예금자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공사는 동 정리방식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IADI 등과 적극 협력함으로써 베트남, 우크라이나 등 예금보험제도 도입 초기에 있는 국가들과 그 운영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전파하고 있다. 이른바, ‘KDIC(한국예금보험공사)형 예금보험제도’의 글로벌 전수로 금융한류를 실현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공사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차근차근 실현해가고 있다.

〈그림 VI-1〉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비교



제3절 부실금융기관 특별자산의 관리

1. 특별자산 현황

가. 개 요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2011년 이후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 다수의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 받음에 따라 이들의 자산이 대거 특별자산으로 편입되어 공사는 2013년말 현재 관련 대출채권 기준 총 6.5조원 규모의 특별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특별자산은 대출 취급과정에서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차명으로 SPC를 설립하고 이들 SPC에 대출을 실행하여 국내외에서 아파트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자산으로 물건 상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인의 법률분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미술품 및 고가의 외제차량 등 종류도 다양하여 이들 자산을 고유한 특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자산가치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특별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1년 하반기에 관리 전담부서(특수자산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2013년 3월에 2개부서(자산관리 1부, 자산관리 2부)로 확대하였다.

〈표Ⅵ-6〉 특별자산 유형별 관련 대출 현황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개)

사업 유형	대출채권		투자자산 ¹⁾ (투자액, B)	합 계 (A+B)
	건수(사업장)	금액(A)		
아파트 등	34	23,641	1,126	64,736
리조트 등	8	6,345		
골프장	16	9,355		
선박투자	9	4,078		
해외건설	12	6,859		
기타(납골당 등)	15	7,146		
일반대출	29	6,186		
합 계	123	63,610	1,126	64,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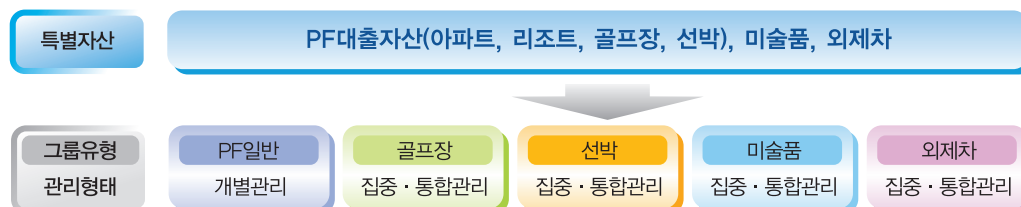
주 : 1) 투자자산 건수 : 10건

나. 특별자산 관리현황

특별자산 관리 전담부서는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는 시점부터 특별자산 관련 대출의 취급 과정, 권리관계분석 및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현재의 자산상태를 파악하는 한편, 자산 가치의 저하요인을 분석하고 가치유지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인·허가 및 사업권 만료 임박 사업장 등 자산가치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특별자산에 대한 회수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산별 특성에 부합되는 매각전략을 수립하여 회수업무를 추진하였다.

〈표Ⅵ-7〉 자산유형별 관리형태



2. 특별자산 회수극대화 추진

가. 회수관리 체계

공사는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자산에 대해 당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점부터 회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파산단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특별자산의 회수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산별 특성에 부합되는 매각 등 회수전략을 수립하고, 이어서 대상자산에 대한 매각공고 및 입찰실시 등 매각 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매각완료 자산에 대한 입금관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4단계의 단계별 회수체계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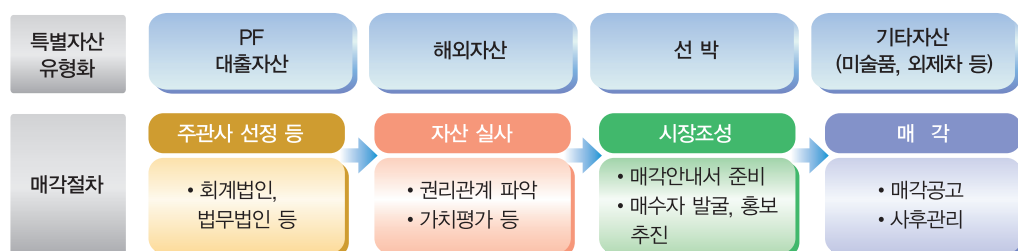
〈표Ⅵ-8〉 특별자산 4단계 회수관리 체계



또한, 조사결과 분류된 특별자산을 자산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유형화시킨 대상 자산에 따른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의 집중도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회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특별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계, 금융계,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매각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특별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중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2013년에 14회 수행하였다.

〈표Ⅵ-9〉 특별자산 유형 및 매각절차



대외적으로는 부실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비리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공사는 긴밀히 협력하여 압수자산을 신속히 인수하여 보전조치를 취하고, 관할법원에는 공사의 특별자산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자산의 원활한 관리 및 회수를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등 해외 투자 특별자산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외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법률 및 행정처리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는 외교통상부 및 현지 대사관 등의 업무협조를 구하는 등 해외에 있는 특별자산의 회수를 위하여 대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 회수절차

특별자산은 당해 사업의 특성과 담보물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별·자산별 특성에 맞는 회수방안을 수립한 뒤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공개 입찰 등을 통해 회수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특별자산의 공정한 평가를 통한 최적의 회수방안 수립을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법률자문을 거쳐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관계를 분석한 뒤, 사업장별 또는 자산별 특성에 맞춰 수립된 회수 방안에 따라 매각을 추진한다.

〈표Ⅵ-10〉 매각 대상자산별 외부전문기관 유형

자산유형 주관사 등	사업부지·주식 등 회계법인·증권사	선박 선박 브로커리지	미술품 경매전문사	외제차 등록대행사 경매전문사
---------------	-----------------------	----------------	--------------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PF 등 특수 사업장에 대한 청산가치 및 계속사업가치를 산출하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계속여부를 판단하고 청산가치가 큰 경우에는 대위변제 후 직접 매각하거나, 신탁사 공매, 법원 경매, 대출관련자와의 상환 협의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외제차의 경우에는 사전마케팅의 일환으로 잠재매수자를 대상으로 미디어테이를 개최하고 주행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잠재매수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시켜 매각성사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술품의 경우에도 경매 전에 주요 거점지역에서 순회 작품전시회를 개최

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매각과정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은 분기단위로 측정되어 평가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법률상 다툼 등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단이나 물상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협의 또는 채무의 조정 등을 통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 회수실적

공사는 특별자산의 회수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전개한 결과 2013년 까지 총 5,027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였는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부지 등 주요자산의 매각, 주식 등 지분의 처분, 미술품 등 유체동산의 경매, 자진변제 등 상환 및 임대료 수입 등으로 특별자산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회수유형 또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표VI-11〉 회수유형별 실적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회 수 유 형	사 업 명	회수실적
사업부지 매각	신안군 개발사업 부지 등	1,075
건물 매각	잰존 부천, 독산동 영화관 등	323
선박 매각	해외 선박 (3척) 등	505
주식 매각	(주)CNK인터내셔널 주식 등	1,150
유체동산 경매	미술품, 외제차, 기계장치	109
자진변제 등 상환	제주 하얏트 카지노, 자유투어 관련 대출 등	316
임대료 수입	용선료, 건물임대료 등	448
기 타	사업권 매각 등	1,102
합	계	5,027



2013. 12. 16. (월) 예금보험공사 강의

파산절차의 주요내용

- | | |
|-----------------|---------------|
| 1. 파산 제도의 왜 입니까 | 2. 파산절차의 개관 |
| 3. 파산선고와 그 효과 | 4. 파산채권과 채단 |
| 5. 분할권 | 6. 상환 |
| 7. 회생절차와의 관계 | 8. 예금보험공사, 기타 |

서울중앙지
법정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기적 일류 예금보험공사



제7장

파산재단 및 인수자산 관리

제1절 파산재단 관리

제2절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 관리

제1절 파산재단 관리

1. 파산재단 관리 현황

가. 공사의 파산관재인 역할

2000년 12월 20일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는 “보험금 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파산관재인에 대한 법원의 해임권, 법원의 허가권, 감사위원의 동의권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부칙 제3조는 “동법 시행 당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부보금융기관 파산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추가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2년 12월 개정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8에도 같은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 현재 전국 50개 부보금융기관 파산재단에 공사 파산관재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선임되어 법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추진함으로써 지원자금 등의 회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Ⅶ-1〉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구 분	전 체 파산재단 ¹⁾	파 산 관 재 인		
		공사 단독	변호사 단독	공 동 ²⁾
파산재단수	50	48	-	2

주 : 1) 법적종결재단(434개) 제외, 공적자금이 미 투입된 고려·동서증권 파산재단 및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탁 파산재단 제외

2) 공사(또는 직원)가 변호사 등과 공동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파산재단

나.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

공사는 2007년 7월부터 지역통할책임자 제도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파산재단을 8개 광역권 별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파산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즉, 파산관재인 대리인 1인이 동일 광역권내 수 개의 파산재단을 맡아 1개의 사무실에서 이들 파산재단을 통합·운영함으로써 파산재단 업무보조인 및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현금 사고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무실 통합에 따라 임차비용, 건물관리비, 소모품 등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공사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 대리인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순환교체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사는 2013년에도 파산관재인 대리인 간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파산관재인 대리인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파산관재인 대리인의 근무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파산관재인 대리인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파산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한편, 파산재단의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파산관재인 대리인과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 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각, 부실채권 회수업무 등에 대해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의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 채무조정제도 개선

공사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재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재산 및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채무조정제도를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특히, 2013년도에는 국민행복기금 등 타 채무조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 일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채무조정기준을 보완했다.

또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파산재단 채무자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리플렛 및 포스터 등을 통하여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했으며,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무자 본인이 공사 홈페이지에서 채무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채무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사는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키고 파산 저축 은행 등에 지원한 공적자금의 회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자산환가 및 배당 극대화

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의 보유자산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다양한 매각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의 매각은 2013년 중 총 12회의 합동공매 및 매각주관사를 통한 매각 등을 통하여 총 406건, 2,626억원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포함한 상세한 물건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파산재단 보유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잠재적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는 등 파산재단별 개별 매각이 용이하지 않아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매각을 추진하였다. 2013년 중 총 5회의 공개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 결과 총 26건, 157억원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파산재단 보유자산 중 부동산·주식을 제외한 자산(골프·콘도회원권 등)에 대해서도 회원권 거래소를 통한 매각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2013년 중 총 32건, 40억원의 매각 실적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자산관리시스템(FAST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을 통해 파산재단 자산의 유형별 보유현황 및 매각대상 자산 등을 상시적·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파산재단 자산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파산재단의 배당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산채권 및 배당관리 전산 시스템(CDIS)’을 2008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산채권 관리 및 배당금 지급 절차를 전산화 하여 배당 관련 업무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Ⅶ-2〉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 실적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 동 산	42	231	106	748	406	2,626
비상장주식	4	1	6	95	26	157
회원권(골프·콘도)	9	52	13	41	32	40

* 보유자산의 공매 및 수익계약 등으로 매각한 건수 및 금액임

공사는 이처럼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배당을 극대화하고 공적자금 등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3. 파산재단의 합리적 종결 추진

공사는 파산재단의 비용 대비 환가 효율성을 수시로 점검하여 효율성이 저하되는 재단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의 협의를 거쳐 잔여자산을 평가·매각한 후 최후배당을 실시하고 법적 종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파산재단을 조속히 정리함으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484개 파산재단 중 434개 파산재단은 법원으로부터 종결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50개 파산재단 중 효율성이 저하되었거나 소송 등 장애 사유로 종결이 지연된 재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종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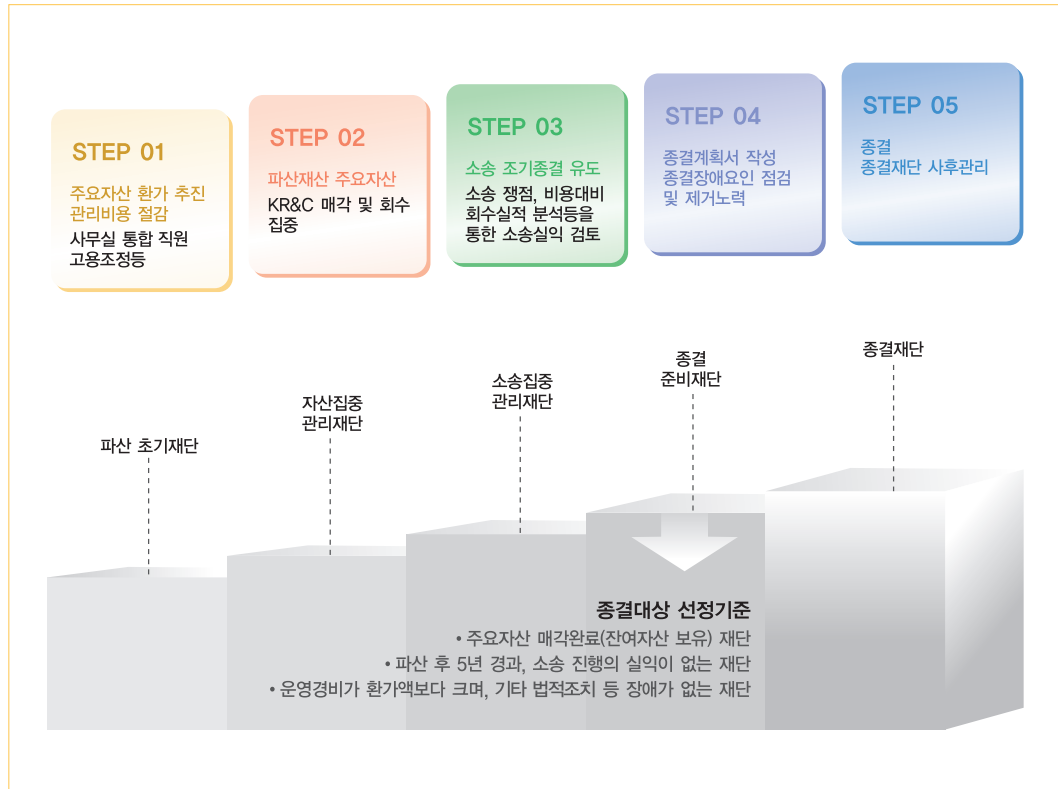
한편, 공사는 파산재단이 종결된 이후에도 각 지역통할책임자를 통해 민원 안내 및 법률관계 정리 등 종결재단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Ⅶ-3〉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

구 분		은 행	보 험	금융투자	종 금	저축은행	신 협	합 계
총 파산재단 (A)		5	11	4	22	117	325	484
종결	종결재단 (B)	5	10	4	14	76	325	434
	종결율 (B/A×100)	100	91	100	64	65	100	90
진행재단 (A-B)		0	1	0	8	41	0	50

〈그림 VII-1〉 파산재단 단계별 관리방안



제2절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 관리

1.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 현황

공사가 정리금융기관을 통해 인수한 자산은 2013년도 73억원(인수액 기준)을 포함하여 2013년 말까지 총 49조 482억원(인수액 기준, 제각 제외)이다.

〈표Ⅶ-4〉 2013년 중 정리금융기관 인수자산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채권액	인수액	비 고
케이알앤씨 (KR&C)	파산재단	1,686	57	김천저축은행 외 8개 파산재단
	저축은행	411	16	신라저축은행 외 4개 저축은행

제일은행 매각 시 뉴브리지캐피탈이 인수하지 않은 자산,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자산, 기타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미인수 자산의 인수를 위해 1999년 12월에 설립된 정리금융 공사(RFC, 現 KR&C로 전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제일은행 으로부터 7조 8,386억원, 5개 인수은행(국민·주택·신한·하나·한미)으로부터 1,588억원, 5개 생명보험회사(국민·동아·태평양·한덕·대한)로부터 3,550억원, 3개 금융투자사(한투·대투·현투증권) 매각과정에서 1조 3,072억원, 469개 파산재단으로부터 3,692억원, 35개저축 은행(한마음·한중·아림·좋은·대운·홍익·경북·현대·분당·전북·으뜸·전일·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경은, 에이스, 제일, 제일2, 진흥, 토마토, 토마토2, 파랑새, 프라임, 한주, 경기, 신라, 서울, 영남, 스마일, 한울)으로부터 5,085억원, 한아름종금 및

한아름금고 흡수과정에서 38조 5,109억원 등 2013년 말까지 총 49조 482억원(인수액 기준, 제각 제외)의 자산을 인수하였다.

〈표Ⅶ-5〉 정리금융기관 인수자산(누계)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채권액	인수액	비 고
케이알앤씨(KR&C)	은 행	98,693 ¹⁾	79,974	6개 은행(제일은행 포함)
	보 험	4,032	3,550	5개 생명보험
	금융투자	25,324	13,072	3개 금융투자사
	파산재단	86,667 ²⁾	3,692	469개 파산재단(5개 은행, 10개 보험, 4개 금융투자, 22개 증권, 80 ³⁾ 개 저축은행, 339 ⁴⁾ 개 신탁)
	저축은행	26,214	5,085	35개 저축은행
	소 계	240,930	105,373	-
한아름증권 ⁵⁾	종 금	330,588	326,625 ⁶⁾	16개 증권
한아름금고 ⁵⁾	금 고	79,848	58,484 ⁶⁾	41개 저축은행
합 계		651,366	490,482	-

주 : 1) 부실채권정리기금 현물반환분 212억(인수가 0원) 포함

2) 부실채권정리기금 현물반환분 5억(인수가 0원) 포함

3) 미인수 저축은행 파산재단 12개 제외

4) 2010년 1월 1일 신탁 중앙회로 이관된 14개 파산재단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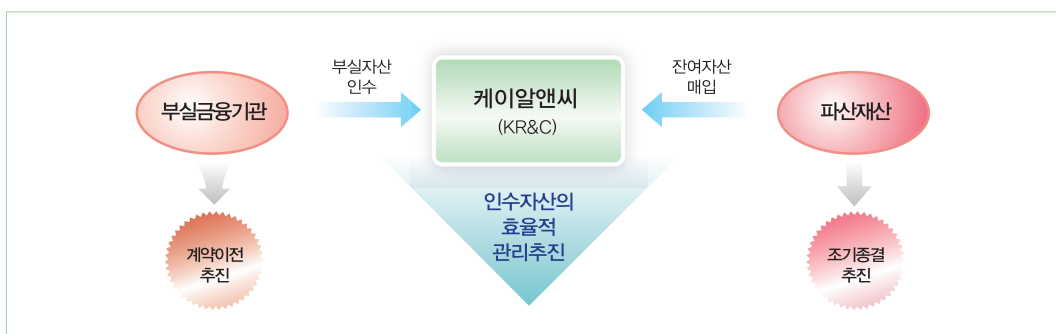
5) 공적자금 지원 분류 상 예금대지급 기관

6) 예금대지급채권 포함(제각 제외)

2.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의 효율적 관리

케이알앤씨(KR&C)는 부실금융기관의 계약 이전절차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등을 신속하게 인수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추진 등을 위해 파산재단으로부터 잔여자산을 매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Ⅶ-2〉 케이알앤씨(KR&C)의 업무



2013년 말 기준 현재 케이알앤씨(KR&C)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 자산의 잔액은 15조 3,328억원으로, 이 중 6조 3,753억원은 케이알앤씨(KR&C)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8조 9,575억원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케이알앤씨(KR&C)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자산의 자산가치 제고 및 적기 회수를 위해 전통적 방법인 만기회수는 물론 인수·합병(M&A), 자산유동화에 의한 매각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제한 주식, 회사채, 전환사채 등 케이알앤씨(KR&C)가 보유 중인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자산별 특성에 맞는 회수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Ⅶ-6〉 케이알앤씨(KR&C) 보유 자산(잔액)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자산구분	직접관리	외부 위탁관리	합 계
대출채권	463	88,681	89,144
유가증권	4,656	-	4,656
부 동 산	730	894	1,624
구상채권	57,904	-	57,904
합 계	63,753	89,575	153,328

제7장

파산재단 및 인수자산 관리



건전경영 풍토 조성을 위한

· 일시 : 2013. 10. 29(화)

· 주최 :  예금
KOREA DI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으뜸  예금보험공사

안 저축은행 감사 워크숍

신뢰
TRUST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제8장

건전경영 풍토 조성 및 부실책임 추궁

제1절 부보금융기관 건전경영 풍토 조성

제2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제3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제4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1절 부보금융기관 건전경영 풍토 조성

1. 저축은행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임직원 등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 등이 2011년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저축은행 건전성을 도모하고 저축은행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전경영풍토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 교육을 통해 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업무 취급 시 준수해야 할 법령 및 규정과 최신 부실책임사례 및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3년 8월부터는 저축은행 규모별, 교육대상자 직위별로 특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만족도 및 업무활용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저축은행 감사의 업무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호저축은행 감사대상 건전풍토 조성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지역별 여신담당임원 간담회를 신설하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 건전경영 풍토 조성 교육의 확대

공사는 2013년 9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준법감시인 및 감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준법감시인 워크숍'에 참가하여 “최근 저축은행의 금융부실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저축은행 이외의 금융업권에도 해당 금융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보금융기관의 건전경영 풍토 조성을 위한 교육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2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1.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 효율성 제고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부실금융기관 등에 위법·부당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 부실금융기관 등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에 의한 업무집행 지시자,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및 기타 제3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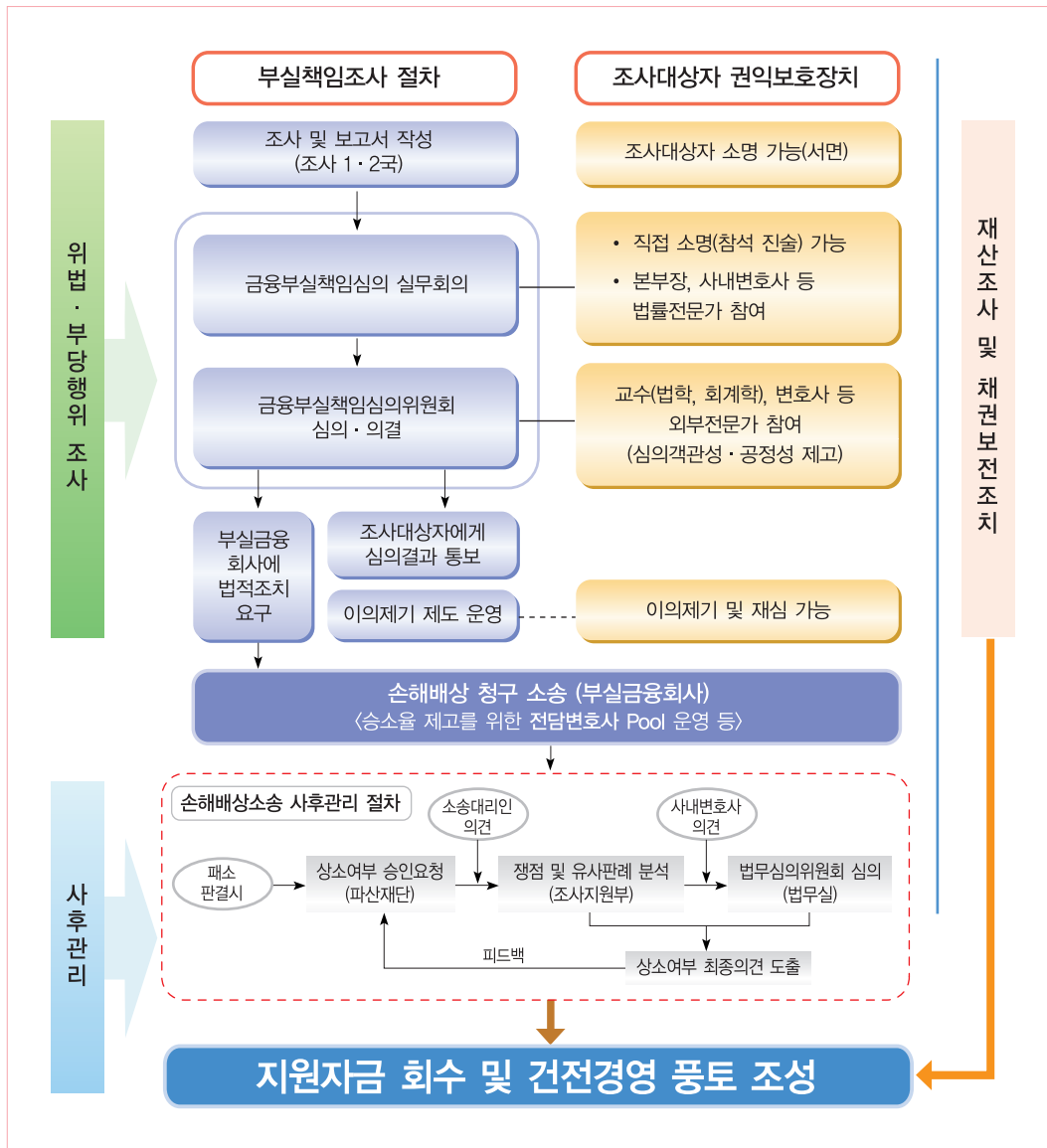
특히 공사는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이 밀착하여 불법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조사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舊 조사부(부실금융기관 조사 담당)”와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부실채무기업 조사 담당)”을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국 1부 1실로 조직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검찰 등 유관기관 수검 인력을 포함하여 2013년 말 현재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수검 직원의 전문성 및 정보력 등을 활용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으로부터 조사자료 등을 제공 받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조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저축은행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개최횟수 확대, 심의업무 표준화, 심의규정 개정 등 업무 방법을 개선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 소명·이의제기 접수기간 확대 및 제도 안내채널의 다양화, 안내문구 개선 등 소명·이의제기 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는 등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부실책임심의 결과 2013년 말 현재 총 527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 6,234명에 대한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에 요구하였다.

〈그림 Ⅷ-1〉 부실책임조사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표Ⅷ-1〉 부실금융기관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 현황(누계)

(2013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구 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	
	기관 수	부실관련자 수	기관 수	부실관련자 수
은 행	15	191	-	-
금융투자	6	65	-	-
보 험	18	236	-	-
종합금융	22	160	-	-
저축은행	86	789	41	464
신 협	325	4,146	14	183
합 계	472	5,587	55	647

2. 부실금융기관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은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2013년 말까지 부실관련자 9,013명에 대해 1조 8,1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이들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부분 종료되었으며, 부실관련자 책임재산 강제집행 등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부실책임제재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Ⅷ-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13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 협 ¹⁾	합 계
부실금융 기관수	15	6	18	22	85	311	457
피 고 수	191	83	276	181	1,026	7,256	9,013
부실책임 청구금액 ²⁾	1,004	342	2,435	3,048	5,433	5,856	18,118
부실책임 제재금액 ³⁾	471	218	1,346	548	4,056	3,208	9,847
부실책임 집행금액 ⁴⁾	102	54	218	660	922	769	2,726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탁 파산재단은 관련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2) 부실책임청구금액 : 부실관련자 책임재산 등을 감안하여 손배소 제기한 금액 (소송청구액)

3) 부실책임제재금액 : 부실책임청구금액 중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 (소송승소액)

4) 부실책임집행금액 : 부실책임제재금액 중 법원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실제 회수된 금액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부실저축은행의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도 부실금융기관 및 그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까지

36개 부실저축은행 부실관련자 573명에 대해 청구액 3,13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표Ⅷ-3〉 예금보험기금 투입 부실저축은행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13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저축은행수	피고수	부실책임 청구금액 ¹⁾	부실책임 제재금액	부실책임 집행금액
36	573	890	639	301

주 : 1) 소송 확정금액 기준(총 청구액 3,139억원, 소송진행 2,249억원)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보전조치 요구 이후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의 법적조치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사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 인력 중심의 “소송지원점검반”을 구성하여 논리적·체계적 변론 및 다양한 증거자료 제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산재단 손해배상소송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3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1.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 노력

공사의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2006년 말까지 마무리하였고, 예금보험기금이 지원된 저축은행의 부실채무기업에 대하여 2007년 상반기 예비조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등 2007년부터 위법·부당행위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2008년 3월 조직개편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전담 부서인 “舊 조사부”와 통합하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개편되었으며, 2013년 3월에는 부실채무기업 전담부서인 조사2국을 신설하여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부실채무기업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013년 말 현재 840명에 대하여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에 통보하였다.

〈표Ⅷ-4〉 부실채무기업 관련 심의 현황(누계)

(2013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기업수	부실관련자 수
321	840

2. 부실채무기업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지원 강화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은 부실관련자에 대해 187건, 9,800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표Ⅷ-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누계)

(2012년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기업	피고수	부실책임 청구금액	부실책임 제재금액	부실책임 집행금액
148	1,180	9,800	4,492	1,179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보전조치 요구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법적조치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부실금융기관 및 그 파산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소송을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실금융기관 및 그 파산재단 소송 담당 실무자와 회의를 통해 소송 및 채권보전조치 관련 자문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제8장

건전경영 풍토 조성 및 부실책임 추궁



제4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1. 국내 재산조사 강화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재산자료 제공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3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금융기관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이 신설됨에 따라 공사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부실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부실관련자 조사방법으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명시함으로써 조사권을 한층 강화하였다. 한편, 2011년 3월 23일에 실효(失効) 예정이었던 “금융기관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은 2014년 3월 23일까지 3년간 연장되어 실효성 있는 부실책임추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금융기관 중 재산조사 대상인 부산 등 28개 저축은행 및 그린손해보험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산조사 실시 결과 위법·부당 행위로 저축은행에 손실을 끼친 대주주·임직원 등 부실책임자의 금융자산 3,180억원, 부동산 2,590필지를 발견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재산조사를 통하여 발견한 부실책임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즉시 해당 저축은행에 통보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 저축은행에서는 2013년 12월 말 현재 (가)압류 3,624억원, 가처분 60건의 법적조치를 하였다.

〈표Ⅷ-6〉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현황

(2013년 12월말 현재)

구 분	발견재산		채권보전조치 현황	
	금융자산(억원)	부동산(필지)	(가)압류(억원) ¹⁾	가처분(건)
부실책임자	3,180	2,590	3,624	60

주 : 1) 가압류결정문상 청구금액

2. 해외 재산조사 확대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해외 재산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해외 재산조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캐나다·일본·호주·중국·뉴질랜드·필리핀 등 7개국을 조사대상국가로 선정하여 해외 재산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특히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음에 따라, 2013년에는 기존 출입국 기록, 재외국민등록을 통한 조사 외에 해외송금기록 조회를 통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국 및 조사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해외 재산조사를 한층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국은 기존 7개국에서 28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조사대상자도 판결문 있는 부실관련자 본인 위주에서 부실관련자의 이해관계인, 법인, 판결문 없는 부실관련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최종적으로 공사는 부실관련자 9,928명에 대한 해외송금기록 분석 후,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181명에 대해 해외 재산조사회사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법적조치가 가능한 약 미화 22.2백만달러 상당의 해외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전년대비 발견금액이 6배 증가하였고, 회수 실적도 전년도(미화 41.5만 달러) 대비 24배 늘어난 미화 986.6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신속한 법적조치 및 체계적인 해외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마련한 “파산재단 해외은닉재산 회수 지원방안”이 2014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해외은닉재산 회수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Ⅷ-7〉 연도별 해외 은닉재산 회수 현황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천 USD)

년 도	2003-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금 액	3,044	-	2	349	1,400	415	9,866	15,076

3.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회수 실효성 제고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고 그에 관한 조사·회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채권회수의 극대화 및 금융부실의 사전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공사는 2013년 12월말까지 총 242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그 중 40건에 대해 322억원을 회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총 18.4억원을 지급하였다. 특히 2013년 7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의 최고한도를 종래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였다.

공사는 부실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국내외에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수된 신고내용 중에서 부실저축은행 대주주 등 사회적 물의자의 은닉재산에 관한 보도자료를 적극 배포하고, 주요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문·지하철광고, 파산재단 대상 순회설명회 개최 및 유관기관(국세청, 관세청)과의 홈페이지 연동 등을 통한 상시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전략과 신고포상금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결과, 2013년도에 신고건수가 53건으로 전년대비 2.3배 증가하였고 회수실적도 25억원으로 전년대비 3.09배 증가하는 등 은닉재산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었다.

공사는 해외 은닉재산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국외 홍보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인회(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를 방문하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각 한인회마다 교민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미주 중앙일보 및 방송사 인터뷰 및 미주 교민 라디오방송 광고를 통해 미주 내 홍보를 한층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한인회보 광고 등을 통해 해외홍보대상국을 확대하였다. 또한, 미국 및 캐나다에는 수신자 부담으로 “해외은닉재산 신고전용 전화”를 상시 운영하여 현지 교민이 요금 부담 없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표Ⅷ-8〉 연도별 신고센터 접수건수, 회수건수 및 회수금액 현황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접수건수	21	12	17	10	22	21	15	19	12	17	23	53	242
회수건수	-	1	1	2	3	8	4	2	4	2	5	8	40
회수금액	-	3,156	374	231	11,791	6,184	2,637	2,830	605	1,058	825	2,547	32,238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기적 일류 예금보험공사

에이치씨
보험공사
RANCE CORPORATION

신뢰
TRUST
예금보험공사

다목적
최고
공사가
쌓여가는 소중한 예금
5천만원까지
지켜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
국민의 소중한 돈 지키는 곳



제9장

기금관리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제2절 예금보험기금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 (이하 '상환대책'이라 한다)에 따라 2003년 1월 1일,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분리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으로 이관하였다. 동 기금은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2003년부터 수납하는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2003년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 등에 관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1. 안정적 조성

가. 특별기여금

부보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특별기여금으로 2003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현재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공사는 2013년에 총 1조 2,830억원의 특별기여금을 수납하였다.

〈표IX-1〉 금융권별 특별기여금요율

구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요율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5/10,000 ¹⁾
법정한도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주 : 1) 2007년부터 신협의 특별기여금요율이 1/1,000에서 5/10,000로 변경됨

〈표IX-2〉 금융권별 특별기여금 수입

(단위 : 억원)

연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¹⁾	합계
			생보	손보				
2003	4,775	156	889	185	21	222	-	6,247
2004	4,956	168	978	198	6	264	-	6,570
2005	4,872	145	1,069	219	5	319	-	6,628
2006	4,987	151	1,160	242	6	370	216	7,133
2007	5,027	156	1,265	278	7	430	116	7,280
2008	4,976	185	1,364	319	8	491	129	7,472
2009	5,965	169	1,430	352	10	593	137	8,656
2010	6,811	213	1,534	409	19	715	170	9,871
2011	7,789	227	1,650	487	12	718	205	11,087
2012	8,518	226	1,760	592	10	521	228	11,855
2013	8,973	202	2,297	707	9	394	248	12,830
합계	67,648	1,999	15,395	3,986	112	5,038	1,449	95,627

주 : 1)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

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공사는 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총 52조 3,064억원의 출연금을 수령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였다. 2007년 이후로는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추가 출연금을 수납하지 않고 있다.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발행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이하 '예보채'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총 87조 1,599억원의 예보채를 발행하였다.

2003년도 상환기금 설치에 따라 2002년 말 예보채 잔액 80조 9,744억원이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그 이후 만기도래하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보채는 상환대책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라 한다)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특별기여금 및 기타 회수 자금 등으로 2008년까지 전액 상환하였다.

〈표IX-3〉 2002년 12월 31일 이전 예보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1998	210,150	-	210,150
1999	224,849	-	434,999
2000	89,407	-	524,406
2001	310,593	14,640	820,359
2002	36,600	47,215	809,744
2003	-	97,371	712,373
2004	-	166,227	546,146
2005	-	180,904	365,242
2006	-	190,636	174,606
2007	-	60,672	113,933
2008	-	113,933	-
합 계	871,599 ¹⁾	871,599	-

주 : 1)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발행 누적액

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 및 상환

공사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보채 원리금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에 따라 상환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에 공사는 2013년에 7조 2,700억원을 3년 및 5년 만기 고정금리채권으로 공모 방식을 통하여 발행하였다. 한편, 2013년 중 만기 도래한 상환기금채 7조 5,70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2013년 말 발행 잔액은 22조 5,200억원이다.

〈표IX-4〉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2004	65,000	-	65,000
2005	74,400	-	139,400
2006	28,705	3,155	164,950
2007	27,200	450	191,700
2008	88,000	100	279,600
2009	58,600	65,000	273,200
2010	68,100	74,400	266,900
2011	7,800	37,300	237,400
2012	47,700	56,900	228,200
2013	72,700	75,700	225,200
합 계	538,205	313,005	225,200

마. 차입금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금보험금 등의 지급 및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기관, 기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2년까지 재정융자 특별회계,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부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상환기금 설치로 기존 차입금 잔액은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공적자금 상환 대책에 따라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전액은 2003년 1월 1일자로 상환의무가 면제되었다. 2003년 이후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한 신규 차입은 없고, 2013년에 세계은행(IBRD) 차관의 원금 1억불(1,168억원)을 상환하여 2013년 말 차입금 잔액은 없다.

〈표IX-5〉 상환기금 차입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차 입 금 액				상환금액	잔 액
	부보금융기관	차 관 ¹⁾	재정융자 특별회계	소 계		
인수액	76,011	-	-	76,011	-	76,011
1998	3,295	2,416	10,582	16,293	9,337	82,967
1999	13,870	12,016	26,254	52,140	33,870	101,237
2000	90,028	13	39,533	129,574	9,802	221,009
2001	-	8	49,672	49,680	110,196	160,493
2002	-	-	59,553	59,553	3	220,043
2003	-	-	-	-	195,993	24,050
2004	-	-	-	-	11,168	12,882
2005	-	-	-	-	3,538	9,344
2006	-	-	-	-	1,168	8,176
2007	-	-	-	-	1,168	7,008
2008	-	-	-	-	1,168	5,840
2009	-	-	-	-	1,168	4,672
2010	-	-	-	-	1,168	3,504
2011	-	-	-	-	1,168	2,336
2012	-	-	-	-	1,168	1,168
2013	-	-	-	-	1,168	1,168
합 계	183,204	14,453	185,594	383,251	383,251	0

주 : 1) IBRD, ADB 차관자금 등

2. 지 원

가. 개 관

공사는 상환기금을 통해 예금보험금의 지급,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한 출자·출연·대출 등의 자금 지원을 하였으며, 2013년 총 0.03억원의 자금을 전액 출연 형태로 지원하였다.

〈표IX-6〉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3년)

(단위 : 억원)

금 융 권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대 출	예금보험금 지급	합 계
은 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 험	-	0.03	-	-	-	0.03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	-	-	-	-	-
신 협	-	-	-	-	-	-
합 계	-	0.03	-	-	-	0.03

2013년 말까지 공적자금 형태로 상환기금에서 부보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을 위해 지원된 자금은 총 110조 8,945억원이다. 이중 부보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따른 예금보험금 지급 30조 3,124억원(27.3%),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50조 7,937억원(45.8%), 계약이전 등에 따른 출연 18조 6,117억원(16.8%), 기타 자산매입 등으로 11조 1,767억원(10.1%) 등이 지원되었다.

〈표IX-7〉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2013년 12월 말 현재, 단위 : 억원)

금 융 권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¹⁾	대 출	예금보험금 지급 ¹⁾	합 계
은 행	222,039	139,189	81,064	-	-	442,292
금융투자	99,769	4,143	21,239	-	113	125,264
보 험	159,198	31,192	3,495	-	-	193,885
종합금융	26,931	7,431	-	-	182,718	217,080
저축은행	1	4,161	-	5,969	72,892	83,023
신 협	-	-	-	-	47,402	47,402
합 계	507,937	186,117	105,799	5,969	303,124	1,108,945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포함

나. 금융권별 지원내역

(1) 은행

2013년 중 공사가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은행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2) 보험

KB생명은 과거 한일생명 인수 시 공사와 체결한 출연약정서에 의거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한 휴면보험금에 대하여 공사에 정산을 요청 하였으며, 공사는 2013년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0.03억원을 추가 출연하였다.

(3) 금융투자

2013년 중 공사가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4) 저축은행

2013년 중 공사가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저축은행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표IX-8〉 연도별 저축은행 예금보험금 지급

(단위 : 개, 억원)

연 도	저축은행 수	예금보험금 지급 금액
1998	17	14,705
1999	19	14,272
2000	11	6,500
2001	5	29,537
2002	10	7,719
2003	7	5
2004	8	26
2005	7	1
2006	8	3
2007	2	128
2008	-	△4
2009	1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합 계	95	72,892

〈표IX-9〉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2013년 12월 말 현재, 단위 : 억원)

기 관	출 자		출 연		대 출	
	2012년 이전	2013년	2012년 이전	2013년	2012년 이전	2013년
경기(舊코미트)	-	-	254	-	1,654	-
경북(舊한우리)	-	-	85	-	-	-
대전(現 대전)	-	-	-	-	102	-
도민(금강)	-	-	28	-	709	-
동원(한국투자)	-	-	63	-	783	-
부민(부산)	-	-	243	-	-	-
부산 2	-	-	-	-	271	-
상업(舊현대)	-	-	701	-	-	-
새누리	-	-	13	-	21	-
솔로몬(舊골드)	-	-	663	-	-	-
신충북	-	-	-	-	161	-
아 름	-	-	-	-	615	-
유니온	-	-	39	-	518	-
제이원	-	-	325	-	-	-
조 일	-	-	29	-	738	-
충남(舊새온양)	-	-	-	-	45	-
충 일	-	-	-	-	89	-
텔스(舊신한국)	-	-	775	-	-	-
하나로	-	-	422	-	-	-
한마음	-	-	521	-	-	-
해동(경기)	-	-	-	-	263	-
케이알앤씨(KR&C)	1 ¹⁾	-	-	-	-	-
합 계	1	-	4,161	-	5,969	-

주 : 1) 2001년 12월 말 정리금융공사(RFC)로 합병된 한아름금고에 대한 출자

3.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가. 개 관

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방법은 그 지원방법에 따라 다르다. 먼저 부보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의 경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부보금융기관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진다. 둘째, 예금대지급·출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공적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한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해 지원된 것이므로 파산한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공사가 직접 파산채권자로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회수가 이루어진다. 끝으로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자산 및 부보금융기관에 대출한 자금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함으로써 공적자금이 회수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사는 2013년에 7,992억원을 회수하고, 2013년 말까지 총 50조 9,587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X-10〉 상환기금의 회수(2013년)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금 용 권	출자금 회수	출연금 정산 등	자산 매각 ¹⁾	대출금회수	파산 배당금 ¹⁾	합 계
은 행	1,141	2	11	-	△26 ²⁾	1,127
금융투자	-	0.06	10	-	-	10
보 험	1,794	0.1	14	-	-	1,808
종합금융	33	-	-	-	4,311	4,344
저축은행	-	0.4	-	-	698	698
신 협	-	-	-	-	5	5
합 계	2,968	3	34	-	4,987	7,992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회수 포함

2)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배분으로 인한 회수액(74억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보채상환기금 간 공적자금 내부거래 개념으로 회수실적 이중집계 방지를 위해 회수액(48억원)에서 차감

〈표IX-11〉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금 용 권	출자금 회수	출연금 정산 등	자산 매각 ¹⁾	대출금회수	파산 배당금 ¹⁾	합 계
은 행	163,053	701	65,845	-	18,469	248,068
금융투자	12,121	3,231	17,989	-	78	33,419
보 험	38,094	888	2,419	-	4,310	45,712
종합금융	1,449	59	-	-	88,656	90,164
저축은행	-	342	-	5,969	51,721	58,032
신 협	-	4	-	-	34,188	34,192
합 계	214,718	5,225	86,253	5,969	197,423	509,587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회수 포함

나. 보유주식의 매각 등

(1) 은행

공사는 2013년 중 제주은행 장중매각을 통해 24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회사 배당금을 통해 1,148억원, 제주은행 배당금을 통해 2억원을 회수하였다. 이외에도 제일은행 관련 소송(2012년 4월 종결)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을 통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회수하였다.

우리금융지주회사 매각 관련하여서는 2013년 6월 2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에 따라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추진하여 2013년말에 BS금융지주회사와 JB금융지주회사를 각각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보험회사

공사는 2013년 중 한화생명보험 배당금을 통해 322억원, 서울보증보험 배당금을 통해 1,472억원을 각각 회수하였다.

한편 공사는 과거 현대·두원·삼신생명의 계약이전 시 한화생명보험과 체결한 출연약정서에 의거하여 대출금 회수금액 0.12억원을 회수하였다.

(3) 금융투자회사

공사는 과거 한국투자증권 및 대한투자증권 매각 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및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 경매 배당금 0.06억원을 회수하였다.

(4) 기타

공사는 2013년 4월 케이알앤씨(KR&C) 보유 SK하이닉스 주식 0.63%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여 1,262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공사는 2013년 6월 케이알앤씨(KR&C) 보유 포항터미널 주식 100%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여 160억원을 회수하였으며, 2013년 11월에는 케이알앤씨(KR&C) 보유 한국전력 1.36%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여 2,774억원을 회수하였다.

그 밖에, 공사는 케이알앤씨(KR&C)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를 통해 5개 종목*을 매각하여 3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케이알앤씨(KR&C) 보유 비상장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을 통해 12억원을 회수하였다.

* 디지털이미이션, 인켈 등 5개 종목

다. 케이알앤씨(KR&C)를 통한 회수

케이알앤씨(KR&C)는 인수자산의 매각 및 처분을 위하여 전통적 방법인 만기회수는 물론 M&A방식에 의한 매각, 합작특수목적회사(J.V.SPC)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 자산유동화 증권(ABS) 발행 등 다양한 첨단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지원 자금을 회수하여 2013년 말까지 총 41조 3,091억원을 회수하였다.

2013년 중 케이알앤씨(KR&C)는 주요 보유 유가증권의 공사 매각 위임, 대출채권의 원리금 추심, 국내외 소송 절차 진행, 공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 및 구상채권 파산배당 등을 통해 6,775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X-12〉 케이알앤씨(KR&C)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회수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자산구분 ¹⁾	대상 자산	회수액	회수 방법
2013년 회수액	대출채권	원화 채권	1,086	직접 추심 및 소송
		외화 채권	1	
		소 계	1,087	
	유가증권	상장 및 비상장 주식	4,344 ²⁾	공개경쟁입찰, 장종매각, 배당
	부 동 산	업무용 빌딩 등	19	-
	구상채권	예금대지급 채권 등	1,325	파산배당
	합 계		6,775	-
누계액	대출채권	원화 채권	106,917	국제입찰, NPL매각, ABS 발행 등
		외화 채권	30,704	
		소 계	137,621	
	유가증권	상장 및 비상장 주식	61,286	공동매각, 블록세일 등
	부 동 산	업무용 빌딩 등	6,708	공매 및 수의계약
	구상채권	예금대지급 채권 등	207,476	파산배당
	합 계		413,091	-

주 : 1) 공적자금 지원 분류 상 예금대지급 계정에 해당하는 한아름중금 및 한아름금고의 자산 중 예금대지급 채권이 아닌 대출채권,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매각액을 포함

2) 공사에 매각 위임된 케이알앤씨(KR&C) 보유 주요 유가증권(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의 매각 회수액(4,205억원) 포함

라. 파산배당

2013년 중 공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을 통하여 은행·금융투자 및 보험 파산재단으로부터 △26억원, 종합금융·저축은행 및 신탁 파산재단으로부터 5,013억원 등 총 4,987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수령하여 2013년 말까지 총 19조 7,423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X-13〉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¹⁾

(2013년 12월 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금 용 권	파산재단 수	회 수 액	
		2013년	1999년~2013년 총회수액
은 행	5	△26 ²⁾	18,469
보 험	10	-	4,310
금융투자	4	-	78
종합금융	22	4,311	88,656
저축은행	75	698	51,721
신 협	325	5	34,188
합 계	441	4,987	197,423

주 : 1) 공사가 파산재단(공사가 예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및 케이알앤씨(舊 한아름증권 · 금고를 통해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로부터 수령한 파산배당 회수금액

2)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배분으로 인한 회수액(74억원)은 공적자금 전채기준으로 볼 때 내부거래에 해당되므로 회수실적 이중집계 방지를 위해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액(48억원)에서 차감

마. 대출금 회수 등

공사는 2013년 말까지 대출 형태로 총 5,96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은 전액 회수하였다. 또한, 2013년 말까지 출연금 정산 등을 통해 회수한 지원금은 총 5,225억원이며, 2013년 중 SC 은행 출연금 정산으로 2억원, 대한화재 등으로부터 0.1억원,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통해 0.4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3억원을 회수하였다.



제2절 예금보험기금

1. 재원 조성의 다양화

가. 예금보험료

부보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예금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기관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02년까지 수납한 예금보험료는 상환대책에 따라 설치된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현행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부터 수납한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다.

한편, 2011년 3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저축은행 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특별계정은 각 금융업권별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연간 예금보험료의 45%(다만, 상호저축은행업권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와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채권 발행, 외부 차입금, 회수자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공사는 특별계정을 포함하여 2013년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조 1,59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수납하였다.

〈표IX-14〉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구 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8/10,000	15/10,000 ¹⁾	15/10,000 ²⁾	15/10,000	40/10,000 ³⁾
법 정 한 도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주 : 1) 2007년부터 금융투자사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고객예탁금에 대하여 예금보험료율 30% 인하

2) 보험회사의 설립경과연수·신용도 및 재무상황의 건전성을 참작하여 표준비율의 5%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율 인상 또는 인하

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예금보험료율 변경(기준 35/10,000)

〈표IX-15〉 금융권별 예금보험료 수입

(단위 : 억원)

연 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특별계정 ²⁾	합 계 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03 ¹⁾	4,775	312	2,580	535	73	667	-	8,942
2004	4,960	336	2,832	571	17	793	-	9,509
2005	4,869	300	3,109	628	15	974	-	9,895
2006	4,987	303	3,362	697	19	1,116	-	10,484
2007	5,027	256	3,654	801	22	1,306	-	11,066
2008	4,808	305	3,934	918	24	1,483	-	11,472
2009	5,291	276	4,097	1,016	29	1,737	-	12,446
2010	5,451	284	2,609	698	34	2,524	-	11,600
2011	4,795	283	2,362	700	18	2,331	1,742	12,231
2012 ³⁾	3,748	2	-14 ³⁾	100	8	1,344	5,816	11,004
2013 ⁵⁾	3,948	-	221	488	8	253	6,672	11,590
합 계	52,659	2,657	28,746	7,152	267	14,528	14,230	120,239

주 : 1) 2002년까지의 예금보험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2011년 4월 설치

3) 2012년 이전에 납부한 예금보험료에 대한 환급 발생

4)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탁협동조합계정은 제외

5) 목표기금제도 시행에 따라 2012년(금투·생보 면제, 손보 15% 감액) 및 2013년(금투 면제, 생보45% 감액, 손보 7%감액) 보험료 감면 조치

나. 부보금융기관 출연금

부보금융기관이 영업 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출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년까지 수납한 출연금은 상환 대책에 따라 설치된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공사가 2003년부터 수납한 출연금은 현행 예금 보험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공사는 2013년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총 79억원의 출연금을 수납하였다.

〈표IX-16〉 부보금융기관 출연금

(단위 : 억원)

연 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특별계정 ²⁾	합 계 ³⁾
			생명보험	손해보험				
2003 ¹⁾	0.3	-	6.5	2.0	-	-	-	8.8
2004	3.4	2.0	6.0	2.0	-	-	-	13.4
2005	2.2	2.0	-	-	-	12.5	-	16.7
2006	3.8	8.0	-	2.0	-	13.4	-	27.2
2007	-	-	-	-	-	-	-	-
2008	1.6	110.1	-	-	-	5.6	-	117.2
2009	7.7	43.1	4.2	3.4	0.2	7.8	-	66.3
2010	0.8	5.8	9.0	0.3	-	-	-	15.9
2011	0.3	-	-	-	-	12.0	-	12.3
2012	5.8	1.3	50.0	8.0	-	24.0	-	89.1
2013	0.8	21.7	3.2	3.1	0.0	49.8	-	78.6
합 계	26.7	194.0	78.9	20.8	0.2	125.1	-	445.6

주 : 1) 2002년까지의 출연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 등을 위한 특별계정은 출연금 수입 없음

3) 2010년 1월 1일자로 신흥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다.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발행 및 상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 및 제26조의2에 따라 2011년 12월 정부보증 없이 공사 자체 신용으로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을 최초로 발행하였다. 2013년 에도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자금지원 등 채권 발행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2조 9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성하였다.

〈표IX-17〉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¹⁾	잔 액
2011	12,000	-	12,000
2012	200,400	-	200,400
2013	20,900	-	20,900
합 계	233,300	-	233,300

주 : 1) 2011년 최초 발행(3년물)에 따라 2013년까지 만기 미도래로 상환금액 없음

라. 차입금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금보험금 등의 지급 및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기관, 기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2003년과 2004년에 1,664억원을 차입하였고, 2007년에는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2,314억원을 차입하였다.

〈표IX-18〉 예금보험기금 차입 및 상환

(단위 : 억원)

계정별	연 도	차 입 금 액 ¹⁾				상환금액	잔 액
		부보금융 기관	한국은행 등	정 부	소 계		
저축 은행	2007	2,314	-	-	2,314	-	2,314
	2008	-	-	-	-	2,314	-
	소계	2,314	-	-	2,314	2,314	-
특별 계정	2011	104,199	-	-	104,199	12,000	92,199
	2012	141,932	-	1,000	142,932	222,625	12,506
	2013	19,364	-	1,000	20,364	30,870	2,000
	소계	265,495	-	2,000	267,495	265,495	2,000
합 계		267,809	-	2,000	269,809	267,809	2,000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이중 신용협동조합계정의 외부 차입금은 파산배당 등 자체 회수자금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920억원을 상환한 후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잔액을 모두 이관하여 상환하여야 할 외부 차입금이 없고, 저축은행계정의 외부차입금도 2008년 중 2,314억원 전액을 상환하였다.

한편, 2011년 대규모 부실저축은행 정리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계정은 은행 등 부보 금융기관으로부터 2013년 말까지 총 26조 5,495억원을 차입하였다. 또한, 특별계정 재원확충의 일환으로 2012년 및 2013년에 각 1,000억원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무이자(10년 만기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용자를 신청하여 총 2,000억원을 수령하였다.

2013년 말까지 특별계정 차입금 26조 7,495억원 중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26조 5,495억원을 상환하여 2013년 말 차입금 잔액은 2,000억원이며, 전액 정부로부터의 장기 차입금이다.

2. 적시 지원

가. 개 관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한 출자·출연·대출 등의 자금 지원에 지출한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김천저축은행 등 16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 저축은행계정을 통하여 총 4조 5,27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29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특별계정을 통하여 총 26조 8,088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 중 1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226억원을 손해보험회사계정에서 지원하였다.

〈표IX-19〉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3년)

(단위 : 억원)

계 정 별 ¹⁾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 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특별계정	1,271	17,678	154	34	-	19,137
손해보험계정	-	226	-	-	-	226
합 계	1,271	17,904	154	34	0	19,363

주 : 1) 특별계정 및 손해보험계정 외에 타 계정은 2013년 중 신규 자금 지원 없음

〈표IX-20〉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2013년 12월 말 현재, 단위 : 억원)

계 정 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 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¹⁾
은 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 험	-	226	-	-	-	226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1,211	24,542	14,412	4,891	219	45,275
특별계정	3,655	226,311	36,213	1,134	775	268,088
합 계	4,866	251,079	50,625	6,025	994	313,589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나. 금융권별 지원내역

(1) 저축은행(특별계정)

공사는 2011년부터 영업정지 된 29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 특별계정을 통하여 가자금금을 포함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전이 확정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순자산부족분을 출연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자산은 케이알앤씨(KR&C)로 계약이전하여 이에 따른 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2013년 말까지 영업정지 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IX-21〉 특별계정을 통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현황*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	영업정지일	예금보험금 지급 (가자금금 포함)	출연, 대출 등	합 계
삼화 등 16개 저축은행	2011년 중	32,754	127,034	159,788
솔로몬 등 8개 저축은행	2012년 중	3,431	86,706	90,137
서 울	2013. 2.15	10	6,288	6,298
영 남	2013. 2.15	1	2,766	2,767
신 라	2013. 4.12	17	6,660	6,677
스 마 일	2013.11. 1	-	1,081	1,081
한 울	2013.12.27	1	1,339	1,340
합 계		36,214	231,874	268,088

* 2013년 중 삼화 등 16개 저축은행에 44억원, 솔로몬등 8개 저축은행에 931억원을 예금보험금 및 출연금 등으로 추가 지원

(2) 보험회사

2003년 이후 저축은행 이외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없었으나, 2012년 영업 정지된 그린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해 예금보험기금 손해보험계정을 통하여 제3자 계약이전시 자산부족분에 대한 출연금 226억원을 인수자(MG손해보험) 앞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표IX-22〉 손해보험계정을 통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현황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손해보험회사	영업정지일	예금보험금 지급 (가자금금 포함)	출연, 대출 등	합 계
그 린	2012. 5.16	-	226	226
합 계		-	226	226

3. 회수 극대화

가. 개 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지원한 자금도 상환기금의 회수방법과 마찬가지로 출자부보금융기관의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회수,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따른 파산배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자금 상환 등의 회수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3년에 저축은행계정은 970억원, 특별계정은 1조 446억원을 회수하였고, 2003년부터 2013년 말까지 누적으로 총 2조 7,548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X-23〉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13년 및 누계)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회수	보험금회수	대출금회수	개산지급금 회수	합 계 ¹⁾
2013년	저축은행	1	516	247	76	130	970
	특별계정	1,268	4,410	4,191	133	444	10,446
	합 계	1,269	4,926	4,438	209	574	11,416
2003~2013년 말 누계		3,815	5,957	11,590	5,400	786	27,548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나.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2013년 중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 등을 통하여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으로부터 9,939억원의 파산배당금 등을 수령함으로써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누계실적으로 총 16,786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공사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케이알앤씨(KR&C) 등을 통해 경북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6,025억원을 대출하여 총 5,400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X-24〉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금 용 권	파산배당금 등 회수 ¹⁾		대출금 회수 ¹⁾	
	2013년 중	2003~2013년 말 누 계	2013년 중	2003~2013년 말 누 계
저축은행(특별계정 포함)	9,939	16,786	208	5,400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다. 기금 건전성 제고

2003년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이 출범한 이후 2006년 5월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목표 기금제의 도입과 예금보험료를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공사는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예금보험료를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2007년 10월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2007년 12월 의원입법을 통하여 2009년부터 목표기금제를 시행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였다.

2009년 2월에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생명보험계정과 손해보험계정을 분리하고 부보 금융기관의 수가 적은 중금계정은 목표규모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6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로 기금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할 경우 예금 보험료를 인하,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3월에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기금의 부실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저축 은행의 정리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6개 계정 외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 계정”을 설치하였다. 특별계정은 각 업권별 예금보험료 수입의 일부 및 회수자금 등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달하여 2011년 이후 발생한 부실저축은행의 정리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및 2013년 3월에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에 따라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발간하고, 특별계정의 전년도 결산결과 및 해당 연도 운용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2012년 7월 및 2013년 11월에는 특별계정의 재원확충 및 조성재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로부터 무이자 조건으로 각각 1,000억원의 차입금을 수령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공사는 특별계정을 통해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채권을 2011년 12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채권 발행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시스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2012년 8월 공사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을 발행하였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연중 저금리기조 지속, 은행의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자산 운용에 곤란한 상황이 있었으나 금융기관별 투자한도 설정 시 자금 수신의사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 가감점 비율을 확대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금리 수준 및 수익률곡선에 대한 전망, 주요 경제 동향 예측을 바탕으로 자산배분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시장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한편, 연기금투자폴 복수주간사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연기금 중 최초로 복수주간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기관간 Repo거래 도입여부 검토 등을 통해 운용자산 다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연중 국내 금융시장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다양한 대외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글로벌 경제충격을 반영한 여유자금 운용 관련 비상위험계획을 개선하는 한편,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여유자금 위험관리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공사는 저축은행 및 특별계정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통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기적 일꾼 예기금융보험공사



제10장

2013년도 결산

제1절 결산 개요

제2절 결산 기준

제3절 결산 현황

제1절 결산 개요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구분계리)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공사회계 및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 이라 한다) 등 3개의 회계단위로 구분계리하고 있다

다만, 예금보험기금과 공사회계의 결산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위임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구분회계 사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통합 결산서를 작성한다.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 이라 한다) 등 7개 계정으로 나누어 구분계리를 하고 있으며, 상환기금은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7개 계정으로 나누어 구분계리를 하고 있다.

공사는 회계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회계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검하고 있으며, 2013회계연도에는 삼덕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검하였고 감사의견은 '적정' 이었다.

제2절 결산 기준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의 재무제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었고, 상환기금의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I.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1.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3년의 경우 예금보험기금만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

(2) 유가증권의 평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미실현보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 후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 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관계기업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에 대한 지분비율만큼 취득원가에 가감처리하고 동시에 자본항목을 증감시키거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이 손상된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원가(또는 상각 후 취득원가)와 공정가액(또는 최초의 유효 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나. 대출금 등의 평가

대출금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지급준비금

보험사고 발생 및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예상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를 적립하고 있다.

라.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매입자금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을 감소시키고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2. 수익 · 비용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계상하였다. 예금보험료수입과 예금 등과 관련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며,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나. 수익 · 비용의 기간귀속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손익을 계상하였다.

- (1) (비용의 이연) 당해 연도 이후에 속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표시하고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였다.
- (2) (비용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비용으로 결산일 현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표시하여 비용에 가산하였고, 결산일 현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계상하지 않았다.
- (3) (수익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수익으로 일정한 계약 또는 약관에 정한 기일이 미도래하여 결산일 현재 현금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미수수익으로 표시하여 수익에 가산하였다.

제10장

2013년도 결산



Ⅱ. 상환기금

1. 국가회계기준의 적용

상환기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한다.

(2) 유가증권의 평가

채무증권은 상각 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감액한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나. 대여금 등의 평가

대여금, 미수채권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장기충당부채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금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라. 공채발행차금

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할인발행차금 또는 할증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공채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환입)하고, 동 상각(환입)액을 이자비용에 가산(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다.

마.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상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동 과목을 감소시키고 관리운영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에 배분된 금액은 프로그램총원가로 그 이외의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하고 있다.

3. 수익 · 비용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기준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교환수익의 경우 수익창출 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비교환 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되,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나. 비용인식기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3절 결산 현황

1.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 통합)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위임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 규칙」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구분회계단위인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간의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통합결산서를 작성한다.

구분회계단위별 재무 현황 및 손익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예금보험기금

(1) 재무 현황

2013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17조 3,135억원으로 2012년 말 대비 1조 8,925억원(12.3%)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2013년 중 발생한 부실저축은행 정리자금 지원으로 인해 구상채권이 1조 1,237억원 증가하였고 특별계정을 제외한 계정에서 보유자금(9,394억원*)이 7,089억원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부채총액은 2013년 말 현재 23조 9,147억원으로 2012년 말 대비 1조 1,918억원(5.2%) 증가하였다. 이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등 외부 차입금 순증가(9,394억원*), 정부 재정융자 증가

(1,000억원), 총당부채 적립(1,311억원)에 주로 기인한다.

* 예금보험기금채권 증가(2조 900억원) - 산업은행 차입금 감소(1조 1,506억원)

자본총액은 2013년 말 현재 (-)6조 6,012억원으로 2012년말 대비 7,007억원(9.6%)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당기순이익(7,089억원)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 손익 현황

2013년도 당기순이익은 7,089억원, 총포괄이익은 7,007억원으로 2011년 이후 최초로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되었다.

영업이익은 5,436억원으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영업수익(1조 4,565억원)의 경우 예금보험료수익(1조 2,420억원), 운용자산 이자수익(2,035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영업비용(9,129억원)의 경우 이자비용(8,236억원)과 공사운영비(837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영업외손익은 1,653억원으로 주로 구상채권 회수예상가액 증가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순환입액(3,271억원), 총당부채 전입액(△1,311억원), 가교저축은행 평가 등과 관련된 손실(△329억원)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공사회계

(1) 재무 현황

2013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196억원으로 2012년 말 대비 10억원(5.2%) 증가하였다.

유동자산은 17억원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분, 4대 보험 납부 등을 위한 현금 보유분이 전년 대비 줄어 2012년 말 대비 5억원 감소하였다. 비유동자산은 179억원으로, 임직원퇴직에 대비한 금융기관 예치액(사외적립자산)등이 늘어 2012년 말 대비 15억원 증가하였다.

부채총액은 2013년 말 현재 약 227억원으로 2012년 말 대비 20억원(8.1%) 감소하였다.

자본총액은 2013년 말 현재 약 (-)30억원으로 2012년 말 대비 30억원 증가하였다. 공사회계의 자본이 (-)인 사유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분(2012년 결산시부터 반영)과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예상액(2013년 결산시부터 반영)을 부채로 새로이 계상함에 기인하였다.

(2) 손익 현황

2013년 중 당기순이익은 8억원, 총포괄이익은 30억원이 발생하였다.

총수익은 953억원으로 기금전입수익(947억원)을 포함한 영업수익 948억원과 기타수익 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비용은 945억원으로 인건비 579억원(61%)과 경비 366억원(3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상환기금

가. 재무 현황

자산총액은 2013년 말 현재 12조 4,343억원으로 2012년 말 대비 1조 911억원(9.6%) 증가하였다. 유동자산의 경우 단기대여금이 KR&C 영업기간 연장으로 장기대여금으로 계정 대체되어 감소(8,786억원)하였으나, 2014년 1월 중 채권 상환을 위한 기말 보유자금에 늘어(9,183억원) 총 423억원 증가하였다. 투자자산의 경우 우리금융지주회사 등 주식 평가액이 증가(6,950억원)하고, 장기 대여금으로 계정 대체된 KR&C 대출금(3,739억원)등으로 1조 637억원 증가하였다.

부채총액은 2013년 말 현재 22조 7,400억원으로 2012년 말 대비 4,107억원(1.8%) 감소하였다. 이는 KR&C에 대한 대출 원리금 회수자금(5,837억원) 등으로 기존 부채를 일부 상환한데 기인한다.

순자산총액은 2013년 말 현재 (-)10조 3,057억원으로 2012년 말 대비 1조 5,018억원(12.7%) 증가하였다. 이는 당기순이익 8,481억원의 시현과 지분증권의 주가상승 등으로 인한 순자산 조정 6,537억원(29.0%) 증가에 기인한다.

나. 손익현황

2013년 중 재정운영결과는 (-)8,481억원으로 2012년도 대비 2,772억원(48.5%) 개선되었다.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기준의 당기순이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負(-)인 경우 발생한 원가

보다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중 순이익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2012년도 대비 상환기금채 등 이자비용 감소(2,684억원), 특별기여금 수익 증가(760억원) 등이다.

상환기금의 고유사업인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4,751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총원가 1조 1,741억원에서 프로그램차감수익 6,990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재정운영순원가는 4,349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4,751억원에서 관리운영비 100억원 및 비배분비용 30억원을 가산하고 비배분수익 532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원가로 배부되지 않은 인건비, 경비 등의 관리업무비를 말하며, 비배분수익 및 비배분비용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 없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한편, 재정운영결과 (-)8,481억원은 재정운영순원가 4,349억원에서 비교환수익 1조 2,830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특별기여금수입을 말한다.



〈표 X-1〉 요약 재무상태표

• 당 기 : 2013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58,856	48,881	유동부채	15,749	13,671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598	2,850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370	2,100
2. 유동금융자산	50,833	40,504	(금융부채 발생이자 등)		
매도가능금융자산 ¹⁾	18,024	14,007	2. 유동금융부채	12,003	11,506
단기대여금	1,209	1,336	단기차입금	-	11,506
(대손충당금)	(-)521	(-)669	사채	12,000	-
단기금융상품	32,121	25,830	사채할증발행차금	3	-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423	5,526	3. 유동비금융부채	45	43
단기미수수익	6,445	5,556	단기예수금	45	43
(대손충당금)	(-)22	(-)30	4. 유동충당부채	1,331	21
4. 유동비금융자산	2	1	종업원급여충당부채	20	21
단기선급비용	2	1	기타유동충당부채	1,311	-
비유동자산	114,379	105,424	비유동부채	223,530	213,714
1. 비유동금융자산	16,723	19,019	1. 비유동금융부채	223,456	213,621
매도가능금융자산	12,746	19,013	장기차입금	2,000	1,000
장기대여금	6	6	(현재가치할인차금)	(-)699	(-)365
장기금융상품	3,970		정부보조금	690	362
2.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1	103	사채	221,300	212,400
장기보증금	119	115	(사채할인(증)발행차금)	165	225
(현재가치할인차금)	(-)8	(-)12	2. 비유동비금융부채	74	74
3. 유형자산	38	37	기타비유동비금융부채	74	74
토지	1	1	3. 종업원급여채무	-	19
건물	15	10	순확정급여채무 등	-	19
구축물	10	6	부채총계	239,278	227,385
기타유형자산	195	187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184	(-)167			
4. 영업권 이외 무형자산	6	7	결손금	(-)66,087	(-)73,206
기타무형자산	6	7	당 기: (+) 7,077		
5. 비유동비금융자산	97,492	86,258	전 기: (-) 31,312		
장기선급비용	8	11	기타자본구성요소	44	127
장기구상채권	278,593	270,47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4	127
(대손충당금)	(-)181,109	(-)184,225	자본총계	(-)66,043	(-)73,079
6. 순확정급여자산	10	-	부채및자본총계	173,235	154,305
자산총계	173,235	154,305			

주 : 1) 가교저축은행의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다가 K-IFRS도입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정 대체

〈표 X-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 당 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영업이익 (A=B-C)	5,439	7,160
영업수익 (B)	14,676	14,379
(보험료수익)	12,420	11,212
(이자수익)	2,036	2,942
(이전수입)	110	103
(기타수입)	110	121
영업비용 (C)	9,237	7,219
(이자비용)	8,236	6,196
(인건비)	579	548
(경비)	366	374
(기타)	56	101
기타 손익 (D)	1,987	-38,171
기타충당부채 순환입액	-1,311	57,898
대손충당금 순환입(전입)액	3,271	-96,099
기타	27	30
금융 손익 (E)	-329	-301
(금융자산처분이익)	-131	-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198	-301
당기순손익 (F=A+D+E)	7,097	-31,312
기타포괄손익 (G)	-61	69
총포괄손익 (H=F+G)	7,036	-31,243

〈표 X-3〉 요약 재무상태표

- 당 기 : 2013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58,839	48,859	유동부채	15,691	13,607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정부보조금)	1,583	2,828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금융부채 발생이자)	2,342	2,070
2. 유동금융자산	50,833	40,505	2. 유동금융부채	12,003	11,506
매도가능금융자산	18,024	14,007	단기차입금	-	11,506
단기대여금	1,209	1,336	사채	12,000	-
(대손충당금)	(-)521	(-)669	사채할증발행차금	3	-
단기금융상품	32,121	25,831	3. 유동비금융부채	35	31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423	5,526	단기선수금		-
단기미수수익	6,445	5,556	단기예수금	35	31
(대손충당금)	(-)22	(-)30	4. 유동충당부채	1,311	-
비유동자산	114,296	105,351	비유동부채	223,456	213,621
1. 비유동금융자산	16,716	19,013	1. 비유동금융부채		
2. 비유동비금융자산	97,580	86,338	장기차입금	2,000	1,000
장기구상채권	278,593	270,472	(현재가치할인차금)	(-)699	(-)365
(대손충당금)	(-)181,109	(-)184,225	정부보조금	690	362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96	91	사채	221,300	212,400
			(사채할인(증)발행차금)	165	225
			부채총계	239,147	227,229
			결손금	(-)66,057	(-)73,146
			당 기: (+) 7,089		
			전 기: (-)31,308		
			기타자본구성요소	44	12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4	126
			자본총계	(-)66,012	(-)73,019
자산총계	173,135	154,210	부채및자본총계	173,135	154,210

제10장

2013년도
결산

〈표 X-4〉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 당 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영업이익 (A=B-C)	5,436	7,167
영업수익 (B)	14,565	14,257
(보험료수익)	12,420	11,212
(이자수익)	2,035	2,942
(이전수입)	110	103
영업비용 (C)	9,129	7,090
(이자비용)	8,236	6,196
(공사운영비 등)	893	893
기타 손익 (D)	1,982	-38,174
기타충당부채 순환입(전입)액	-1,311	57,901
대손충당금 순환입(전입)액	3,271	-96,099
기타	22	24
금융 손익 (E)	-329	-301
(금융자산처분이익)	-131	-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198	-301
당기순손익(F=A+D+E)	7,089	-31,308
기타포괄손익(G)	-82	81
총포괄손익(H=F+G)	7,007	-31,227

〈표X-5〉 요약 재무상태표

- 당 기 : 2013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2년 12월 31일 현재

(공사회계)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17	22	유동부채	57	63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5	22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7	30
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미지급비용, 연차휴가 관련)		
단기미수수익	-	-	2. 유동비금융부채	10	12
3. 유동비금융자산	2	1	단기예수금	10	12
단기선급비용 등	2	1	3. 유동충당부채	20	21
비유동자산	179	164	경평성과급 부채	20	21
1. 비유동금융자산	6	6	비유동부채	169	183
장기대여금	6	6	1. 비유동비금융부채	169	164
2.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1	103	기타비유동비금융부채	169	164
장기보증금	119	115	2. 종업원급여채무	-	19
(현재가치할인차금)	(-)8	(-)12	순확정급여채무	-	19
3. 유형자산	38	37	부채총계	227	247
토지	1	1			
건물	15	10			
구축물	10	6			
기타유형자산	195	187			
(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등)	(-)184	(-)167			
4. 영업권이외 무형자산	6	7	결손금	(-)30	(-)60
기타무형자산	6	7	당 기: (+)30		
5. 비유동비금융자산	8	11	전 기: (-)16		
장기선급비용	8	11			
6. 순확정급여자산	10	-	자본총계	(-)30	(-)60
자산총계	196	187	부채및자본총계	196	187

제10장

2013년도 결산

〈표 X-6〉 요약 손익계산서

• 당 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사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영업이익 (A=B-C)	2	-7
영업수익 (B)	948	916
(이자수익)	1	1
(기금전입수익)	947	915
영업비용 (C)	945	922
(인건비)	579	548
(경비)	366	374
기타 손익 (D)	5	3
충당부채환입액	1	-4
기타수익	4	7
당기순손익 (F=A+D+E)	8	-4
기타포괄손익 (G)	22	-12
총포괄손익 (H=F+G)	30	-16



〈표 X-7〉 요약 재정상태표

- 당 기 : 2013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순자산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31,173	30,750	유동부채	52,063	78,598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267	813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0,120	76,713
2. 단기금융상품	25,873	19,604	2. 기타유동부채	1,943	1,885
3. 단기투자증권	2,857	1,397			
4. 미수채권	13,859	15,561			
(대손충당금)	(-)13,722	(-)15,470	장기차입부채	175,337	152,909
5. 단기대여금	73	145,165	1. 공채 ¹⁾	175,337	152,909
(대손충당금)	(-)35	(-)136,320			
투자자산	93,088	82,451			
1. 장기대여금	143,799	1,290			
(대손충당금)	(-)139,809	(-)986			
2. 장기투자증권	89,098	82,147			
기타비유동자산	82	231	부채총계	227,400	231,507
1. 장기미수채권	71	93			
(대손충당금)	(-)70	(-)92	순자산		
2. 기타의비유동자산	81	230	1. 기본순자산	523,064	523,064
			2. 적립금및잉여금	(-)655,167	(-)663,647
			3. 순자산조정	29,046	22,508
자산총계	124,343	113,432	순자산계	(-)103,057	(-)118,075
			부채외순자산계	124,343	113,432

주 : 1)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용어 변경

〈표X-8〉 요약 재정운영표

• 당 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총원가	수 익	순원가	총원가	수 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11,741	6,990	4,751	13,908	7,267	6,641
1. 금융정책지원	11,741	6,990	4,751	13,908	7,267	6,641
경비	-			2		
지급수수료	43			52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			3		
대손상각비	2,761			2,230		
공채 등 이자비용	8,937			11,621		
기타이자수익		-			3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1			-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		11			21	
총당부채환입		-			35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413			436	
잡이익		-			2	
대손충당금환입		70			903	
배당금수익		2,944			3,294	
정부외융자금이자수익		3,551			2,573	
II. 관리운영비			100			107
1. 경비			100			107
III. 비배분비용			30			161
1. 지급수수료			1			1
2. 평가손실			-			82
4. 기타비용			29			78
IV. 비배분수익			532			549
1. 이자수익			464			440
2. 평가이익			-			82
3. 기타수익			68			27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4,349			6,361
VI. 비교환수익			12,830			12,070
1. 부담금수익			12,830			12,070
VII. 재정운영결과(V-VI)			(-8,481)			(-5,709)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2013 경영전략 워크숍

일자 : 2013년 6월 18일

All Together KDIC



금융안정의 새로운 미래, 세계 일류 예금보험공사



부록

1. 예금보험제도 개요
2. 대외평가
3. 2013년도 주요일지
4. 통계

1. 예금보험제도 개요

가. 예금보험제도 의의

예금보험제도는 평상시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적시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 등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나. 부보금융기관

부보금융기관이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저축은행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예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일반은행 뿐만 아니라, 외국은행 국내지점,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해당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도 이에 해당된다.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국내지점을 포함하여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모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부보금융기관에 해당된다.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그밖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경우 부보금융기관에 포함된다.

다. 부보예금

부보예금이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예금 등을 말하며, 「예금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그 보호범위가 정해져 있다. 1997년 말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되었던 일부 금융상품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예금이 2001년 1월 1일부터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부보예금 및 비부보예금 현황 〉

(2013년 12월말 현재)

구 분	부보예금	비부보예금
은 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발행채권 등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투자 매매업자 · 투자 중개업자 (증권사 등)	-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보 험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등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종합금융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상호 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라. 보호한도

1996년 공사 출범 당시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는 2,000만원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경제 전체의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한도를 원리금 전액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금융구조조정의 진전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한편, 원리금 전액 보장으로 인한 예금자와 부보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1998년 7월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금 계산방식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원금(또는 납입보험료)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원금(또는 납입보험료)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원금만 보호하는 것이었다.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공사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

2001년부터 환원 예정이었던 예금부분보호제도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보호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

구 분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1998년 7월 31일 이전 가입	1998년 8월 1일 이후 가입		
		원금 2,000만원 이하 (또는 납입보험료 2,000만원 이하)	원금 2,000만원 초과 (또는 납입보험료 2,000만원 초과)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종합금융, 저축은행	원금과 약정이자 전액보호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 보호	원금만 보호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
보 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 전액보호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의 합계액과 납입보험료와 소정의 이자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2,000만원 한도에서 보호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의 합계액과 납입보험료 중 적은 금액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
		예금보험사고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고보험금은 전액보호		

2. 대외평가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사는 2013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2012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및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를 토대로 공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경영평가단으로부터 경영실적 및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받았다.

2013년 6월에 발표된 2012년도 경영평가 결과, 공사는 기관 및 기관장 평가 모두에서 ‘우수(A등급)’를 달성하였다.

나. 기금운용평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 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한다. 기금운용평가는 사업운용과 자산운용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2012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기금운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2월 기금운용평가단에 제출하였으며, 동 평가단은 이를 토대로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 5월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2012년도 기금운용 평가(자산운용부문) 결과 최우수 등급인 “탁월”(38개 기금 중 6개에 부여)을 획득하여 최고 수준의 기금운용 역량을 인정받았다.

3. 2013년도 주요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1월 31일	예한별저축은행 매각
2월 15일	예주저축은행 계약이전
2월 15일	예술저축은행 계약이전
3월 27일	차등보험료율제 규정 제정
4월 12일	예신저축은행 계약이전
4월 16일	우리금융지주회사 배당금으로 1,148억원 회수
4월 29일	SK하이닉스 지분 0.63%, 블록세일을 통해 1,262억원 회수
5월 3일	그린손해보험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5월 14일~5월 15일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ADI) 아태지역위원회 연차총회 개최
5월 28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2012년도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 최우수 등급인 “탁월”(38개 기금 중 6개에 부여) 획득
6월 24일	포항터미널 지분 100%,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160억원 회수
6월 26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 마련
6월 28일	한화생명보험 배당금으로 322억원 회수
7월 15일	예술저축은행 매각
7월 25일	서울보증보험 배당금으로 1,472억원 회수
8월 26일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기업(KMAC) 선정
9월 2일	예한술저축은행 매각
10월 2일	생활금융교육센터 개소
10월 11일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G-ISMS) 인증 획득
11월 1일	오에스비저축은행 계약이전
11월 7일	김주현 사장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ADI) 집행위원 피선
11월 22일	한국전력 지분 1.36%, 블록세일을 통해 2,774억원 회수
11월 22일	예쓰저축은행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11월 29일	2013 대한민국 공공경영 대상(한국경제신문)
12월 9일	가족친화기업인증(여성가족부)
12월 11일	부채관리 강화 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신설
12월 13일	한국금융학회 ·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심포지엄 개최
12월 16일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교육인적자원부)
12월 27일	페퍼저축은행 계약이전
12월 31일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3년 연중	제주은행 지분 2.04%, 장종매각을 통해 24억원 회수

4. 통 계

가. 부보금융기관¹⁾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금 용 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은 행	53	55	54	54	55	56	57
(국 내)	(17)	(17)	(17)	(17)	(17)	(17)	(17)
(외국계)	(36)	(38)	(37)	(37)	(38)	(39)	(40)
금융투자 ²⁾	53	60	115	118	117	115	117
보 험	44	43	43	44	44	46	47
(생명보험)	(22)	(22)	(22)	(23)	(23)	(24)	(25)
(손해보험)	(22)	(21)	(21)	(21)	(21)	(22)	(22)
종합금융	2	2	2	1	1	1	1
저축은행 ³⁾	109	106	106	105	107	101	89
합 계	261	266	320	322	324	319	311

주 : 1) 부보금융기관은 영업개시일부터 인 · 허가 취소일 또는 해 · 파산일까지 금융기관을 말함

2) 「자본시장법」(’09.2월 시행상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09.2월 이전에는 증권사만 해당)

3) 저축은행중앙회(’07.12월 부보금융기관에 포함) 제외

나. 금융권별 부보예금¹⁾

(2013년 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금 용 권	2012(A)	2013(B)	증감(B-A)
은 행	8,918,135	9,213,184	295,049
금융투자	201,021	183,469	△17,552
보 험	4,498,770	4,948,536	449,766
(생명보험)	(3,648,358)	(3,974,206)	(325,848)
(손해보험)	(850,413)	(974,330)	(123,917)
종합금융	8,830	7,088	△1,742
저축은행	426,203	342,529	△83,674
합 계	14,052,959	14,694,806	641,847

주 : 1) 부보예금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기관 예금상품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타 부보금융 기관 등의 예금을 제외한 금액(잔액기준)

다. 상환기금 수입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상환기금 설치 전 예금보험료 수입(억원) ¹⁾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수입(원)						
	1998 이전 ¹⁾	1999	2000	2001	2002	합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은 행	1,613	1,975	2,630	4,139	4,361	14,718	5,027	4,976	5,965	6,811	7,789	8,518	8,973
금융투자	-	51	156	218	262	687	156	185	169	213	227	226	202
보 험	2,322	1,260	1,781	2,416	2,780	10,559	1,543	1,683	1,782	1,943	2,137	2,352	3,004
(생명보험)	(1,800)	(1,011)	(1,402)	(1,938)	(2,295)	(8,446)	1,265	1,364	1,430	1,534	1,650	1,760	2,297
(손해보험)	(522)	(249)	(379)	(478)	(485)	(2,113)	278	319	352	409	487	592	707
종합금융	980	336	233	139	130	1,818	7	8	10	19	12	10	9
저축은행	2,407	377	323	529	604	4,240	430	491	593	715	718	521	394
신 협	402	162	281	407	641	1,893	116	129	137	170	205	228	248
합 계	7,724	4,161	5,404	7,848	8,778	33,915	7,280	7,472	8,656	9,871	11,087	11,855	12,830

주 : 1) '98년 예금보험료 수입은 '98년초 예금보험기금 통합에 따라 해체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제외한 관련 기금을 '98년 4월 1일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받은 기금을 포함

2) '02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라. 예금보험료 수입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2003 ¹⁾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은 행	4,775	4,960	4,869	4,987	5,027	4,808	5,291	5,451	4,795	3,748	3,947	52,658
금융투자	312	336	300	303	256	305	276	284	283	2	-	2,657
보 험	3,115	3,403	3,737	4,059	4,455	4,852	5,113	3,307	3,062	86	708	35,897
(생명보험)	(2,580)	(2,832)	(3,109)	(3,362)	(3,654)	(3,934)	(4,097)	(2,609)	(2,362)	(-14)	(221)	(28,746)
(손해보험)	(535)	(571)	(628)	(697)	(801)	(918)	(1,016)	(698)	(700)	(100)	(487)	(7,151)
종합금융	73	17	15	19	22	24	29	34	18	8	8	267
저축은행	667	793	974	1,116	1,306	1,483	1,737	2,524	2,331	1,344	253	14,528
특별계정 ²⁾	-	-	-	-	-	-	-	-	1,742	5,816	6,672	14,230
합 계 ³⁾	8,942	9,509	9,895	10,484	11,066	11,472	12,446	11,600	12,231	11,004	11,590	120,239

주 : 1) '02년까지의 예금보험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11년 4월 설치

3) '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실적(2002년 舊 발행 예보채권)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은 행	120,650	158,591	60,307	77,617	36,600	453,765
금융투자	160	3	-	32,185	-	32,348
보 험	11,534	42,100	10,000	92,089	-	155,723
(생명보험)	(11,534)	(41,422)	-	(24,120)	-	(77,076)
(손해보험)	-	(678)	(10,000)	(67,969)	-	(78,647)
종합금융	65,120	-	12,600	73,344	-	151,064
저축은행	9,917	15,977	6,500	33,331	-	65,725
신 협	2,769	8,178	-	2,027	-	12,974
합 계	210,150	224,849	89,407	310,593	36,600	871,599 ¹⁾

주 : 1)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발행 누적액

바. 상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지급 ¹⁾	자산매입 ¹⁾	대 출	합 계
은 행	222,039	139,189	-	81,064	-	442,292
금융투자	99,769	4,143	113	21,239	-	125,264
보 험	159,198	31,192	-	3,495	-	193,885
(생명보험)	56,697	27,519	-	3,495	-	87,710
(손해보험)	102,501	3,673	-	-	-	106,174
종합금융	26,931	7,431	182,718	-	-	217,080
저축은행	1	4,161	72,892	-	5,969	83,023
신 협	-	-	47,402	-	-	47,402
합 계	507,937	186,117	303,124	105,799	5,969	1,108,945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포함

사. 상환기금 자금지원 세부 내역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금액
출 자	서울은행	46,809
	제일은행	50,248
	한빛은행	60,286
	국민 등 5개 인수은행	11,923
	하나은행(하나 · 보람합병)	3,295
	조흥은행	27,179
	평화은행	4,930
	경남은행	2,590
	광주은행	1,704
	제주은행	531
	수협	11,581
	농협	962
	한아름종합금융회사	300
	하나로증권	24,912
	한스, 한국, 중앙증권	2
	영남증권	1,717
	한아름상호신용금고	1
	서울보증보험	102,500
	대한생명보험	35,500
	국민, 태평양, 두원, 동아, 한덕, 조선생명보험	21,197
	한국투자신탁증권	51,649
	대한투자신탁증권	29,003
	정리금융공사	1
	대한, 국제화재보험	1
	현대투자신탁증권	19,116
	소 계	507,937
출 연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5개 인수은행)	97,113
	한빛, 경남, 광주, 평화, 서울, 제주은행	29,677
	농협	870
	삼성, 흥국, 교보, 제일생명(4개 인수보험사)	11,641
	제일은행	11,528
	대한, 현대, 금호, 동양, SK생명보험	14,220
	부민금고 등	4,161
	대한화재	509
	우리(舊하나로)증권	7,431
	국제화재	739
	동양, 삼성, 현대, LG동부화재	2,425
	녹십자(대신)생명	1,393
	KB(한일)생명	265
	한국투자신탁증권	784
	대한투자신탁증권	630
	현대투자신탁증권	2,730
	소 계	186,117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 원)

구 분		지원금액	
예금보험금지급	직접지급	신용협동조합	47,402
		증권회사(4개)	113
		상호신용금고	12,335
		영남, 한솔, 한국종금	1
	정리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지급	한아름종합금융(종금 18개)	182,717
		한아름상호신용금고(금고 59개)	60,557
소 계		303,124	
자산매입	직접매입	제일은행(신주인수권부사채)	249
		제일은행(베트남, 뉴욕현지법인지분)	165
		현대투자신탁증권(현대오토넷주식등)	8,570
	정리금융공사 대출을 통한 매입	국민 등 5개 인수은행	1,588
		제일은행	79,063
		동아, 국민, 태평양, 대한, SK생명보험	3,495
		한국투자신탁증권	4,830
		대한투자신탁증권	6,539
		현대투자신탁증권	1,300
		소 계	105,799
대 출	상호신용금고(13개)	5,969	
	소 계	5,969	
총 계		1,108,945	

제11장

부
록

아.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¹⁾
은 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 험	-	226	-	-	-	226
(생명보험)	-	226	-	-	-	226
(손해보험)	-	-	-	-	-	-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1,211	24,542	14,412	4,891	219	45,275
특별계정	3,655	226,311	36,213	1,134	775	268,088
합 계	4,866	251,079	50,625	6,025	994	313,589

주 : 1) '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자. 연도별 상환기금 지원자금 회수 실적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연 도	금 액
2000 이전	103,457
2001	41,179
2002	26,634
2003	56,034
2004	56,672
2005	36,117
2006	34,001
2007	43,660
2008	23,980
2009	24,118
2010	29,295
2011	12,679
2012	13,769
2013	7,992
누 계 ¹⁾	509,587

주 : 1) 현투증권 등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책임부담금 2,351억원(2004년도), 458억원(2006년도), 93억원(2007년도), 200억원(2012년도) 포함

차. 형태별 상환기금 지원자금 회수 실적

(2013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 회수	출연금 정산 등	파산배당금 ¹⁾	자산매각 ¹⁾	대출금직접회수	합 계
은 행	163,053	701	18,469	65,845	-	248,068
금융투자	12,121	3,231	78	17,989	-	33,419
보 험	38,094	888	4,310	2,419	-	45,712
(생명보험)	14,200	848	3,662	2,419	-	21,130
(손해보험)	23,894	40	648	-	-	24,582
종합금융	1,449	59	88,656	-	-	90,164
저축은행	-	342	51,721	-	5,969	58,032
신 협	-	4	34,188	-	-	34,192
합 계	214,718	5,225	197,423	86,253	5,969	509,587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회수 포함

카. 금융구조조정 추진 실적

(2013년 6월말 현재, 단위 : 개, %)

금융권별	1997년말 총기관수 (A)	구 조 조 정 현 황					신설 등	현 재 기관수
		인가취소	합 병	해산·파산, 영업이전등	계 (B)	비중 (B/A)		
은 행	33	5	11	-	16	48.5	1	18
비은행	2,062	188	233	585	1,006	48.8	206	1,262
• 종 금	30	22	8	-	30	100.0	1	1
• 증 권	36	6	9	2	17	47.2	31	50
• 보 험	50	10	7	6	23	46.0	29	56
• 자산운용	24	7	10	-	17	70.8	78	85
• 저축은행	231	138	29	1	168	72.7	31	94
• 신 협	1,666	2	157	576	735	44.1	18	949
• 리 스	25	3	13	-	16	64.0	18	27
합 계	2,095	193	244	585	1,022	48.8	207	1,280

타. 공적자금 지원 실적

(1997년 11월~2013년 12월말, 단위 : 조원)

금 융 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합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 축 은 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회사 등		-	-	-	-	2.4	2.4
합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자료 : 금융위원회

2013 연차보고서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발행인_ 김 주 현

편집인_ 박 태 준

발행처_ 예금보험공사

주 소_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 화_ 02) 758-0114

팩 스_ 02) 758-0220

기획·인쇄_ 우리기획 02) 502-0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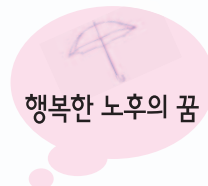
www.kdic.or.kr
www.facebook.com/happykdic
twitter.com/happykdic
blog.naver.com/happykdic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족의 행복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소중한 예금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지켜드립니다



알기쉬운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초과금액과 후순위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호한도 적용범위** 1인당 보호한도 5,000만원(원금+소정의 이자)은 금융회사별로 적용
- ▶ **보호대상 금융회사**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 적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1588-0037) 또는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DIC

2013 Annual Report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